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 사 학 위 논 문

마약류중독에 의한 정신범죄사범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2017년



HANSUNG
UNIVERSITY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마약알콜학과

중독상담전공

김 란 중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윤 흥 희

마약류 중독에 의한 정신범죄사범
실태와 대책에 관한연구

A Study on Actual condition and Countermeasures of
mental crime committed by drug abusers.



2016년 12월 일

HANSUNG
UNIVERSITY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마약알콜학과

중독상담전공

김 란 중

석 사 학 위 논문
지도교수 윤 흥희

마약류 중독자에 의한 정신범죄사범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ctual condition and Countermeasures of
mental crime committed by drug abusers.

위 논문을 마약알콜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마약알콜학과

중독상담전공

김 란 중

국문 초록

마약류 중독에 의한 정신범죄사범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마약알콜학과
중독상담 전공
김 란 중

한국의 사회에서는 과거 시골 할머니들이 양귀비를 가정상비약으로 사용하고, 특정인 연예인, 약사, 유흥업소 종업원, 귀관자녀 등이 사용하던 대마초가 글로벌 시대 속에서 필로폰 대마, 아편, 신종마약류가 확산되어, 그에 따른 중독자정신범죄사범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원인들은 각종 국제대회와 개방화 정책에 따른 예상된 현상으로 볼 수 가있다, 국내 10년 동안 8,000~9,000명 마약류사범이 검거되고 10만 명의 복용자가 점조직으로 은닉된 장소에서 밀수와 판매, 투약을 하였다. 그리하여 외국에서는 한국의 청정국가로 되어 있어 마약류 사범에 관심이 없는 국가로 되었다가 그런 이후에 2014년 후 2015년 까지 국내마약류 사범은 12,000명 선으로 증가되었다. 증가된 원인은 사용자가 증가 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큰 원인은 외국인 강사,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국내유학생, 외국군인 등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자국의 마약류를 인편으로 밀반입하여 판매, 무상으로 국내 청소년, 성인 상대로 판매하다가, 최근에는 인터넷·SNS 국제우편, 특송화물, 수입화물, 선원, 여행자, 물질과 희석 등 지능적으로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중국, 홍콩, 태국, 캄보디아 미국, 동남아 등에서 지속적으로 밀수 되고 있어 다변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국내 유통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의 은어를 사용하여 전국에 기차화물, 버스화물, 오토바이 퀵서비스, 택배, 인편 등 통해 사용자의 주

거지 주변 공중화장실, 지하철역 기둥, 고속도로 간이 휴게소, 공원 까지 운반하여 판매하고 투약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의 마약류 소비계층은 대학교수, 회사원, 10대청소년, 농민, 주부, 근로자, 연예인, 택시 및 화물운전자, 의사, 간호사, 원어민 강사 사회 전반에 지도층 까지 사용계층이 확산에 따라 국내의 복용자는 30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신종마약류 프로포폴과 졸피뎀, 살 빼는 약, 임시마약류를 신촌 청소년 활동지역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외국인 집단거주지 경기 평택, 태국산 야마, 서울구로동, 중국산 어름(필로폰)판매되고 있으며, 국내에 북한이탈주민들까지 북한산 필로폰(빙두) 국내에 대량으로 밀수 공급 하는 등, 한국은 마약류 유통과 소비국가로 전락하게 되었다. 또 제조와 재배는 필로폰을 제조하기 위해, 약국에서 대량의 러미나 감기약을 구입 에페드린을 추출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하고 있으며, 대마종자를 인터넷을 통해 외국에서 구입 가정집에서 재배 사실이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확산으로 인하여 마약류 중독에 의한 정신사범에 대하여 법무연수원,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검거사례 통계, 언론사, 각종 관련 학술논문, 기관지, 학술세미나 사례를 통하여 확산되는 마약류사범과 그에 따른 중독자사범 실태와 원인, 재발, 치료 등을 분석을 통해 국내 마약류 확산과 범죄사범에 대하여 사전 예방적 대책 마련과 관련을 연구하고자 한다. 중독자 사용 원인을 분석 한바, 재범자, 호기심, 친구권유, 피곤해서, 일하기 위해서, 중독이 되어서,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 경제적 빈곤, 학교교육 부재 등으로 투약하게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독정신의 특징은 중독적사고로 마약류 투약 후 충족되는 쪽으로, 이유가 달도록 생각이 지속되고, 잘못된 사실에도 합리화 증상으로 변하면서 지각(착각)나타나는데, 뇌에서 작은 자극에도 과장에게 반응이 일어나면서, 쉽게 분노하는 행동을 한다. 그에 감정의 혼란에 의한 우울증, 자존감, 죄책감, 강박성 등 조절을 못하는 증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정신범죄사범의 특징으로는 점조직과 지능화, 장비의 현대화, 광역 신속화, 상승적 복합성으로 이루어 수사관들의 검거에 어려움에 있다. 이러한 상황들이 밀수와 판매, 사용과 더불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국내의 마약류정신범죄사범은 지속적으로 증가 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이에 대한 연구 분석에 제언을 제시 한다.

첫째, 마약류정신 범죄사범에 있어서 국내의 마약밀수, 판매, 사용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우선적 수요공급차단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재범자, 중독자에 대한 원인을 분석 적극적 으로 병원치료와 재활을 실시하여, 다시는 마약류 접근을 방지하고, 단순투약자는 검찰, 법원, 교정 교육과 보호관소 등 유도, 중독자에 접근을 사전 예방 대처가 필요하며, 그에 따라 장비 현대화 , 전문수사관 증원, 예산 확충 등 우선적이다.

둘째, 문교부, 보건복지부, 법무부(교도소) 등에서 치료와 재활 , 예방교육을 프로그램 개선과 예산 적극지원, 관련 직원 증원 등 내실 있는 전문가로 구성 정책을 제시하여 하며, 강력하게 실행하여야 한다.

셋째, 사회전체의 공감대 형성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수사기관, 유흥업소단체, 중독예방센터, 언론사, 신문, 기업인 등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류의 유해성과 국가발전에 저해하는 등의 홍보와 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 국내 마약류 확산예방 대책을 성공 할 수 있다고 제시 한다.

【주요어】 마약류중독자, 정신범죄사범, 치료재활, 예방대책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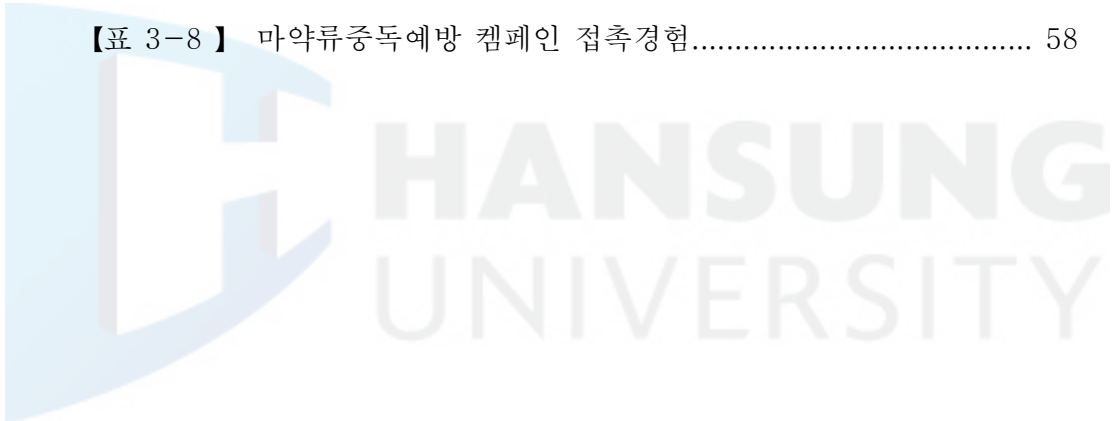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1)연구의 범위.....	3
2)연구의 방법.....	4
제 2 장 마약류 중독에 의한 정신범죄사범의 이론적 배경.....	6
제 1 절 마약류의 정의와 특성과 종류.....	6
1)마약류의 정의와 특성.....	6
2)마약류의 종류.....	11
제 2 절 마약류 중독정신사범 원인 및 현상과 특성 ..	20
1) 마약류 중독의 개념.....	20
2) 마약류 중독원인과 특성.....	21
3) 마약류 중독의 인간학적 특성.....	29
제 3 절 마약류 중독정신범죄 개념과 사범의 특성.....	32
1) 마약류중독정신범죄의 개념.....	32
2) 마약류중독정신범죄 사범의 특성.....	33
3) 마약류 중독정신사범의 관련범죄.....	35
제 3 장 마약류 중독정신범죄사범 실태 원인 및 분석.....	40

제 1 절 중독에 의한 정신범죄학의 개념.....	40
1) 정신장애에 의한 범죄.....	40
2) 간질과 뇌 손상 의 중동성 범죄.....	41
3) 정신질환 관련범죄.....	43
제 2 절 마약류중독정신범죄 사범의 변화 추이.....	44
제 3 절 마약류중독정신범죄 사범 실태원인 원인의 분석.....	47
1) 국내마약류 밀수범죄 실태.....	47
2) 마약류 범죄사범 실태.....	49
3) 마약류 사용 후 환각에 의한 강력범죄 실태.....	51
4) 의료마약류도난 ·분실과 취급기준 위반실태.....	52
5) 마약류 범죄사범의 발생원인.....	55
제 4 절 중독자정신범죄 사범의 유형별 사례와 분석.....	58
1) 마약투약 후 환각에 의한 강력범죄 행위.....	58
2) 심리적, 호기심의 원인에 의한 범죄행위.....	60
3) 심리적 의존에 의한 범죄행위.....	62
4) 금단과 의존에 의한 범죄행위.....	65
5) 중독의 무절제성의 범죄행위.....	75
6) 환각에의 한 정신범죄 행위.....	78
7) 마약중독“성”충동질환의 범죄행위.....	81
8) 불안과 사회 환경에 의한 범죄행위.....	84
제 4 장 마약류 중독정신범죄 사범의 문제점과 대책.....	91
제 1 절 중독정신사범 발생의 문제.....	91
1) 확산에 따른 밀반입과 정부와 단속기관.....	91
2) 투약자 기생지역 및 관련단체.....	92

3) 투약자 의료기관·관리자 및 법 관련.....	93
4) 중독범죄사범 예방과, 홍보 결여.....	94
5) 교육기관 및 중독자 재활상담치료기관.....	95
 제 2 절 중독범죄사범 개선과 예방대책.....	96
1) 국내마약류 밀반입 및 마약류 관련법 개선.....	96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예방대책.....	97
3) 의료기관 및 취급자개선과 대책.....	98
4) 투약자 및 기생지역의 개선 방안.....	99
 제 3 절 마약류 범죄 홍보 및 교육·재활·치료개선 대책.....	101
1) 홍보와 효율적인 교육.....	101
2) 중독자 치료보호 및 교도소 치료강화 개선책	102
 제5장 결론과 제언	105
 참고문헌.....	109
 ABSTRACT.....	118

【 표 목 차 】

【표 2-1】	마약류의 약리학적 작용.....	10
【표 3-1】	연도별 마약류사범 추세.....	46
【표 3-2】	마약류사범 연도별 단속인원.....	47
【표 3-3】	마약류 경로별 밀수 현황.....	48
【표 3-4】	마약류별 2015년 단속현황.....	51
【표 3-5】	5년간 마약류투약환각강력 범죄 실태.....	52
【표 3-6】	최근5년 의료용 마약류도난 및 취급규정위반.....	54
【표 3-7】	마약류사범 발생원인.....	56
【표 3-8】	마약류중독예방 캠페인 접촉경험.....	58



제 1 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정보화 산업화의 환경 사회에서 살고 있으면서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급격하게 사회의 혼란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 한자리의 문제로 국내에서는 마약류 확산과 남용에 의한 재범, 상습투약으로 인한 중독자의 정신범죄사범이 지속적으로 발생 증가 되고 있다. 이러한 마약류 중독에 의한 정신범죄사범의 증가는 국가적 차원에서 예방 통제 비용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범죄억제와 재사회화는 향후 국가 마약류 확산통제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지난 수세기동안 인류 사회는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 왔다. 우리나라 역시 일찍이 마약류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로 마약류범죄자 엄벌과 공급차단을 통해 마약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왔으며, 어느 정도 청정국가의 면모를 지켜 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9년 이후 국내 마약류 생산 및 공급조직을 철저히 단속결과 2003년을 분기점으로 마약류 범죄자 수가 6,000~7,000명 수준으로 감소 현상이 보이 듯 하더니 2013년 9,764명년부터 다시 급속도로 마약류 판매 및 투약자가 2015년도 마약사범, 1,153명, 향정사범, 9,624명, 대마사범, 1,139명 으로 1년간 12,000명을 상회 하면서 마약류 중독자의 환각상태에 의한 2차 강력범죄 발생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복용자는 30만에서 100만 명으로 추산하면서 그에 따라 마약류 투약 사용사범의 수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공급정책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효율적으로 수요와 중독자의 확산 통제 및 예방정책을 전개할 필요성이 대두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마약류, 일반인 및 약물을 사용한 경미한 자를 상대로 교육과 홍보를 통해, 마약류 사범을 미연에 예방하고, 이미 마약류를 사용한 상습투약자들에게는 이를 효과적으로 재활, 치료하여 다시는 투약사용 하지 않도록 하는 약물예방과 치료, 재활 전략을 수립할

사회적 요구가 되고 있다.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제도나 치료조건부 집행유예제도의 도입, 정신사범에 대한 정신병원 사전입원치료 도입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예방대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마약류 수요 공급차단 정책이 미미한 정책으로 큰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없으며, 최근에는 마약류 취급자 의사, 간호사, 병원 종사자들 까지 사용, 보관중인 마약류 프로포폴 등 치료용 마약류를 허위 기재하고 투약사례가 확산에 편승하고 있으며 또한 마약류 도난 및 분실, 마약류 보관 규정 위반 사례 까지 등장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재범자, 수감자 교도소 내의 마약사범 치료, 재활은 예산 등의 문제로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고, 국가차원, 지방자치단체, 의약 NGO 단체 등의 활동과 언론, 시민들 까지 마약류 범죄 확산 대책에 관여 하여야, 중독자의 정신적 사범 범죄는 감소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투약자 스스로 치료기관인 국립정신병원, 개인사설 병원, 동네의원 등에서 자발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며, 마약류 공급 판매 유사 영업장소 영업자에 대한 마약류관련 법률 등 예방 홍보 등이 없는 상태에서는 대책을 실현 할 수 없다. 국내의 마약 확산지역인 신촌, 이태원, 강남지역에서는 청소년 들이 얼마든지, 마약의 클럽, 유흥가, 은어를 통해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국제우편, 특송화물 해외 직구 통해 언제 어디 에서나 음료수, 커피 등 간편하게 다양 방법으로 투약 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중독자 정신범죄사범은 1년 1만 명 이상 검거 비율에 따라 증가하는 현상으로,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투약 후 정신적 마약류 범죄 사범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사회질서 유지와 피해자적 피의자의 신체 건강유지, 사회복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약류중독에 의한 정신범죄사범에 대한 형사법적인 처벌보다는 치료와 예방의 최우선으로 실태와 원인을 분석, 예방대책에 관하여 효율적으로 개선방안을 위하여 첫째, 마약류 중독정신범죄사범에 대한 이해를 제시하면서 마약류의 정의와 중독정신의 이론 및 특징 과 마약류 투약 사용 후 중독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심리학, 사회학적 나타는 현상을 검토 하면서, 홍보와 효율적인 교육정책을 제시하려고 한다.

둘째, 마약류 중독범죄사범에 대한 국내에서 발생한 사례, 통계 등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실태와 발생 원인을 토대로 상습투약사용자에 의한 정신적 강력범죄를 범할 수 있는지 제시하고 그에 따라 수요 공급차단을 위해 수사 관련기관 공조체제 제시하면서 사전예방을 제시한다.

셋째, 현재 마약류 공급 지역 (자생지역) 영업자 상대로, 마약류관련 법률교육과, 국내 정신병원치료와 발생 전 예방활동과 국가정책적인 대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면서 그에 따른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정신범죄사범에 대하여 치료와 예방대책 정책을 도출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로 하였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연구의 범위

21세기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범죄는 국내 공급, 판매책 등이 해외 및 자국에서 원료물질을 불법적으로 구입, 공급하면서 제조, 공급, 판매, 투약자는 기하급수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마약류 범죄는 국제사회에 깊숙이 연계되어 있어 확산되고 있는 현상으로 이러한 실태를 인식하지 못하면 마약류 정신범죄사범에 대하여 접근할 수 없다. 마약류는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문구로 외국에서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열거하는 사례가 다수 국가가 있으면 한국에서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즉 3대 마약류를 2000.1.12 개정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어 본 논문에서는 국내법의 특별법인 마약류중독에 의한 정신범죄사범에 대하여 정신범죄와 관련된 10년간의 마약류 투약사용자의 발생한 공식적 통계 및 실태 와 2015년 1년 동안 확산 실태에 원인 분석하고, 의료용 마약류와 분실 및 도난, 관리부재에 대하여 분석하면서 국내의 마약류 정신범죄 등의 홍보부재에 대한 연구하면서 치료보호와 단순투약자 기소유예제도와 마약류 관련 법률 개선에 대하여 연구와 경찰, 검찰, 관세청, 통계, 언론지, 기관 단행지 등 검거 및 보도 자료와 마약류 사용자의 사례 중점을 두고 한국의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과 정신범죄사범 발생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연구의 방법

본 연구를 보다 의미 있는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실증적인 조사 연구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라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직, 간접적으로 그동안 실시된 여러 실증적인 조사, 연구내용과 국내, 외국의 문헌과 민간단체의 자료와 수사기관의 검거사례, 국내 언론지, 인터넷 자료 등을 탐색을 통해 조사, 연구의 기초로 삼았다.

제 4장에서 마약류 중독정신범죄 사범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사전적 예방과 대책을 논하기 위해 제 2장에서는 마약류에 관한 이론적 접근 차원에서 마약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고자 마약류의 정의와 특성, 종류에서는 전통 마약류 및 현 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신종마약류 소개와 마약류 중독정신범죄사범에 대한 이론, 정의 특성을 제시하면서 효율적인 마약류 상습적 투약으로 정신범죄 사범의 발생원인 등 분석하고 대처에 대한 효율화의 이론, 연구의 개념 틀에서 직, 간접 실증분석을 위하여 가설을 설정하는데 설문지 조사는 생략하고, 문헌, 수사기관의 검거사례 언론지, 인터넷, 주요기관 통계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특히 제3장에서 연구의 틀 중심으로 정신범죄학 연구와 정신범죄사범 추이, 정신범죄사범으로 전환되는 국내 마약류 범죄 실태, 환각에 의한 강력범죄 실태, 의료취급자 및 관리자의 도난과 분실 등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책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서, 국내 마약류 관련 통계 자료에 대하여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마약 범죄백서와 경찰청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자료, 관세청 밀수 동향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민간단체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국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정보원, 형사정책연구원 통계와 기관들의 공개 자료 등 참고하였고 신문, 인터넷, 방송매체, 수사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마약류 정신사범의 실태에 대한 사례를 주로 의존했다. 그리고 교정치료와 치료보호 등에 대한 문헌과 법무부 근무자, 한국마약퇴치본부 재활센터 근무자 전화통화를 통해 단순 투약자에 대한 기소유예제도가 실효성 있다는 사실을 도출 하였다. 또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외국의 수사와 체계를 연구. 분석 자료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

참고하기 위해 비교적 오래된 미국, 중국, 일본의 문헌, 논문, 단행본, 훈련교본 등을 주로 참고로 하였다. 그리고 인터넷, 한국의 수사 관련기관의 검거 사례 및 대검 마약류범죄 백서의 사례를 최근 중심으로 검거일시, 장소, 피의자 인적사항은 인권관련과 신원 유출됨으로 가명으로 기재하며 의존하기로 한다.

또 마약류의 유해성 작용에 대하여 고찰함에 있어서는 그 성격상 정신의학적, 심리학적 지식이 필요로 하게 되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마약류 정신범죄사범에 대한 각종 문헌, 언론지를 통한 연구의 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참고하기로 했다.



제 2 장 마약류 중독에 의한 정신범죄사범의 이론적 배경

제1절 마약류 정의 및 특성과 종류

1). 마약류의 정의와 특성

가). 마약류의 정의

마약은 한자로 ‘麻藥’이라고 쓴다. 흔히 이 ‘삼 마(麻)’ 자를 ‘마비 마(癱)’자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언어이다.

이 ‘삼 마’ 자를 쓰게 된 유래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삼을 대마(大麻)라고도 하는데 마비시킨다는 뜻도 있어서 이 자를 쓰게 된 것 같다. 대마에는 마취성분이 들어 있다. 영문으로는 마약을 ‘Narcotic’이라 하는데 희랍어 ‘Narcosis’에서 유래된 말로 역시 마비시킨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고유어 의미의 마약 ‘Narcotic’은 무감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Narkotikos’에서 유래하며 약리학적으로 통증을 완화시켜 주고 수면을 유도하는 마취 진통 작용이며 투약 중지 시 금단현상을 나타내는 물질로 앵속 아편, 코카인 그 제제, 이에 유사한 약리작용과 중독 증상 있는 약물(Drug)을 가리킨다.(윤홍희,2007,p.4)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고유 의미의 마약뿐만 아니라 LSD,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신경안정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 등을 포함하여 특별한 구분 없이 총괄하는 의미로 사용하여 왔으며, 현재는 마약류라는 용어를 2000년 1월 12일 제정 법률을 통합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사용함으로써 사회적인 경각심을 주지시키는 한편, 통일된 시각의 마약류 대책을 추진하고 노력하여 국민 보건 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

한편, 마약과 약물은 마약이라는 의미로 특별한 구분 없이 혼용되고 있고 실제적인 구분도 모호하다. 그러나 이들을 엄격히 구분한다면 ‘Narcotic’은 마약이라는 본래의 의미가 강하여 앵속(과실)에서 추출되는 아편제제로서 마취 진통 작용을 갖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Drug’은 일반 약품과 마약으로 규제되지 않는 알코올, 담배, 커피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약물이라는 의미가

광의로 해석된다. 1957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 약물 사용에 대한 욕구가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의존성)- 상용하는 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내성)- 약물사용 중단 시 불안, 초조, 현기증, 구토 등 신체적 고통증상(금단현상)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해악을 끼치는 약물로 정의 되었다.

따라서 마약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 통상 'Narcotin Drug'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신경정신의약계에서는 알코올, 기침약, 유해화학 물질 등을 포함하는 개념의 Substances라는 용어 사용). 한편 'Substance'는 향정신성물질(Psychotropic Substances) 등 Drug의 의미로 사용되나 Drug 외에 유해화학 물질 관리법상의 환각 각성 효과를 갖는 부탄가스, 본드(톨루엔), 휘발성, 용제 등 약사법상 판매 허용된 규제대상인 염산날부핀, 텍스트로메트로판, 엑스정과 같은 의약품 및 화학약품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마약 제조에 사용되는 초산, 염산 등 화학물질(Chemical Substances)에도 사용되고 있다.

나). 마약류의 특성

일반적으로 마약류는 치료와 상습적 불법 사용으로 인하여 복합적인 증상을 발현되어 환각으로 인한 각종 질환과 상습투약으로 인하여 정신적 범죄가 발생되고 있다.

(1) 의존성

의존성(dependence)이란 마약류 사용자가 사용해서는 안 될 신체적·정신적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얻기 위한 신체적·정신적 욕구로 괴로움을 겪는 것을 말한다. 즉, 신체적 의존성과 정신적 의존성이 그것으로 마약류 중에는 두 가지 의존성 가운데 한 가지만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신체적 의존성(physical dependence)은 인체 내에서 투여된 약물과생체적인 반응이 상호작용한 결과 생체가 투여된 약물의 특정 약리효과가 존재하는 상태에 적응하여 약물의 효과가 나타났을 때에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만 그 효과가 소실되면 신체기능의 균형이 깨지게 되므로 생체의 적응력이 없어져 병적 증후를 나타내는 이상 상태를 말한다.

(2) 내성

내성(tolerance)이란 마약류 복용의 효과가 처음보다 현저히 줄어들거나, 최초의 복용과 유사한 효과를 얻기 위하여 복용량을 증가시켜야 하는 현상이다. 마약류에 따라서 내성이 생겨 복용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복용량은 처음과 비교하여 현저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내성현상은 마약류에 대한 내성이 인체에 이미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아편, 헤로인, 몰핀 등과 같은 아편제제들은 내성의 효과가 강한데 비하여 알코올이나 바르비탈염제제 등은 상대적으로 약한 내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아편제제 중독자들은 점차 더 많은 사용량이 필요하지만 알코올은 그 차이가 별로 없다.

(3) 금단증상

금단증상(withdrawal symptom)이란 규칙적인 마약류사용자가 사용을 중단하면 발견되는 특징적인 비자발적 반응으로 마약류를 복용하지 않으면 그 증상이 나타난다. 마약류의 사용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사용횟수나 사용량이 많을수록 증상의 상태는 더 심하다. 가벼운 증상으로는 눈물을 흘리는 것, 코를 찔룩거리는 것, 재치기, 잦은 하품, 발한적용 등이 있으며, 이 단계가 지나면 팽창, 전율, 소름, 식용상실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더 뚜렷한 증상으로는 불면증, 가쁜 호흡, 혈압상승, 들뜬 기분 등이 발견된다. 심한 증상으로는 구토, 설사, 간질, 헛소리, 체중감소 등이 있다.

이런 증상은 뇌가 이미 마약류에 중독되어 황폐화 정도가 사용량에 비례해서 더욱 커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금단증상은 다르게 나타나는데, 대마초는 신체적으로 금단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알코올중독은 금단증상이 매우 심하고 위험하다. 따라서 알코올중독자를 판명되면 꾸준히 장기간에 걸쳐 치료받지 않으면 중독에서 헤어나기 어렵다고 하겠다.

(4) 중독성

중독성이란 약 또는 독이 입을 토한 섭취나 호흡으로 인한 흡입, 피부를 통한 흡수, 주사 등의 형태로 인체에 들어와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상태에서, 의약품이나 약물 등의 과다복용 또는 습관성 복용 등 무제한 약물남용으로 인해 발생한다.

(5) 재발현상

재발현상(flashback)은 마약류의 복용을 중단한 뒤에도 비정기적으로 과거에 마약류를 복용했을 당시의 환각상태가 나타나는 현상이다. 환각제 남용자에게 주로 많이 볼 수 있는데 마약류가 끊기 힘든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재발현상이다. 상당한 기간 동안 성공적인 과정을 밟아가던 환자들이 어느날 갑자기 찾아온 재발현상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재현현상은 환각제 사용을 중단한지 1주일, 1개월, 1년 또는 수년이 지난 후에도 나타나며 이때의 상황은 과거 환각제 경험에서 나타났던 상황들과 관계를 맺게 된다. 이 재현현상은 수초·수분 동안 지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 시간 동안 나타나는 장시간 지속되어 실제 복용 당시와 같은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과거의 환각제 복용 당시의 경험이 비참할 경우와 연관될 때에는 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자아내거나 때로는 비인격적인 행위를 하기도 하며 자살을 기도하기도 한다. 현대의학도 재현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는 정확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표 2-1> 마약류의 약리학적 작용

분류		종류	약리작용 (흥분/억제)	의약용도	사용방법	부작용	작용 시간
마약	천연 마약	아편	억제	진정 · 진통	경구주사	도취감, 신체조정력 상실, 사망	3~6
		모르핀	억제	진정 · 진통	경구주사		
		헤로인	억제	진정 · 진통	경구주사		
	합성 마약	코카인	흥분	국소마취	주사 코흡입	흥분, 정신훈동, 사망	2
		메사돈	억제	진정 · 진통	경구주사	아편과 동일	12~24
		염산페치딘	억제	진정 · 진통	주사	아편과 동일	3~6
향정신성 의약품	메스암페타 민	흥분	식욕억제	경구주사 코흡입	환신, 환청, 환측, 피해망상, 사망	12~34	
	바르비탈류	억제	진정 · 진통	경구주사	취한행동, 뇌손상, 호흡기장애 , 감각상실	1~6	
	벤조디아제 핀류	억제	신경안정	경구주사	취한행동, 뇌손상, 호흡기장애 , 감각상실	4~8	
	LSD	환각	없음	경구주사	환각, 환청, 환시	8~12	
	날부핀	억제	진정 · 진통	주사	정신불안, 호흡곤란, 언어장애	3~6	
	텍스트로 메토르판, 카리소 프로돌	억제	진해거담	경구	취한행동, 환각, 환청	5~6	
	펜플루라민	억제	식용억제	경구	심장판막질 환, 정신분 열	6~8	
	대마	대마	환각	없음	경구흡연	도취감, 약 한 환각	2~4

자료 :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16, p33. 재구성

2). 마약류의 종류

마약에 대한 분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국제적으로 분류되는 방법은 조약에 의한 분류로 마약과 향정신성물질로 나누는 방법이 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 방법에 의하여 마약단일협약에 의해 설립되어 마약의 국제적 단속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마약관리국의 분류상 마약에 속하는 것은 황색 목록, 향정신성물질은 녹색목록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방법 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류로는 작용하는 성질에 따라 환각제와 억제제, 약리작용에 따라 마취제 · 진통제 · 환각제 · 각성제 · 진정제로, 의존성측면에서 중독성 약물과 습관성 약물로 생성원에 따라 천연마약과 합성마약 그리고 반합성마약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류를 통제하기 위한 법률은 약리적 성질을 바탕으로 법제화한 것이 아니라 특정 약물이 문제될 때마다 그 약물은 규제하기 위한 입법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에 따라 마약법, 향정신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 등으로 나누어 관리되어 왔다. 이들 법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관리자와 단속, 정책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 세 법이 통합된 뒤에도 여전히 마약류의 분류는 그대로 두고 있어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3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는 국제사회에서도 천연마약을 관리하기 위한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과 향정신성물질협약 등으로 나누어 관리되고 있어 여기에서도 편의상 이 세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고자 한다.(신의기.2004.p.39)

가) 마약 (양귀비)

유엔의 마약에 관한 단일 협약에 따라 1961년 생산과 사용을 특별히 규제한 마약으로, 마약이란 생아편 · 아편 · 코카엽 등과 이들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이드로서 천연마약 · 반합성 마약 · 합성마약으로 세분되는데,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종류가 많다.¹⁾ 지금은 화학적 합성에 의한 마약류의 남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마약류 남용의 중심이 된 것은 마약

이었다. 전통적 마약원료인 생약으로부터 추출되는 천연마약과 화학적으로 합성되는 합성마약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천연마약은 다시 앵속 과실을 원료로 하는 아편알카로이드계와 코카나무를 원료로 하는 코카알카로이드계로 나눌 수 있다. 아편알카로이드계 마약으로는 아편, 모르핀, 헤로인 등이 있으며, 모두 앵속(양귀비꽃)으로 만든다. 코카계 약물은 코카관목의 잎에서 채취되는 코카인과 코카인 염화물을 가공하여 만들어지는 크랙이 있다. 합성마약에는 페치딘계, 메사돈계, 모르핀난계, 아미노부텐계 및 벤조몰핀계의 5종이 있다. (전대양 2003,p239)

나) 향정신성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은 인체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 할 경우 의존성으로 인체에 현저한 해독을 가져오는 약물을 말하는데, 각성제 · 환각제 · 억제제 등의 수백여 가지가 개발되어 있다.²⁾ 이는 1971년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에 의해 국제적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늘날 화학의 발달과 함께 규제의 대상이 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이나 이들의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를 말한다. 그러나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위의 물질로 다시 제조 또는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러한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약리작용에 따라 각성제, 환각제, 억제제로 나눌 수 있다.

(1)메트암페타민

대표적인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은 속칭 ‘히로뽕’으로 불리는 국내 주종 남용 약물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소정의 ‘암페타민 및 이와 유사한 각성작용이 있는 물질’ 중 하나로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각성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속칭 히로뽕이라 불리는 결정체 메스암페타민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가루, 액체 형태의 methamphetamine(speed)과 결정체 형태의 methamphetamine(Ice)으로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히로뽕’, ‘백색의 공포’, ‘공포의 백색가루’, ‘악마의 가루’라고도 불리며, 불법사용자들 사이에서는 ‘백색의 황금’, ‘뽕’, ‘가루’, ‘술’, ‘크리스탈’ 또는 ‘물건’ 등으로 불리기도 하고 ‘총’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다. 결정체 메스암페타민이 미국에서는 아이스(ice), 일본에서는 각성제라고 통칭되고, 필리핀에서는 샤부(shabu), 대만에서는 아미타민이라고 불려진다. 메스암페타민은, 1888년 일본의 나가이가 한방에서 천식약으로 사용하는 마황에서 에페드린을 추출하는 연구과정에서 처음으로 발견하였으나 장기간 결말을 보지 못하다가 1919년에 오카타가 이를 합성하는데 성공하였다. ‘히로뽕’이라는 말은 ‘Phinopon’의 일본식 발음이며, 이는 일본의 대일본 제약주식회사에서 개조하였던 각성제의 상품명으로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메스암페타민은 ‘히로뽕’이라 속칭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일반 명처럼 변하였다. ‘Philopn’의 어원은 희랍어의 ‘Philoponos’에서 유래하며, 이는 ‘일하는 것을 사랑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 각성제를 제조하여 상품명 지을 때에, 이를 사용하면 잠을 쫓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 이름을 택한 것으로 보이며, 마약류 중에 환각 현상이 강한 마약이다.

(2) MDMA(엑스터시)

1912년에 최초로 약물로 합성되고, 197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처음으로 심리치료 보조제로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도 외국에서 유학생 및 해외교포에 의해 밀반입 확산되고 2000년 7월부터 마약류로 지정된 마약이다.(약물중독.p84~85) 그러나 국내에서 사용한 연도는 1998년 8월 서울북부경찰서에 의해 처음으로 적발된 MDMA 역시 알약 형태로 제조된 신종마약이다. 가격은 싸면서도 환각작용은 히로뽕보다 3~4배 더 강하며 약식소변검사로 투약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히로뽕과 유사한 화학적 구조를 가진 합성마약인 MDMA는 이미 2~3년 전부터 호주·독일·영국 등 서구에서는 ‘엑스터시’라는 이름으로 유행했었다. 더욱이 이는 히로뽕 1회 투약량의 3배 분량인 MDMA 한 알의 암거래 가격이 4만~8만원으로 히로뽕(1회 투약량 8만~10만원)에 비해 훨씬 싸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마약으로 꼽히고 있다.

엑스터시는 암페타민과 유사하며, 150mg 가량 투약하면, 약 30분간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때로는 발작적 경련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엑스터시를 장기간 사용 시 불면증, 집중력 저하, 학대망상, 공황발작, 우울증, 수면문제, 편집증, 구역질, 실신, 오한 등 부작용을 발생시키며, 심장박동과 혈압을 증가시켜 순환기 질환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특히 위험하다. 또한 생각과 기억에 관여하는 뇌 부위에 장기간 지속되는 손상을 입힌다. 백색분만, 캡슐, 알약 형태로 밀거래 된다.(윤홍희.2007.P.11)

(3) LSD

1938년 독일 화학자자인 알베르트 호프만에 의해 리세르그산 기초 합성, 1950년도 각광받아 던 마약으로, 1960년 초 미국의 심리학 교수에 의해 처음 세상에 등장한 LSD(Lysergic Acid Diethylamide)라는 환각제는 196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젊은이들이 폭발적으로 복용해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 이 환각제를 복용하고 고층빌딩에서 자살하는가 하면 한 여자는

알몸으로 거리를 질주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LSD는 '70년대 미국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자취를 감추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LSD가 '90년대 초 처음으로 적발되면서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고 급속한 확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SD는 극소량인 25 마이크로그램(먼지1입자 크기)만 투약 후 30분 후 효과가 발생하며 6-12시간 동안 환각증세를 지속시킬 만큼 강력하다. 게다가 환각증상으로 의사소통에 대한 탈언제, 시청가 이상을 수반한 감각 변화, 체감각 이상, 공감각, 시간감각 상실 심하고 염색체에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켜 기형아를 출산, 유산 등 심각한 후유증이 뒤 따른다. 또 LSD는 환각증서에 예측할 수 없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LSD는 다른 마약에 비해 매우 값싼 편으로 LSD 한 조각이 2만원 정도에 불과해 유흥가를 중심으로 젊은이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또 알약 형태거나 빨아 먹을 수 있는 형태로 제조되기 때문에 단속도 쉽지 않다.

(4) 펜플루라민

중국, 태국 등지에서 중국교포 보따리 장수, 관광객, 중국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밀수되는 마약류로 분불납명편, 분미림편, 섬수, 상주청, 철선감미교환, 건미소감비요환 등 제품명으로 판매하고 일반인에게는 살 빼는 약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사례로 '분불납명편'은 1999년 7월말 인천의 밀수조직이 62만정(7000명이 1개월 동안 복용할 수 있는 분량)을 중국에서 밀반입하려다 서울지검 강력부에 적발되었다. 이는 운동하거나 식사량을 줄이지 않고도 저절로 살이 빠지는 비만특효약으로 알려져 주부들 사이에서 알음알음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마약이다. 지난해부터 중국을 드나드는 보따리장수들에 의해 소규모로 밀반입돼 단속 이전까지는 서울 남대문시장 수입상가 등지에서 공공연하게 판매되기도 했다. 중국에서 비만, 고혈압, 당뇨치료제로 개발된 분불납명편은 중국 현지에서는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고 가격도 20mg짜리 알약 60정들이 1세트(20일분)가 3,000원 정도에 불과해 중국관광객들이 선물용으로 사오다가 통관과정에서 압수당하는 사례도 많았다.

분불납명편은 히로뽕과 비슷한 성분으로 식욕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

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복용을 중단하면 곧바로 다시 살이 찌는 등 결국에는 살 빼는 효과가 없다고 한다. 오히려 살 빼는 데 집착해 장기간 많은 양을 복용했을 때는 정신질환을 일으키거나 심하면 사망하는 일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국내에서도 과다 복용으로 환각상태에서 자식을 살해한 사례도 있다.

다) 대마 (마리화나)

대마는 칸나비스 속 일년생 식물로서 중국, 인도, 북부아프리카, 중남미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세기 전부터 섬유 및 천식, 각기병, 변비, 말라리아, 류머티즘, 두통 등의 치료약물로 재배 하였다. 국내에서는 1960년 이후 월남전이 한창이던 시기에 확산 되었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제외한다. 대마나 마리화나라 불리는 삼은 재배역사가 가장 오래된 식물 중의 하나로 과거에는 주로 섬유를 얻기 위해 재배하였으며 쾌락을 위한 남용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으며 미주지역과 아프리카는 주요 생산지이자 소비지역이며, 2014년 미주지역 압수량이 전 세계 대마초 압수량의 3/4을 차지하였고, 아프리카는 전체의 14% 유럽은 5%의 압수량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대마 줄기의 섬유는 삼베를 짜거나 로프, 그물, 천막 등의 원료로 쓰이고, 열매는 향신료의 원료로 쓰인다. 종자는 조미료용이나 기름을 짜는데 쓰인다.

대마 관련 약물로는 대마초, 해시시, 해시시 오일이 있다. 대마는 육체적 의존성과 정신적 의존성 그리고 내성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만성사용자는 정신적 의존성을 갖게 된다고 한다. 마리화나가 이와 같은 약리작용을 나타내는 것은 대마 속의 THC(tetrahydrocannabinol)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 물질이 대마를 사용할 경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약리작용을 주도하는 물질이다. 대마는 의학적으로 식욕의 증가, 진통효과 등의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주로 흡연의 방법을 이용한다. 대마의 흡입

시 심장박동이 증가하고 체온이 저하되며 식욕이 증진된다. 몸의 조정력이 상실되고 공중에 떠다니는 느낌, 혼돈, 실제사실의 왜곡이 뒤따른다. 또한 우울증, 공포, 불안이 심해지며 다량 사용 시 환각까지도 느끼게 된다. 장기간 사용 시 내성과 심리적 의존이 심해지며 지나친 양을 사용할 때는 편집증, 정실 질환과 같은 상태를 야기하며 심하게 사용하는 경우 만성 폐질환과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으며 생식기관의 기능 저하로 사망한 사례가 있다.(신의 기,2004.P.57)

라) 신종마약

신종 마약류란 용어는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어렵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신종 마약류란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마약류는 물론이고 과거에 있었을지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남용사례가 거의 없다가 최근 2000년도 들어 널리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를 일컫는다. 이들이 기존 마약류와 구별되는 점은 환각이나 흥분효과의 배가, 성적 각성능력의 증진, 체중의 감소 등 목적의식을 갖고 개발되었다는 점이고 특히 사용상의 불편을 크게 개선시킨 물질들로서 주로 향정신성의약품과 합성대마 등이다.

특히 정제 형태로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신종마약이 국내에 대량 유통되면서 의례 마약하면 1회용 주사기로 팔뚝에 정맥주사 사용 하였나, 음료수, 커피, 맥주 등에서 희석하여 투약사용 하고 있는 실태이다.

국내에서는 '98년 이후 수사기관에 적발된 신종마약'은 MDMA(메틸디옥시 메스암페타민), 태국산 '야마', 살 빼는 약으로 알려진 중국산 분불납명편(펜플루라민), 프로폭시펜, 태국산 '카트' 등 6~7종에 이르고 있다. 이들 신종마약의 특징은 무엇보다 알약 형태로 제도되어 사용하기 쉽고 일반 의약품과도 잘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관세청에서 적발하기가 어려운 데다 일반인들은 마약이라는 경각심을 갖기 어려워 쉽게 손을 대게 된다고 한다.

유럽이나 미국 등의 청소년들 사이에 복용이 확산되고 있는 신종 마약은 해외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 원어민 강사, 외국군인, 종사자 갖고 들어오기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신촌, 이태원, 강남지역에서 어학연구생 소지,

연예인, 국내 학생, 주부, 교수, 회사원, 농민들까지도 투약하는 등 신종마약류가 급속도로 확산 일로 있다.

(1) GHB (물뽕)

간마 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는 1961년에 프랑스 정신과 전문의 앙리 라보리에 의해 최초로 합성되었다. 물뽕은 속효성 마취제 및 최면제로 사용하고 수면 리듬 장애치료에 사용되었다. 미국에서는 1990년대에 중독문제로 직면하게 된다. 2001.3.30일 개최된 제44차 유엔마약위원회(cnd)에서 향정마약으로 분류하여 마약으로 규정된 물질로 우리나라는 2001.12.19.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에 포함시키면서 마약류로 규정하였다 무색무취의 물뽕으로 알코올, 엑스터시, 필로폰 회색 할 경우 효과가 증가하는 등 음료에 타서 복용하여 “물 같은 히로뽕”이라는 뜻으로 일명 “물뽕”으로 불리기도 한다.

약물효과로는 기분이 좋아지고 다소 취한 듯 하면서도 몸이 처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러나 단순한 음료가 아닌 알코올류에 희석하여 마시면 그 효과가 급속하여 의식불명에 까지 이르며 당시 상황을 기억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중독증으로는 현기증, 어지럼증, 구역질과 구토증, 졸도, 간헐적 경련성근 수축, 주변시결손, 초조, 서맥, 호흡곤란, 환각, 실신, 혼수상태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미국,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 성범죄용으로 악용되어 “데이트강간약물”로도 불린다.

(2) 야바 (YABA)

세계적 마약밀매조직인 “쿤사”가 개발한 것으로 태국에서는 ‘말처럼 힘이 솟고 발기에 좋은 약’의미로 국내의 사례, 1998년 9월 서울지검 강력분에 적발돼 국내유통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된 태국산 ‘야바’(Yaba)는 동남아시아에서 유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신종마약이다. 히로뽕 가루에 카페인과 파우더 색소 등을 첨가해 알약이나 캡슐 형태로 만들어진 야바는 마약밀매조직인 ‘쿤사’에 의해 가루형태로 생산된 뒤 태국 등지에서 알약이나 캡슐로 대량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캡슐 한 알(20mg)의 가격이 태국 현지에서 2,000~3,000원에 불과한데다 대개 의약품으로 위장돼 있어 국내로 대량 반입됐을 경우 순식간에 시장을 석권할 수 있을 정도여서 수사당국이 상당히 경

제하는 마약이다. 야바(YABA)는 강력한 환각 흥분제로 식욕상실, 불면, 정신 착란, 구토, 혼수와 같은 부작용을 발생시킨다.

(3)합성대마

JWH-018 일명‘스캅크’ 또는 ‘시파이스’ 대마의 주성분 THC와 화학구조가 유사하지만 대마보다 강력한 환각 효과를 내는 합성물질을 말한다, 건조된 식물에 합성물질을 흡착시켜‘식물성 제품’ 형태로 판매되고 이를 태운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신경 전달을 저해하고 불안, 동요, 발작이나 경련을 일으키며 그 효과가 대마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그 외 합성대마 성분으로 HU-210, CP-47497, AM-2201 신종 합성대마로 천연 대마초 보다 100배 정도의 강력한 효과를 내고 지속시간이 더 길다. 사용방법으로는 불쾌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젖은 빵, 말린 과일 등에 넣어 회석시켜 복용하거나 허부와 섞어 흡입한다.

(4)크라톱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자생하는 열대성 나무로서 말레이시아에서는 ‘Biak’이라고 칭하며, 성장 할 때는 15미터까지 자라는 식물이다. 태국이나 동남아시아 지역 사람들은 힘든 일을 견디기 위한 각성제로 수십 년부터 복용하였으며, 잎을 씹거나 차 형태로 복용하거나 분말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한다. 투약의증세로 소량 복용 시 각성효과로 이해 말이 많아지고 사요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한꺼번에 다량을 복용하면 지정과 도취효과와 함께 구토, 현기증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 (대검. 마약류백서,2016.P,28)

(5)프로포폴

영국 ICI 社에서 최초로 개발하여 1977년 임상시험을 거쳤고, 국내에서는 1992년부터 사용이 허가 병원에서 대장, 위장 검사 시 사용하는 마약류다. 수면마취제로도 불리는 정맥투약제로서 수술시 전신마취의 유도, 유지에 사용되거나 인공호흡 중인 중환자의 진정, 수면내시경 검사 마취 등에 사용되고 있다. 효과로 중추신경의 통증을 억제하는 반면, 불법 투약할 경우 무호흡과 혈

압저하 현상을 비롯한 두통, 어지러움, 경련, 구토, 착란 증상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약리학적으로 불면증, 피로감, 불안감을 해소하고 기분이 좋게 만드는 환각효과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병원종사자, 간호원, 의사, 유흥업소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남용됨에 따라 확산 차단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1년 2월1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4호 라 목으로 지정하였다.

제2절 마약류 중독정신 범죄사범 원인 및 현상과 특성

1). 마약류 중독의 개념

중독이라는 개념 정의가 그리 쉬지 않다. 그러나 중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면 연구자들은 회복을 촉진시키는 요인이나 병인 혹은 유병률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클 것이며, 임상가들도 정확한 진단과 그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만족스러운 치료 효과 사정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 또한 정책 입안자들도 중독물질이나 중독 관련 산업을 조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치료 수요를 결정하며 보건체계를 확립하고 의료보험금 지급을 위한 새로운 지침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중독의 정의에 따라 중독의 범위는 큰 차이를 보인다. 전통적으로 중독이란 용어는 자기 파괴적 행동들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중독의 정의를 가장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하나 이상의 불법 약물에 생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개인에게 중독자란 명칭을 제한적으로 붙일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는 대개 강력한 생리적 갈망, 금단증상, 그리고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약물을 필요로 하는 내성이 포함된다. 그 외에도 우리 민족은 중독적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교차중독자들이 종종 있으며, 우리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의 삶을 말한 때“내 할아버지는 술과 계집과 노름에 빠져서 가산을 탕진하고 집안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했던 과거의 언어들은 중독의 시초라 할 수 있다.(최은영,2008,p.12)

2).마약류 중독 원인과 특성

가) 마약류 중독의 원인

마약류를 사용하는 이유는 마약을 사용하는 개인만큼이나 다양하다. 그러나 인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심리학적, 사회학적, 생물심리학적, 연구에 의하면 인지적 요인, 태도적 요인, 사회적 요인, 성격적 요인, 약물학적 요인, 발달학적 요인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중독의 원인을 어떤 하나의 원인으로 보기보다는 중독이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요인 등이 결합하여 나타나는 심리-사회-생물 모델로 보아야 한다. 특히 이런 요인들이 정신분열증 증상을 일으키는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사용 할 경우 환각과 망상이 나타나는 물질 유발성 정신장애가 생길 수 있다.(김문수외3,2006.p,588) 사회과학적 정책 차원에서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그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를 위한 완전한 요인정립이 없다. 그러나 현 연구자들은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대체적으로 일반화된 요인들인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크게 3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개인적 의지와 다양한 모델방법을 통합해서 정신적 건강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1) 신체적 의존과 심리적 요인

마약류를 사용을 멈추면 콧물, 한기와 열, 불면 및 통증에 대한 과민성 등 심한 신체증상들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바르비투르 중독자들의 경우 불안, 불면, 경련 그리고 만성알코올 중독자도 진전, 구토, 위축, 빈맥, 증상이 심하면 정신착란, 발작 및 환각이 나타났다. 이런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금단에 뒤따르는 두려운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상습적 사용하는 것이다. 심리적 요인에서는 금단에 문제가 아니라, 쾌락적 효과를 얻으려는 욕구의 바탕에서 마약류를 사용하게 된다.(박소현외1명,2008,p.46) 그리고 정신의학적인 내용으로는 대표적인 이론가로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인 프로이트 말하는 심리학적 요인에 설명하는 이론들은 정신분석적 측면에서 정신역동적인 면을 강조하

고 성격 면에서 마약류 남용자의 성격이 비사용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면서(김성이,2002,p77) 마약류(약물)남용행위는 한 개인이 충족되지 않은 다양한 감정적인 욕구에 반응하는 행위양식이다. 다시 말해, 약물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며 더 자아적이고 보다 수동적이다. 곧 약물에 의존하는 사람은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하는 인성결함을 지닌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인성결함은 문제 있는 가족관계, 건전한 역할모델의 결핍, 모순적인 부모의 기대, 나를 가장 사랑하고 아껴 주어야 할 어머니조차도 자신을 버렸다.(최은영,2008,p.55) 그리고 애정결핍 등에 의해 형성된다고 한다. 정신분석학에 따르면, 인간은 주위환경과 상호작용 하는 과정 속에서 일련의 발달단계를 통하여 인성을 조직하고 발전시킨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의 무의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욕구충족을 향하는 대부분 무의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충동에 의해서 압력을 받는다. 이러한 무의식적 충동은 성장함에 따라 사회화되며, 각 단계별로 충족되거나 통제되어야 할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불충분하게 충족하였거나 통제하지 못한 사람들은 약물을 남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정서적인 긴장, 불안, 우울, 권태, 외로움 등의 상황으로부터 도망가고 회피하는 성격을 가졌을 때 약물은 하나의 좋은 도피수단이다. 도피성 심리가 반복될수록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더욱 떨어지게 되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도피심리가 더욱 심해지게 될 것이다. 억압된 성적, 공격적, 자기 충동적, 성취적 욕구의 좌절 등이 있을 때, 이를 현실이 아닌 약물의 세계에서나마 대리만족을 추구한다. 이러한 경우의 약물에 의한 반응은 즉각적이다. 마약중독자나 남용자들 가운데 이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자신을 특별한 인간으로 느끼며 특별한 대우를 요구한다. 끝없이 요구하고 즉각적인 만족을 원하는 성격이며, 남의 비판에 대해 못 견디며 화를 낸다. 대인관계가 힘들고 남을 학대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존심이 너무 약해 우울증으로 넘어간다. 유아기와 아동기의 해결되지 않는 갈등의 결과로, 마약류의 사용은 이러한 갈등을 밖으로 표출하는 미성숙아 반응이라고 하며, 1세 3세 될 때까지의 시기로서 입을 통해 만족을 얻는 시기이며, 이 시기동안 만족의 정도에 따라 특유의 성격이 형성된다. 만약 구강기의 성격형성이 잘못될 경우에 나중에 성인이 되어

약물이나 마약에 심취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때의 마약류 사용자는 수줍음이 많고, 소외되어 있으며 참을성이 없고, 쉽게 자극에 흥분하며 지나치게 예민하고, 조절, 불안, 의기소침하며 욕망의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성적으로 억압되어 있는 특징으로 이러한 성격이 부적절할수록 마약류 사용에 고도로 관련될 가능성이 보다 커지고 남용의 가능성이 높다.(김성이.2002.p78)

(2) 사회적 요인

사회학적 요인에서는 보다 크고 구조적인 요인에 특징으로 개인이 아니라 개인이 놓여 있는 상황, 사회관계 또는 사회구조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약 중독의 원인에서 사회학습에 따라 중독자의 가정문제, 동료집단의 문제, 학교 생활의 문제, 사회경제적 문제, 문화와 가치관의 문제성을 통해 요인들을 생각 할 수 있다. 첫 번째 마약류 중독자는 가정환경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 가정의 구조적 면에서의 문제보다는 기능 면에서 문제가 보인다. 부부간에 관계가 좋지 않고 이혼, 재혼, 부모들의 직업군, 청소년 시절 신체적, 성적 등 부모들의 학대와 기억, 사회적 무관심 등 인하여 청소년시기에서 청년기에 유해화학물질, 마리화나 성인마약 범죄로 전환하고 중독에 빠지기 쉽다. 이러한 현상들이 마약류 남용행위는 성격상 상호 연관된 복합적인 사회적 변수들에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사회적 행위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이론 중 사회적 학습이론에 따르면, 약물남용의 빈도가 증가하는 조건으로, 약물사용 역할모델에 더 크게 노출될 때, 약물을 사용하는 또래 집단과 성인과 더 많이 교제할 때, 긍정적인 보상은 더 많은 반면 부정적인 반작용이나 처벌은 더 적을 때, 약물사용에 대해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인 정의를 하기 보다 긍정적인 정의를 할 때, 약물을 사용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준거집단 이론에 따르면, 약물남용은 또래집단이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결과로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곧 준거집단의 영향력은 또래 집단 압력에 대한 순응을 포함하는데 그 내용은 약물사용 기술의 학습, 하위 문화에 의한 약물효과를 즐기는 방법의 학습, 그리고 이러한 약물효과를 즐기는 것으로 규정하거나 사회적 모형 혹은 모방의 전형적인 예로서 제시한다.

약물남용은 한사람으로 시작되는 것이지만 가족 구성원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서두의 말과 같이 가족구성원 간의 좋지 않은 관계, 부부 간 혹은 부모 자식 간의 갈등, 부모의 무관심, 이혼 등으로 인한 가정파괴 등 가정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가족 구성원 간에 불만과 걱정, 두려움, 혹은 적대감까지 갖게 되면 청소년들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집밖에서 보내게 된다.

결국 청소년들은 저질 외래문화 산업화와 함께 나타난 쾌락추구현상 및 금전만능주의의 사회풍조는 청소년들을 방황하게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마약류 남용에 접근하는 것이다. 또한 외부 환경의 자극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노출된 상태에서 약물남용을 목격하게 되고 그것을 배우게 된다. 또한 부모의 모습은 영향력 있는 모델이 되어 어린이들은 그들의 행동모형을 부모들과 동일한 형태 안에서 구한다. 사람은 사회적 행동을 배우고 수용하는 방법으로 집단에 참가하고 동료들의 행동에 대처하는데, 동료집단의 압력은 개인의 행동에 명백한 영향을 미친다. 약물남용이 보편화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은 약물남용이 여러 나쁜 행동중의 하나에 불과하며, 약물 남용이 일반 청소년 사이에서도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처럼 인식함으로서 자신의 약물남용행위에 대한 죄의식을 약화시킨다.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있는지, 학교에서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는지에 따라 약물 남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마약이나 중독성 약물에 심취하는 청소년들 가운데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좌절적 반응으로서 약물의존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며(이해주외2,2006,p,130) 종교적 의미에서 영적 경험을 촉진시키거나 종교적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인지 변화를 위하여 마약을 사용한다는 주장도 있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약물을 사용하고 도시빈민지역에 집합하여 살고 있는 빈곤 계층은 의기소침하고 좌절감을 느끼며, 이런 좌절이 약물을 사용하게 하기도 한다.

(3) 생물심리학적 요인

생물학적인요인과 심리학적 결합 가설로 생각 된다. 행동에 대한 상식적인 설명은 ‘그는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어’, 또는 ‘그는.....를 원했기 때문에 그랬어’에서 의도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 할 때가 종종 있다.

(김문수외3.2006.p,3)생물학적 측면에서 유전적 요인, 즉 유전자의 합성이 약물남용에 접합한 생물학적 메커니즘과 관련 있다고 하며, 부모가 약물중독자이면 자녀는 약물중독이 아닌 부모의 자녀에 비해 중독자 될 확률이 높고, 중독자자녀 입양 후 정상부모 입양자 보다 중독될 확률이 4배라고 한다.(김성이,2002.p,85) 그리고 생화학적 견지에서 모든 심리, 행동적 물질에 신체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신체는 약물성분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적응하게 되며, 인간의 신체는 너무나 적응적이기 때문에 어느 한계를 지나면 약물분자는 신체적 기능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라고도 한다.(김성이.2002,p,88) 최근의 언론보도에서 마약류 중독자, 흡연중독자 등이 외부인 노상, 공연장등에서 환각상태의 증상에 배회하면서 각종 사회적 무리를 자행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원인들은 유전적 원인으로 연구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중독에 있어서 도파민의 뇌 기능을 보충하는데 도움이 되는 약물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정용인,2006) 이에 따라 모든 약물이 생물학적 원인으로 보기보다는 마약류의 자체의 약리학적 특성이나 개인의 기대심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다른 연구자들의 견해에서는 마약류(약물)중독으로 발전할 개연성은 부분적으로 생물학적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 육체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물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물질이 불균형하거나 어떤 물질이 많다면 감정과 행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생물학적 요인에는 유전적 요소, 신경학적인 요소, 특이한 생리학적인 요소 등이 있다. 가족연구(family study), 일란성 쌍생아는 이란성 쌍생아에 비해 2배의 일치율 쌍둥이 연구(twin study)를 통해 알코올 중독의 경우 알코올 중독자 부모를 둔 자녀는 그렇지 않은 자녀보다도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거의 4배 이상으로 유전적 요소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점차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최영인외1명.p105). 그리고 뇌(brain)에서 신경메세지가 전달되는 과정은 전자화학적 과정으로 뇌에 들어간 약물은 이 과정을 쉽게 방해할 수 있다. 약물남용자가 경험하는 뇌의 화학물질 이상의 정도는 사용한 약물의 유형과 양 및 빈도 그리고 개개인의 신경물질 구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다른 요인보다 현 사회에서는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된다.

나). 마약류 중독자의 현상

한 인간의 생활은 육체적·정신적 및 사회 문화적인 적응이라는 뜻을 포함한다. 이 적응이 적절하게 됨으로써 그는 안녕 질서를 유지하는데 서계보전기구WHO는 이런 육체적·정신적 및 사회적인 안녕 상태가 유지될 때를 건강한 상태라고 정의하였다.(이정균.1994.p.125) 정신질환을 포함한 모든 질병의 임상증상은 이런 것들 각각의 적응이 원만하지 못한 상태가 겹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들 상호관계에서의 조화가 깨어짐으로써 나타날 수도 있다. 정신질환에서 보여주는 증상과는 달리 쉽게 계량화하거나 객관화할 수 없다는 특징과 자각적인 증상의 호소와 관찰자의 객관적인 관찰결과를 쉽게 구분할 수 없다는 특징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전정수.2004.p.8)

일반적으로 질병의 증상은 그 개인이 어떤 부분(신체적·심리적)의 결손상태 때문에 생기는 기능장애의 결과로 나타나는 증상과 그 결손상태를 보상하기 위한 개체의 노력으로 인하여 생기는 증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정신질환에서는 증상이 어떤 곤란한 상황을 이기지 못하는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곤란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뜻이 된다. 한편 정신질환의 증상은 어떤 생물학적인 장애로 인한 증상과 그 장애를 극복하려는 심리적인 과정이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정신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 즉 사고장애, 정동장애, 의지의 장애, 지각의 장애 및 행동의 장애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들 각각의 증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들 각각의 증상들을 통괄하고,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각 증상들 하나하나가 환자의 전체적인 정신현상의 어떤 문제를 반영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신질환의 증상은 지능의 장애, 지각의 장애, 사고의 장애, 기억의 장애, 정동의 장애, 의지의 장애, 의식의 장애 및 이들 각각의 장애나 복합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개체의 행동의 장애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정균.1994.p96)특히 마약 중독에 의한 정신질환 즉 환각 증세는 환시, 환청, 환촉, 환후, 환미 등 정신약물학적 특성이 있다.

환각(auditory hallucination)은 마약류 중독자에 나타나는 것으로 환각 중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것이 환청이다. 단순하게는 잘 구별되지 않은 소음들

부터 뚜렷한 내용이 있는 특정한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는 것까지 그 내용이 다양하다. 때로는 거의 들릴 듯 말 듯하게 약한 경우에서부터 심하게는 너무 지나치게 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환자가 공황(panic)에 빠지기까지 할 정도로 그 강도 또한 여러 가지다. 같은 소리가 반복되어 계속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들리기도 한다. 의식이 혼탁한 상태에 있을 때에 환청이 나타날 경우는 기질성뇌증후군이 의심되는 경우가 많고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환청이 들리는 경우는 정신분열증(schizophrenia)이나 정동장애(affective disorder)인 경우가 많다. 정신분열병에서는 환청의 내용이 그의 망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나타나는 수가 많은데 자신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지시하거나, 자신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모의를 하거나, 자신을 욕하는 내용의 환청은 피해 적 내용의 망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수가 많다. 우울증환자의 경우 자신의 죄책감·조물주 등이 자신과 얘기를 하고자 하는 환청이 들리므로 자신도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라는 과대망상과 관계가 있기도 하다. 정신분열병환자 중에는 이중사고(double thinking)라고 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외부로 투사되어 그것이 말이 되어 들리거나 모양이 되어 보이는 수가 있는데 이는 순수한 의미의 환각과는 구별해야 한다.

(1) 환청

환각의 일종으로 그 중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다. 환청은 뇌의 생화학적 물질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다. 예를 들면 정상인도 필로폰을 맞으면 환청을 들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약물이 뇌 안에서 도파민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환청의 종류는 벌레울음소리, 소음 같은 단순한 잡음에서부터 뚜렷한 내용이 있는 특정한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는 것까지 다양하고, 사람 말소리인 경우에는 대부분 간섭하거나, 욕하거나, 명령하는 내용으로 환자에게 불쾌감을 준다. 그러나 환자를 즐겁게 하고 아첨하는 내용도 드물게 있다. 조현증(정신불연증)환자의 경우 특히 현저하게 나타난다. 환청 때문에 보일 수 있는 행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의가 산만하거나 어떤 생각에 몰두되어 말을 걸어도 즉시 대답하지 않는다. 허공을 보고 무엇이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며, 중독자가 애인의 환청 대화로 중독자 자신 음경을 절단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2) 환시

환시(visual hallucination)는 환청보다는 적지만 다른 환각보다는 많다. 단순한 작은 물체나 이상한 빛이 보이는 수도 있고 심할 때는 영화 화면같이 복잡한 경우도 있다. 정신분열병이나 정동장애에서 보다는(delirium tremens) 열성담망(febrile delirium cocaine) 중독 등과 같은 급성기질성뇌증후군 상태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때는 대개 작은 짐승, 벌레, 무서운 형상의 괴물 등이 눈에 보여서 환자가 공포상태(fear)에 빠지는 것을 흔히 경험한다. 왜소환각(lilliputian hallucination)이라고 해서 동물이나 사람이 실제보다 아주 작은 모습으로 축소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뇌의 후두엽피질(occipital cortex)에 국소적인 병변이 있을 때는 비정형(unformed)의 환시가 주로 나타나고 측두엽(temporal lobe)이나 두정엽(parietal lobe)의 병변인 경우는 정형(formed)의 환시가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환시가 나타날 때에 환청만 나타날 때 보다 환자는 더욱 심한 혼란에 빠지는 것이 보통이다. 심인성인 환시의 경우는 환청과 마찬가지로 그의 사광애와 연관이 있는 수가 많다.(이정균,1994.p125)

(3) 환촉

환촉(tactile hallucination)은 뜨거운 것, 찬 것이 몸에 닿는다든지, 몸에 전기가 지나간다는 등, 가스나 독성물질이 자기 몸에 닿는다든지, 보이지 않는 물체가 피부에 접촉하고 있다는 등의 환각을 말하는데 대개는 알코올 중독이나 진전섬망, cocaine 중독증에서 흔히 본다. 정신분열병의 경우에는 교묘한 수단으로 자신이 강간했다는 등의 성적인 망상과 곁들여서 유방이나 항문주위, 또는 치부에 이상감각을 느끼는 수가 많다.(지영환,2004.p.34)

(4) 환미

환미(gustatory hallucination, hallucination of taste)는 매우 드문 환각의 하나다. 매우 이상한 맛을 느낀다든지 음식에서 독약 맛이 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순수한 환각이라기보다는 착각인 수가 더욱 많다. 이러한 현상은 마약류 중독자중 특히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중독자들에게 흔히 나타난다.

(5)환후

환후(olfactory hallucination)는 대개 기분 나쁜 냄새를 맡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신분열병일 경우는 대개 자기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남들이 자기를 피하는 망상을 곁들이는 수가 많다. 성과 관련되어서 자신의 몸에서 정액 냄새, 암내, 썩는 냄새 등이 난다고 자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상의 전형적인 환각 외에 몇 가지 특이한 환각경험들이 있다. 입면시환각(hypnagogic hallucination)은 잠이 들려고 하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환각이고, 각성시환각(hypnopompic hallucination)은 잠이 깨려고 할 때 일어나는 환각인데, 정상인에게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런 현상은 가벼운 신경병적 장애·인격 장애·편집상태·우울증·정신분열증·주정중독·간질·약물중독·급성뇌증후군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이런 환각은 대개 짧은 순간에 지나가는 수가 많다. 반사환각(reflex hallucination)이란 한 감각기관을 자극했을 때 그곳과 거리가 먼 다른 감각기관에서 지각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하는데, 치아에 와 있는 열등기포신경(inferior alveolar nerve)를 자극했을 때 환청이 들리는 경우가 그 예다. 연동환각(kinesthetic hallucination)은 절단된 사지가 존재하는 것 같이 지각하는 환상수족(phantom limb), 또는 사지의 모양·크기가 다르게 느껴지는 환각, 몸이 움직이는 것 같이 느끼는 환각 등을 일컫는다. 신체자아(body ego)의 장애와 연관되어 나타나는 수가 많고 중독실태 특히 환각제(hallucinogen)에 의한 환각일 때 많이 나타난다.

3). 마약류 중독의 인간학적(정신,심리,생물) 특성

가)중독적 사고

중독과정에서 갈망이 커지면 뇌의 기능적 적응작용에 의해 이 갈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향으로 사고방식이 변한다. 즉 술을 찾아 마셔서 충족되는 쪽으로 이유가 달도록 생각하게 되고, 술을 마시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자동사고가 지배적이다. 중독자의 “강박성”이 생기는 것도 사실은 이 때문이고 갈

망이라는 생물학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쪽으로만 생각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도 중독적 사고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트위스키의 학자는 왜곡된 생각들을 중독성 사고라 하고, 중독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생기는 일종 “자기기만식 사고의 왜곡”이라고 하였다. 그 전형적 패턴은 부정, 합리화, 투사, 갈등, 병적기대, 만능과 무능 등으로 보았다. 특히 트위스키가 강조한 것은 중독자들이 자신의 취약성과 수치감으로 은폐하기 위해 다른 곳에 자기의 문제를 전가시키고, 원인과 결과를 뒤집는 기전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우울증이 있다든지 가정불화가 있어 고민이나 고통을 잊기 위해 알코올을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알코올중독자의 좋은 예가 된다.(한국학교폭력상담협회.2015)

나)잘못된 지각(착각)

약물 사용자들은 잘못된 착각에 대하여서 정신건강을 통해서 ‘중독과정의 경험을 본인이 회복된 후에 되돌아보면서 겪은 내용이 정확하게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왜 스스로 기만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는지 그 혼란스러웠던 세월 동안의 경험을 객관적인 안목으로 합리적으로 기술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지각 기능이 중독되었을 당시에 정확하지 못하고 왜곡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중의 한 예가 과민성인데, 중독기간에는 작은 자극에도 유별나게 또는 과장되게 크게 반응한다. 전형적인 것이 쉽게 분노하는 행동이다 어떤 중독자들은 대인관계에서 남에게 거절당하는 데 예민해지는 경우가 있다. 술은 누가 원할 때 그것을 쉽사리 거절 못하는 경우, 물론 술에 대한 갈망이 있는 이유도 있지만 혹자는 술좌석에서 동료에게 거절되고 소외되는 데 대해 지나치게 신경을 쓰기 때문에 거절을 못한다. 또한 마약 중독자들은 현실에 대한 지각도 왜곡되어 있다. 그들은 뭔가 현실이 자기에게만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전문상담학회.2015년)그래서 자기가 부딪힌 작은 장애물이 있으면 잉에 대해 과민반응을 하면서 불만을 크게 터트린다. 매사에 만족을 못하는 이유는 세상이 특별히 자기를 부당하게 대우한다는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중독과정에서는 현실을 보는 눈도 멀러져 세상만사에 난관적인 되기도 한다. 또 “나는 괜찮다”는 일종의 예외 의식이 현실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마약중독자들은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점 점 무감각해지고 동시에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있어도 낙관적인 착각을 하게 된다.(한국학교폭력상담협회.2015)

다)감정의 혼란

마약중독자들의 회복기에 있는 사용자는 종종 우울증상을 경험한다고 말한다. 특징적으로는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자신이 중독 상태에 있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겪은 여러 가지상실을 되새기면서 우울해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우울 증상들은 자살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주의가 매우 필요하다. 중독자들이 보여주는 보편적 감정을 문제가 주로 ‘수치심’과 ‘죄책감’의 처리방식이다. 스스로 중독의 강박성을 조절하지 못하고, 빈빈히 자기감정 조절에 실패하게 되는 허약성에 대한 수치감과 자신의 중독 행위 때문에 주변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끼친 상처에 대한 죄책감이 가장 큰 보편적인 감정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와 같은 감정들을 절실히 느끼는 것처럼 외형적으로는 보일지 모르나 사실은 진실히 느끼지 못하며, 표현하지 못한다. 그 대신에 억압과 회피 또는 외재화시키는 적응방식을 사용한다. 외재화 방어기전으로 “투사”가 흔하게 쓰여 지는데, 중독자들은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히로애락의 여러 감정들을 물질이 대신 다루어 주었기 때문에 맨 정신으로 감정을 다루는 것이 어려워 감정이 촉발되는 상황에서 당황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한다. 중독자들은 특히 이해하고 표현할 줄 아는 새로운 감정 관리의 방법을 배워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한국상담협회.2015.p,73)

제3절 마약류 중독정신 범죄의 개념과 사범의 특성

1) 마약류 중독정신 범죄의 개념

마약류 상습투약으로 인한 범죄는 각성제, 억제제, 환각제, 마약, 대마초를 불법으로 흡연 등 투약 사용 행위를 하는 그 자체가 범죄이기도 하지만 투약 사용으로 환각으로 인한 자제력 상실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와 강력사건을 범할 수 있다. 각성범죄 여러 가지 마약류 중 메스암페타민 투약에 의해 두 가지 범죄가 발생한다. 한 가지는 각성제인 메트암페타민, 즉 필로폰이라는 약물의 힘을 이용한 각성범죄 행위이고 그리고 마약을 투약하다 중독되어 환각상태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다. 각성제라고 불리워지는 필로폰은 고도의 정신집중을 요하는 범죄 집단에 이용된다. 소매치기, 강도, 강간, 살인 등 대담성이 필요로 하는 자들이 필로폰을 복용하고 범죄의 행위를 한다. 또 하나의 범죄는 필로폰이나 바르비탈류를 몰래 먹여 상대방의 의식불능상태를 기다려 범행을 실행하는 행위이다. 대마초를 흡연하고 살인 등 30여 차례 범행을 하고 승용차에 탄 가족을 생매장 했다. 이러한 범행은 일가족을 암매장 한 사건의 본질은 극도로 악랄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어린이와 노인을 살해해 인산이기를 포기하는 만행의 일종이었다. 각성제 복용에 의해 파생되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 포괄적으로 각성제 범죄라 한다. 각성제에 의한 피해자 중에는 임신 3개월 된 주부도 있다. 특히 성폭행 피해자는 여중고생이 있다는데 심각성을 더해준다. 이들에게 성폭행 당한 여중생은 충격을 받고 정신착란 증세를 일으켜 정신요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환각제의 마약류를 과량으로 사용하면 환각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환각성의 정신적 문제는 소리를 볼 수 있고 색깔을 들을 수 있으며 색깔의 맛도 느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환시, 환청, 환취, 환촉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지속적으로 진행된다.(주왕기,1997). 이러한 환각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 환각성 범죄이다. 즉 환각상태에서 살인, 방화, 강도, 인질, 폭력, 교통사고 등 난동 행위를 한다. 마약류 투약에 의한 금단증상에 의해 정신착란은 물론이거니와 환락과 전락의 교차 상태에서 더욱더 심각해진다. 나이트클럽 무용수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운전을 하았는데 갑자기 뒤

따라오던 영업용 택시가 경찰차량으로 보였다. 그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고 착각하고 도망치다 시내 중심가 도로 중앙선을 넘어 차를 운행하는 등 광란의 질주를 벌인 것이 환각상태에 의한 정신범죄이다. 그리고 정신병원에 입원해있던 필로폰 투약자는 갑자기 나타난 환시 현상에 의거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간호사 동물로 보이고 있으며, 동물이 자신에게 다가와 해친다고 하여 철제의자로 간호사 머리를 때려 살해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는 불특정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행동으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의 안전을 해치는 것이다.

2) 마약류 중독정신범죄 사범의 특성

가) 범죄의 점조직성

중독자들의 유통구조는 마약류범죄의 특성으로 마약류를 음성적인 점조직 범죄의 특성을 가진다. 특히 마약류를 공급하는 자들은 간첩조직에 비견될 정도로 노출되지 않는 점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전경수,2002,p222.) 이들은 평면적·일방적 연락점선에 의해 마약류를 밀거래 한다. 마약류를 거래하다가 검거되어도 차상선인 상선이 파악되지 않는다. 수사관들이 공작수사를 차단하는 특이한 물건 교부 및 대금결제방법 또한 마찬가지다. 그리고 검거되더라도 노숙자 또는 무전과자, 허무인 사람을 주범으로 내세우며 밀거래 범죄에 가담한 공범자를 은폐시킨다.(전경수,2002.p3.)

나) 범죄의 지능화

마약 범죄자들은 인터넷 마약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수사기관에서는 모니터링 전단 수사관까지 배치하고 있으며, 유통과정에서도 인터넷 사이트에서 관리되지 않은 사이트나 포털 사이트 게시판 등지에 올라온 글을 보고 판매자와 접촉하면서 텔레그램이나 위챗 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 거래하고 있다. 또한 제조 또한 숙련된 제조기술을 가지고 있고, 마약류의 순도

나 약효를 구분할 수 있으며, 다양한 공급선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마약류범죄 중 밀매범죄는 치밀하고 교묘한 범행수법이 필요함에 따라 단속을 피할 수 있는 자구책을 강화하는 등 그 범죄수법이 지능적이다. 예를 들어 마약을 밀거래 하는 장소 시간선택에 있어서 접선시간 이전부터 관찰, 조망하여 제1, 제2접선장소로 유인한다. 그리고 마약류를 운반할 때는 택배, 영업용택시 등 고의가 없는 자를 활용하기도 한다.

다) 장비의 첨단화

마약류범죄는 제조와 공급에 있어서 과거에는 삐삐, 전화 등으로 국내에서 공급하였으나 90년 이후 부터는 정밀한 통신자료, 핸드폰, 대포폰 등으로 거래 위장하여 공급하며, 20년도 에는 공항, 항만 의 밀반입 수단으로 해외 국제우편, 특송화물, SNS ,브로그 통해 밀반입하고 있어 휴대전화 통화와 SNS 기록 등 통신수사 장비가 필요하며, 공급책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은어사용과 인편을 역으로 이용 사례 있다.

라) 범죄의 광역 신속화

마약류 범죄사범들은 전국 무대에서 신속하게 개인 위장차량, 버스, 기차 , 퀵서비스 , 택배 공급, 전국 시차 간 생활권에서 공급되고 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원료의 수입 · 제조 · 판매 · 투약 등이 국제적 연계 하에서 국경을 넘나들며 국내에서는 전국적인 조직망에 의해 유통되는 광역범의 특성을 가진다. 특히 인접국가에서 제조 및 생산되면 어느 한나라의 차단만으로는 근절이 어렵고 이러한 피해는 개인과 가족에게만 국한하지 말고 정부와 시민, 수사기관 협력에 의하여 광역화 공급을 차단하여야 할 것이다.

마) 범죄의 상습성

마약류범죄는 사용행위에 있어서는 정신적, 육체적 의존성 때문에 범행을

만족하고, 판매행위에 있어서는 자은 금액으로 투약자 하여 막대한 불법이득의 유혹 때문에 범행을 반복하게 되는 상습범의 특성을 가진다. 마약류공급자들에 교묘한 범죄행위에 의거 형성된 수요계층 투약자들은 마약류의 강한 신체적·정신적 내성과 의존성에 의하여 사용의 성취감 때문에 지속적으로 마약류를 찾게 된다.

사) 범죄의 복잡성

마약류범죄는 폭력조직과 국제범죄조직과 연계되어 있는 복잡성의 특징을 가진다. 주요마약류의 생산과 소비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는 힘들어 범죄조직에 의하여 유통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외국사례에서는 마약류거래는 불법적으로 엄청난 규모로 행해지고 있으며 그 조직은 군대에 못지않은 화력으로 중무장하고 국가의 법집행을 위협하는 요소로까지 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조직은 마약류거래로 획득한 엄청난 규모의 부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범죄조직으로 발전하고 있다.(윤민하,1994,P,4) 마약류의 불법거래는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반면, 그 유통단계가 복잡하여 단독으로 행하기는 힘이 들기 때문에 생산에서 소비자의 손에 이르는 거래의 각 단계마다 범죄조직이 깊이 개입하고 있다.

3). 마약류 중독정신사범의 관련범죄

국내 법 규정에는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예관특례법 규정하고 있으나 마약류 관련 법규로 처벌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류 중독정신범죄 사범들의 관련 범죄로 밀 제조범죄, 재배, 밀수출입범죄, 공급판매, 소지, 알선, 보관, 운반, 투약사용범죄로 분류 처벌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4개의 범죄의 유형에 대하여 설명한다.

가) 밀·제조범죄

국내 마약류 불법 제조사범은 70년 부산지역에서 제조책 상급자로(상선제조책) 기술 전수제조 방법과 화학 관련 전공자들에 의해 만들어 공급되었다. 중국, 대만 등지에서 원료를 구입하여 약품을 희석하는 방법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예컨대 화학제조 회사라고 등의 간판을 내걸고, 산간벽지 오지에서 제조하며, 80년도 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제조 공급하다가 원료물질 등 구입에 어려움으로 대만, 중국 시골 공가에서 위장 가판아래 제조하여 국내, 해외 등에 공급하고 있다. 90년도에 서울 지역에서 감기약 (리미나)에서 에페드린 원료물질 추출하여 제조사실이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단속 현장에서의 주의사항으로 미국의 사례, 마약제조 장소 단속시 수사관들은 여러 장비를 소지하고 현장에 급소하는데 제조책들이 화약약물로 대항하는 사례가 있어 철저한 대비 단속하여야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사례는 발견 할 수 없다.

나) 밀수출입 범죄

마약류의 불법 수출입은 주로 인터넷, 선박, 비행기를 이용 화물, 소지, 은닉하여 이루어진다. 선박, 비행기의 입출항 · 이착륙을 감시, 공항세관 · 해양경찰서의 공무원에 의하여 단속된다. 그러나 매일 입출항 · 이착륙하는 불특정 다수의 각종 여객, 승무원을 상대로 마약을 밀수출입 여부를 이착륙하는 단계에서 적발한다는 자체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사범을 즉각 적발하는 데는 당초부터 특정 선박의 승무원 내지 여행객이 마약을 밀수출입 한다는 정보가 확보되어 그자에 대하여 즉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무원 내지 여객을 모두 밀수출입 범인으로 의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적당하지 않고 또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해양경찰대원이나 세관원이 그 고유의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마약을 소지한 자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마약 수출의 양상도 종전의 휴대형식 외에 생활용품의 용기 등 은밀한 곳에 마약을 숨겨나가는 방법을 택하였으나 전과 없는 타인 상대로 접근 밀수출하는 사례가 있다. 여행하는 할머니 상대로 접근 운반책으로 이용하고, 미꾸라지를 수출하면서 그 용기의 중간부분을 땀질하고 그 사이에 마약을 은닉한다든가 자개농을 수출하면서 밑바닥에 마약을 깔아 넣고 그 밑에 은닉한다든가 맥주

병의 술을 쏟아내고 그 속에 마약은 넣은 다음 교묘하게 뚜껑을 붙이는 방법 등으로 마약을 수출한다. 그러나 장애인 목발, 각종용기, 술병을 파괴하지 않고서는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어 시간과 공간의 장애요인으로 단속이 어렵다.

마약류 밀매자 주위에는 공범자가 존재하는 것이 통레인바 수술의 실행을 실제 담당하는 자는 공범자 중에서 비교적 낮은 지위에 있어 주범을 검거하더라도 소비자는 마약을 외국에 수출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든가 가공인물이 시켜서 단지 심부름 한 것에 불과하다는 변명을 함으로써 법정형이 높은 수출죄의 성립을 부인하면서 오직 방조범의 자격만을 강조하기도 한다. 대규모 밀매사건에 있어서는 자금책, 구입책, 소매책, 중간책, 전화담당책 등 여러 형태로 공범 인들을 관여시키는 수법으로 구체적 사건처리에 있어 실무상 정범과 방조범 구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첫째, 중국산 필로폰(어름, 빙두), 북한산 필로폰 이외에도 남미 지역의 코카인, 중국 등 동남아 및 서남아 지역의 헤로인, 생아편, 대마초, 해쉬쉬 등 각종 마약류가 국내시장 개척 목적으로 밀반입되거나 미국, 중국, 필리핀, 태국 등 제3국으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경유지로 이용하고 있어 마약류 공급선이 국제화, 광역화, 다변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필로폰에 카페인 등을 혼합하여 정제형태로 가공한 값싼 마약류인 태국산 야바, 디아제팜, 중국산 펜플루라민, 신종마약류를 대량으로 밀반입되어 국내 외국인, 외국인 산업체 근로자, 유학생, 연예인, 택시기사, 화물기사, 클럽이용자, 영어강사 비만여성들에게 거래되고 있어 중독자가 발생되고 있다.

둘째, 국내체류 외국인들의 증가와 함께 이들에 의한 다양한 범죄 등 불법 행위증가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초기 마약류범죄 개입을 적극 대처하지 못할 경우 이웃 일본 등과 같이 1회 투약량 암거래 소매상들이 야쿠자 등 폭력조직과 연계한 이란인들이 판매행위에 나서게 될 우려도 농후하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이들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마약류범죄 개입증가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미국(DEA) 등과 공조하여 철저한 정보수집, 지속적인 동태 감시 및 위장거래수사 등을 통한 단속활동 강화 하여야 한다.

셋째, 폭력조직이 마약류 유통 범죄를 장악하고 있는 대부분의 외국 국가들의 경우에는 범죄조직 특히 총기 등으로 중무장까지 한 범죄조직에 의한 마약류불법거래 행위는 부패 문제와 함께 마약범죄조직에 협력하지 않거나 장애가 되는 정치인, 공무원, 언론인들을 위협하고 사살하는 공권력 훼손문제로 이어지는 경우 전쟁을 방불케 하는 "마약과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집단이다. (중앙일보2001)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80년도 부산지역 주변에서 개입하였으나 수사기관의 단속과 원료물질 구입 등으로 대만, 중국으로 이동 제조하여 국내 등 중남미 등에 밀수출하고, 북한이탈자 중국교포들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공급책들로부터 꾀임에 가담하고 있다.

다) 소지 투약 .사용범죄

우리나라는 전체 마약류 사범 중 학력별로는 초등학교에서 대졸,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 사용횟수는 주1회 27.3%, 3월 1회 10.3%, 월1회 14.0%, 일1회 13.8% 순으로 투약하고 있다. 대부분 1개월 이내 단기간 사용한 자이다. 그리고 2년 이상 장기간 상습자도 있다.

투약 장소로는 주로 가정집, 숙박업소 등 비교적 은밀한 장소를 이용하고, 거래 장소는 적발 시 도주하기 편리한 노상에서 주로 투약하고 있다. 이들 투약자들의 지역별 분포도도 서울, 부산, 대전 등 대도시 순으로 그 범죄 빈도가 높고 농어촌은 물론이거니와 과급효과도 전국적이다.

첫째, 연령별 투약범죄 집단은 전체 마약류투약사범 중 육체적, 정신적으로 체력이 왕성한 생산·근로계층인 20~40대가 79.9%를 차지하고 있고, 청·장년층이 여전히 중심계층임이 반영되고, 마약류사범 중 50대, 60세 이상이 16.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들 연령층에 의한 앵숙 밀경착 사범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15세 미만자의 마약류사범은 전무한 것은 마약류 가격이 비싸다는 등의 이유도 있지만 검찰, 유관기관의 청소년 상대 마약퇴치홍보 및 계몽활동의 영향도 많은 작용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마약류사범 범죄원인별 점유율은 호기심(24.6%), 유혹(239.%), 중독

(17.5%) 순이 대부분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범은 향정사범의 경우 18.7%를 점유하여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마약 및 대마사범(각 5.1%, 2.4%)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마약사범은 다른 사범에 비해 치료목적이 42.4%의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해서는 의료시설 등이 빈약한 시골이나 벽지에서 가정상비약으로 양귀비 밀경작 사범들이 다수 입건된 것에 기인한다.



제 3 장 마약류 중독정신범죄사범 실태 원인 및 분석

제1절 중독에 의한 정신범죄학적의 개념

프로이트는 무의식으로 억압된 채로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회귀한다고 보았다. 자아는 이 회귀를 막으라는 초자아의 명령에 따라 방어기제들을 동원해 보지만 일정한 한계에 도달하면 소용이 없게 된다. 억압된 것들은 결국 자기 파괴적인 힘으로 분출함으로 강박에 의한 마약 의존에 접근 할 수 있다. 또한 정신의학이나 법률이 모두 인간의 행동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두 분야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특히 다음의 두 가지 면에서 정신의학과 법률은 서로 협조해야 한다. 첫째는 형사나 민사재판 때 정신과의사는 정신의학의 지식으로 가 법이 정해놓은 정신능력을 정신장애자에 대한 처리문제를 정신의학의 기초 위에서 연구 발전시켜 형사정책수립에 반영하는 일이다. 오늘날에 보는 여러 나라의 형사정책을 신과 롬브로소(Casare Lombroso, 1836-1909) 정신과의사들의 많은 연구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정신과의사가 감정인으로 설 때와 범죄현상 연구자로 일할 때의 입장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감정인은 어디까지나 판결에 필요한 자료를 재판장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역할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이정균,1994,p138) 법정신의학자(감정의)는 광범위하고 싶은 정신의학의 지식, 정신장애범죄자들의 이용가능 수용시설, 정신보건법, 재판의 절차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또한 “감정사항”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되는 신체 및 정신 감정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정신장애와 책임에 대한 법적 개념을 이해하여야 한다.(지영환,2004,p,38.)

1). 정신장애에 의한 범죄

정신장애 범죄는 2014년 형법범죄의 경우 죄명별로는 절도가 1,644명으로 전체 인원의 26%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이 폭행772명 11.5%, 상해606명 9.6% 등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순위에 있어 다소 변동은 있지만 절도, 폭행, 상해, 성폭력이 전체 형법범죄에

서 가장 많은 비중을 점하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 정신장애사범은 2010년103명 (1.9) 2011년127명(2.4), 2012년, 117명(2.2),2013년,132명(2.2), 2014년165명(2.6) 5년 동안 발생사범에 대하여 분석하면 다른 정신장애 범죄 보다는 많은 인원은 아니나 연간 마약류 검거 비율 1만 명이상 검거와 비율은 심각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법무연수원,2016,p,155)

또한 검찰의 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한 처리현황에서도 살인, 마약류관련범죄, 강도 위반의 기소율89.7%으로 다른 범죄보다 기소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법무연수원,2016,p,312)이러한 절망적인 병, 즉 정신장애범죄와 관련되는 것은 대부분 조현병(정신분열병)이다. 폭행죄에서는 사람보다 자산폭행이 더 많다. 영국의 사례에서 보면 정신분열병에 의해 0.05%가 폭행죄와 관련되고 자살기도는 10%이며 그 중 4%가 사망한다. 정신과 환자들도 자살기도 20%로 사망했다. 조현병 폭행은 정신분열병의 10분의 1로서 0.006%이다. 살인에서 25%만이 망상과 직접 관련되나 정신병원 내의 살인은 모두 관계가 있다. 정신병자와 살인은 발병 4주 이상은 3%이고 정신분열병에서는 1년 이상이 84%, 5년 이상 55%이며, 68%는 범행 6개월 이내에 이루어졌고 그중 88%는 의사의 권고로 퇴원한 환자였다. 정신분열병에서 특히 망상형이 폭행과 관련이 깊고 분열정동장애와 뇌손상이 있는 정신분열병에서 가장 난폭한 경향이 있다. 병적 질투(pathological jealousy)는 폭행과 위험행위와 관련된다. East(영국, 1936)는 살인에서 25%가 질투 때문이고 Mowat(영국, 1966)는 12~15%라고 하였고 Taylor등(영국, 1983)은 정신장애 범죄자의 부정망상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2). 간질과 뇌 손상의 중동성 범죄

간질과 관계 깊으나 발작과는 직접적 관계는 적다. 남자수감자, 특수병원, 교도소의 간질유병률(pevalence)은 일반인구보다 많다. 임상적으로는 간질이 아니나, 비정상뇌파에서 위험한 난폭행동이 많다. 뇌손상과 범죄는 관련 있고 기면성 뇌염(encephalitis lethargica) 후유증에서 난폭행동이 많다. 측두엽·전

두엽 뇌종양(tumor)에서 심한 난폭 행동을 보이고 뇌손상에서는 난폭·비행을 보인다. 두부 특히 전두엽외상은 반사회적 인격과 관련이 깊다. 특히 좌측에 장애가 있으면 공격성, 이자극성(irritability)을 보인다. 영국의 보고에 의하면 정신장애범법자에서 dementia 6%, 간질 5%, 뇌손상 6%, 정신지체 13%라 하며 정신지체에서는 위험한 범죄는 매우 적다(0.006%)고 한다. 중동성 우리나라는 마약류, 도박, 알코올, 인터넷에 의한 범죄이다. 이중 마약범죄는 은밀하고 비노출 범죄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나 수치는 알 수 없다. 마약중독에 의해 환각성 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필로폰, 엑스타시, 신종마약류 물뽕, JWH-018 등, 투약 시 더욱더 강력한 환각 현상을 나타 낼수 있다. 외국의 사례로 영국은 재판에서 다루는 모든 범죄의 6%는 알코올 낙정(drunkenness)과 관련된다. 그러나 약물 또한 문제가 크다. 미국의 경우 살인자의 64%가 음주 후에 범행하였다. 마약, 약물 남용자는 대부분 대인범죄보다는 자산을 얻고자 하는 범행이고 폭력은 발생이 느슨하지만 현대의 마약류 정신범죄 사범들은 환경적 변화와 문화적, 과학적 변화에 편승 과격화한 강력범죄(방화, 살인, 강도, 성폭력 인질)등 으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강력범죄 등 성폭력범죄에 대한, Kinsey에 의하면 남자의 10%, 여자의 5%는 동성애(homosexual)이라고 하였으며, 최근 미국에서는 이것은 비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는 미국에서의 개념이지 문화권이 다른 나라에서는 또 다르다. 영국에서 연간 3,000건의 성범죄가 있고, 대부분이 초범이고 재범은 9%이다. 강간(rape)은 소아강간(paedophilia)도 상당수 있다. 또한 문지마 방화범죄 방화(pyromania)는 질병단위로서 다른 정신장애(정신지체, 인격장애, 우울증, 알코올중독 등)와 같이 있는 수가 많다. 여자 1에 대하여는 남자는 9이 범법자이고 교도소 수감자는 33이다. 여자에서는 매춘(prostitution)이 많고 정신장애와 관계가 깊다. 매춘녀의 15%에서 정신병의 과거력(history) 25%의 자살 기도, 25%의 알코올 중독, 25%가 마약 중독자이다. 어린이 유괴는 거의 여자가 저지르고 월경과 관련된 범죄도 있다. 대표적인 것은 상점 물품절도(shop lifting)이고 우울증에서 많다. 여자 초점자의 20%, 재범자의 30%는 정신장애자이고, 그 중 8.5%가 입원을 요할 정도이다.

3) 정신질환 관련 법률

우리나라 법에서는 정신장애 혹은 정신능력의 조문이 많이 문제되지만 각 법의 입법취지와 의학 및 법학의 발전에 따라 정신능력을 획일적으로 성문화시킬 수가 없다. 마약류 관련법들이 여기저기 규정하고 있어, 어느 정도 법률적 차원에서는 정신적 장애에서 물질적 장애, 마약, 향정신성 등 물질을 오남용하여 내성과 의존에 필요한 정신의학적 감정이 요구될 수는 있다. 그리고 정신분열증의 물질적 장애로 기분장애, 신체형장애, 성격장애 부분에 대하여 세분하게 규정된 것은 없다.

가) 형법

우리나라는 형법 제10조(심신장애자)는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경감한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상,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 재범 치료감호처분에 처한다.(김제일,2007,p221.)관련(판례: 1991.5.28.91도636)정신분열증대한 살인죄 처벌 불허에, 심신상실 인정한 것으로 마약류 상습 중독자 처벌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병원치료가 효율적으로 생각된다.

나)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도1항2항 1항,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정신보건법 및 장애인 복지법, 청소년 보호법

제3조 5호 정신요양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

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 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해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 제2조 2호에서도 정신적 장애로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한 장애를 말한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에서 제2조 4호 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와 제33조의 2 위반자 처벌 제50조 벌칙,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국민건강증진법 및 도로교통법

제1조 (목적)이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연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제7조 광고의 금지 등에서 1호의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 규정하고 있다. 제25조 기금사용에서 금여교육 및 광고, 질병의 예방. 검진, 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구강, 사업에 사용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 자동차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이 정한 것을 말한다.

제2절 마약류 중독정신범죄 사범 변화와 추이

우리나라는 80년 이후 경제적 발전과 국제대회 등으로 세계 속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외국인 산업체 근로자, 원어민강사, 유학생, 중국의 개방정책 등으로 외국산 마약류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 있다가 더욱 1995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던 전체 마약류 사범이 1999년 처음으로 10,000명 선을 넘어선 뒤 2002년까지 연속 10,000명 선을 상회하였다. 그러나 2002년도에 수사기관 강력한 단속으로 밀수 등 공급 조직 10개 파224명이 적발되었고, 이로 인한 마약류 공급선 차단 등이 2003년부터는 2006년까지 4년간 7,000명 선으로 감소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다시 사회적인 혼란과 소비성향의 향상으로 다시 10,000만 선으로 증가하다가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10,000명 선 아래로 하향 현상을 보고 있었다. 그러나 다시 2015년도에는 마약류범죄사범이 11,916명 검거되면서 10,000명 선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 원인으로써 인터넷 및 SNS 등 이용하여 마약류사범들이 쉽게 국내, 외국 등에서 마약류 공급 책들과 연락하여 마약류를 소비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그로 인한 중독자도 지속적으로 증가세로 확산하면서, 마약류정신범죄 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 된다.

또한 마약류 사범의 분포비율을 살펴보면 1995년도 이래 향정사범의 점유율이 50%를 상회하기 시작하여 2010년 69.6%, 2011년 78.7%, 2012년 82.5%, 2013년 89.9%, 2014년 81.3%, 2015년 80.7%를 차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이 국내 주종 마약류임을 나타나면서 국내의 사용마약류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이 대다수 중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마약류이며 <표3-1> 표를 보면 마약류사범별 추세를 보면 마약사범(양귀비)은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700명 전후 수준이었으나 2015년 1,100명 선으로 70.6% 증가 사실을 알 수 있다.

5년 동안 마약확산과 사용자 형태를 보면 벽지농촌, 산간 및 도서지역 등 고령층 주민들이 관상용, 바다 어부, 선장, 가정상비약 및 가축의 진병치료 등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귀비를 밀 재배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 단속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국내 주종 향정사범 (필로폰)은 2008년부터 2013년도까지 8,000명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 8,100명 선 2015년 9,600명 선으로 다시 증가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국내 대마사범은 외국 유학생 등 대다수 외국등지에서 경미한 마약으로 잘못 인식한 청소년들의 흡연자가 증가하면서 대마사범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소폭감소세로 가다가 2015년도 1,100선으로 주춤 상태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로, 마약류 정신사범들이 단순사용 범죄로 시작하여 상습적으로 사용하고 전과자로 전환 할 때는 중독자 정신사범은 급격히 증가 사회질서 파괴하는 양상으로 변한다.

〈 표3-1 〉 연도별 마약류사범 추세

(단위 :명)

연도별 마약류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9,174 (-5.7)	9,255 (0.9)	9,764 (5.5)	9,984 (2.3)	11,916 (19.4)
마 약	759 (-32.5)	582 (-23.3)	685 (17.7)	676 (-1.3)	1,153 (70.6)
향 정	7,226 (6.7)	7,631 (5.6)	7,902 (3.6)	8,121 (2.8)	9,624 (2.8)
대 마	1,189 (-35.3)	1,042 (-12.4)	1,177 (13.0)	1,187 (0.8)	1,139 (-4.0)

자료: 대검, 마약류범죄백서,2016,p.97. ()는증감률 %. 재구성

최근 10년간 마약류 사범의 추이는 IMF 경제위기 당시 1999년 ~2002년 4년 연속 1만명을 상회 하였으나 2003년~2006년 4년간 7,000명 선으로 감소하였고 2009년 다시 1만명을 상회하다가 2011년~2014 4년간 1만명선 이하로 억제하였다.(대검마약류백서,2016,p39). 마약류 사범의 연도별 적발건수를 비교하면 지속적으로 검거자의 인원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 표3-2>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06년도에는 8,000명이 마약류관련 범죄로 적발되면서 서서히 증가세를 보면서 2007년 10,000만 명으로 증가 추세가 보이고 있다. 정부와 수사기관 등에서 적극적인 수사활동(특진, 승진)으로 단속 할 때는 증가세를 알 수 있으며 또 하나의 원인은 사회적인 개방화 그리고 자유화 추세와 일정부분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수사요원들의 일반적 견해이다. 특히 외국인 산업체 근로자, 유학생, 외국인들의 국내법 처벌, 다문화과정, 중국교포, 북한이탈자 등도 편승 밀반입 가담함으로 국내의 마약류 사범인원은 10년간, 2009년도 약의 증가하면서 8,000~10,000명 선 상회 하듯 지속하다가 2015년 12,000명 급속 증가하면서 2016년 하반기에 6,876명의 인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 5,134명 대비 33.9%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원인 중에는 마약류 공급루트가 주로 중국에서 일본, 동남아, 멕시코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는 점도 최근의 특징이다. 그리고 투약사용자의 다양화, 통신의 발달,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하거나 국제우편을 등을 통해 밀수사례가 증가에

따라 그에 편승 사용자가 증가하는 것이다. 밀수입 증가사례를 검토해 보면 2005년 67건이던 국제우편, 특송화물 이용 밀수는 2010년 151건, 2014년 268건으로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 표3-2 〉 마약류사범 연도별 단속인원



자료: 대검. 마약류백서, 2016, p39 . 재구성

제3절 중독정신범죄 사범 실태 및 원인과 분석

1) 국내 마약류 밀수범죄 실태

국내 마약류 밀수실태는 지상 최대방법으로 공항, 항만을 통해 인편으로 소지 은닉하는 기본 방법으로 위장에 콘돔, 음부, 향문, 무전과자, 생선류, 의류, 약품에 회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80년 전후 국내에 밀반입 성행하였다. 그러다가 2000년부터서는 국제우편, 특송화물 여행자 소지하면서 지능적으로 밀수 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2014년도에 관세청 통계에 의하면 밀반입 방법은 기존 여행자, 국제우편, 특송화물을 이용한 마약류가 밀반입하다가 2014년부터는 수입화물, 선원과 특히 필로폰 밀수 공급지가 분화되었다. 이전에는 중국 남주, 홍콩이 우리나라로의 필로폰 주요 공급지였으나, 작년에는 캄보디아에서 밀반입하려던 필로폰 밀수가 다수 적발된 사례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

는 실태이다.(조세금융신문,2016.2.18.) 특히 수입화물, 선원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은 2014년도에 260그램으로 전체 대비 0.36%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52kg으로 <표3-3> 전체대비 57.6% 증가하였다. 2015년 마약류밀수단속 동향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총325건 91.6kg, 시가2,140억 원 상당의 마약류가 적발되었고 전년에 비해 건수6%, 중량28%, 금액 42%가 각각 증가하였다. 종류별로는 국내 주요 사용마약류인 필로폰이 72kg으로 가장 많았고 대마12.1kg,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 6kg 순으로 확인 되었다. 72kg 투약할 경우 24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한편 지난해에는 필로폰 대형밀수와 소량 밀반입이 동시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2014년 1kg 이상 대형밀수의 건당 평균 적발 량이 6kg이었는데 작년에는 건당 평균8.3kg이 증가했다. 건당 10g이하 소량밀수도 2014년에서 지난해 49건으로 81% 늘었다. 또 지난해 아프리카(케냐, 남아공)에서 아랍에미리트나 독일을 경유 한국, 미국 순으로 들어오는 북아프리카 주산 식물성 신종마약류인 카트 밀수와 캐나다 한국 대만 루트의 대마초 밀수가 처음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러한 밀수 마약류 때문에 정신범죄사범이 증가, 국가경제 혼란과 강력범죄발생 등 사회 질서 파괴범이 지속적으로 증가 될 수 있다.

< 표3-3 > 마약류 경로별 밀수 현황

경로	2014년(g)		2015년(g)		증감률
		전체대비		전체대비	
여행자	41,037	57.3%	14,335	15.6%	△65%
우편·특송	30,394	42.4%	15,251	16.7%	△50%
수출입화물/선원	260	0.3%	51,973	56.7%	19,890%
분상·시중단속	-	-	10,038	11%	-
한 계	71,691	100%	91,597	100%	28%

자료: 조세금융신문,2016.2.18.재구성

2)마약류 범죄사범의 실태

밀수에 의한 사용자들의 중독정신범죄 사범은 마약류 상습투약과 전과자 등으로 전환되면서, 마약류의 마약, 향정(필로폰 등) 대마, 국내3대 마약류 실태로, 2015년 한해 전체 마약류범죄사범은 <표3-4> 11,916명으로 전년대비 19.4%(전년도 9,984명) 증가로 역대 국내에서 최초로 많은 마약류 사범을 검거하게 되었다. 이러한 증가원인은 정부와 수사관련(경찰, 검찰, 관세청, 식약처, 국정가정보원, 국립과학수사원)기관의 공조와 국제 공조를 통해 검거인원을 증가한 사실에 대해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마약류 밀반입에 주요 국가로, 중국, 북한(얼음, 빙두), 태국(야마), 동남아(아편), 미국(대마, 엑스터시, 아이스) 등지에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원어민장사, 산업체근로자, 유학생, 국내유학생, 연예인, 중국교포, 북한이탈자, 다문화 가정, 외국농산물 수입 등이 마약류를 소지 및 국제우편, 특송화물,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 상시 밀수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따라 소비계층에서는 남녀노소 관계없이 부유층, 중류층, 농민, 주부, 중고생들까지도 마약류에 접근 사용하고 있어 심각하게 우려하며, 국내는 10년 전 8,000명의 사범을 검거 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 2015년에는 12,000만 명에 증가 현상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3대 마약류인 마약(양귀비)은 시골 농가에서 관상용 및 가정상비약으로, 질병치료 목적으로, 학술연구자의 허가 없이 재배하며 바다에서는 선원들의 사용 등으로 1년 한해 1,153명으로 전년대비 70.6%(전년도 676명) 증가하는 실태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실태는 미래에는 방송과 마스크 통해 더욱 더 확산 될 것으로 생각되며, 중독자 증가와 정신범죄 사범증가가 예상된다. 마약류 범죄사범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향정신성의약품(향정사범)수치는 마약류 범죄의 전반에 대한 현황의 실태와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다. 인원의 숫자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류의 유통공급과 남용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4년도 향정사범의 경우 8,121명으로 엄청난 숫자로 보이는 반면 2015년도에도 무려 18.5%가 증가한 9,624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향정사범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사회 전반의 불안 심리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과거에는 특별한 관계인, 즉 연예인, 약사, 업소종업원, 귀관자녀 등이 최초로 사용하였던 과거가 있었다.

그러나 시대의 환경 변화 , 경제발전, 국제화 시대, 등으로 우리나라의 주종 사용 마약류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계속 증가 할 수 있다고 본다. 사용방법에도 전에는 정맥주사에서 현 실태에서는 커피, 맥주 회석, 흡입까지 사용방법으로 전환하고, 신종 향정사범이 속속히 국내에 밀반입 되어 투약 사용자에게 공급 판매되고 있다. 이에 향정사범의 정신사범들이 국내 전역에서 환각상태에서 강력범, 화물차량, 택시, 일터에서 범죄로 확산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대마사범에 대하여 국내에서는 1996년부터 2009년까지는 대마 대량 밀수 사건이 지속적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다. 주요사례는 2003년도에 나이지리아인이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대마 7키로그램, 8키로그램 밀수입하고, 2004년도에 나이지리아인이 3.5키로 그램 그 외도 5키로그램, 2009년도에고 나이지리아인이 백인 여성을 운반책으로 이용하여 대마4.3키로그램 밀수입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흑인 여성이 대마 6키로그램 밀수가 국내최대 대마 밀수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량밀수 보다는 대체로 국제우편을 이용한 사용 목적의 소규모 대마 밀수사범이 적발되고 있으며 주로 외국인원어민 강사 및 유학생 등에 의해 밀수되고 흡연이 이루지고 있다,(대검마약류백서,2016,P,81.) 그에 국내에서는 청소년, 대학생, 연예인, 회사원, 교수 등이 이태원, 신촌, 강남지역에서는 유학생으로부터 매매, 무상으로, 지인, 친구로 부터 권유 등 호기심으로 흡연, 흡입 사용 실태이며 성인들은 야생대마초 구입하고 판매책들은 직접 종자를 구입 가옥, 창고, 가정집에서 재배 판고 하고 있는 현상이다. 그로 인하여 2015년도 대마사범은 1,139명으로 전년대비4.0%(전년도1,187명)감소(대검마약백서,2016,P,87) 실태로 보이나 대마사범의 검거에는 한계성으로 전국적 사용과 은닉된 장소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적발 어려움 있다 또한 외국의 비 합법화, 유해성, 중독성이 없다는 사례 때문에 국내 대마사범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 표3-4 〉 마약류별 2015년 단속현황

구분 마약류	건 수	인원(명)		
		합 계	구속	불구속
합 계	10,338	11,916(100)	2,654	9,262
마 약	1,096	1,153 (9.7)	40	1,113
향 정	8,293	9,624(80.7)	2,481	7,143
대 마	949	1,139(9.6)	133	1,006

자료: 대검 마약류범죄백서2016,p.87.()는구성비%, 재구성

3) 마약류사용 후 환각에 의한 강력범죄 실태

〈표3-5〉에 의한 실태를 보면 마약류 투약사용 등으로 환각의 정신상태에서 살인, 강도 절도, 인질극·난동, 마약수사관 상해 등 2차 강력범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습적 또는 정신적 원인에 의하여 의존과 내성에 심리적 충격으로 인하여 특별한 동기나 이유 없이 환각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자살·자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폭력, 묻지마 방화, 상해, 성추행, 강간, 인질극을 벌이거나 마약구입자금 마련을 위하여 강도·절도 등 행위를 일삼고, 심지어는 검거하려한 마약수사관을 위해를 가하는 등 마약류 사범의 환각상태의 범행이 흉포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에서 나타나는 5년간의 35명의 정신범죄사범 불가하지만 미래에는 심각한 우려가 발생되며, 그 외 점조직성과 광역화 신속화 지능화의 특성인 마약류 정신범죄의 사범들의 환각, 각성의 상태에서 파악되지 않는 정신범죄 사범은 국내 전 지역해서 범행을 자행하고 있어 미래의 정신범죄사범이 국가차원에서 증가에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표3-5〉 5년간 마약류투약 환각강력 범죄 실태

유 형 별 \\년도별	살인		과다투약사망 자살		강도·절도		인질극 난동		수사관 보복살 해·상 해		기타		계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201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2	1	1	1	1	0	0	1	1	0	0	0	0	3	3
2013	1	1	2	2	0	0	3	3	0	0	3	3	9	9
2014	1	1	1	1	0	0	1	1	1	1	1	1	5	5
2015	1	1	3	3	0	0	1	1	2	2	11	13	18	20
계	4	4	7	7	0	0	6	6	3	3	15	17	35	37

자료: 대검 마약류범죄백서,2016,P,200. 재구성

4) 의료용 마약류 도난, 분실과 취급기준 위반실태

국내에서 5년 동안 병원의 마약류 의약품 도난과 분실 적발이 140건 넘게 발생되고 있어 심각한 우려가 발생된다. 병원에 관리자들이 마약류 확산에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실태로 국내에 밀반입 되는 향정사범, 마약 사범들과 상호 연계 가능성 있어 남용사례가 증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병원, 의원, 동물병원, 의사, 간호사, 종사자 등이 취급하고 있는 신종 마약류 케타민, 프로포폴, 날부핀 등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면서 환자이름으로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되어 처벌되는 사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표3-6>이러한 의약품관리는 중요하면서 5년간 의료용 마약류 도난109건, 분실43건 합하여 143건이 발생 되어 더욱더 중요성 인식 필요하다.

또한 취급기준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병원, 의원도 지난 1000여 곳에서 발생 되었다. 병의원 종사자의 경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마약류를 투약과 소지가 가능 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2015년6월 의료용 마약을 절취하여 소지하다 적발된 한 성형외과 종사 2개월 후인 8개월 두 차례 연속 의료용 마약을 절취 투약하다 동료의 신고로 검거된 사실이 있었다. 심지어 이 종사자는 마약을 절취하기 위해 병원에 위장취업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데일리메디,2016,9,21)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부실해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병원, 의원은 958개소, 적

발된 건은 모두 1038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각각 203건, 174건, 248건, 174건, 155건으로 매년 꾸준히 200건 가까이 적발됐고, 2016년에는 84건이 단속에 적발되었다. 병원과 의원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의료용으로 처방하는 마약성 진통제나 마취제는 다중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 금고에 보관하고 재고량과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사례를 보면 2001년 대구지역에서 피의자 2명이 투약할 목적으로 대학병원에서 모르핀 10앰플, 펜타닐 30앰플, 페치딘 10앰플, 2002년도에서도 동병원에서 절취 투약하다가 검거한 경우와, 2001년 안산시 고잔동 병원에서 간호사가 의사의 마약 처방전을 위조하여 병원약국에서 100회 걸쳐 염산페치딘 300앰플을 빼내어 투약한 사실이 사회 경악을 초래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례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철저한 법 규정을 강도 있게 실행 처벌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 하고, 중독자와 정신사범 증가를 차단할 수 있다.



〈표3-6〉 최근5년간 의료용 마약류도난 및 취급기준위반

최근 5년간 의료용 마약류 도난 및 분실 현황

단위 : 건

구분		도난		분실	
연도	합계	병원	의원	병원	의원
2011	15	5	6	2	2
2012	31	7	16	4	4
2013	22	10	8	1	3
2014	30	9	13	5	3
2015	26	11	11	1	3
2016. 7.	19	7	6	3	3
합계	143	49	60	16	18

최근 5년간 의료용 마약류 취급기준 위반 병·의원 현황

단위 : 건

연도	구분	합계	관리 대장 미작성 등	재고량 불일치	허가 사항 변경 미신청	교육 미수료	저장 시설 점검부	기타	합계
2011	병원	59	8	21	6	-	2	22	203
	의원	144	25	53	-	6	7	53	
2012	병원	46	4	22	-	-	-	20	174
	의원	128	19	55	-	5	3	46	
2013	병원	62	10	19	2	5	-	26	248
	의원	186	36	95	-	5	-	50	
2014	병원	47	11	3	5	1	13	14	174
	의원	127	31	6	-	3	44	43	
2015	병원	58	9	9	10	7	16	7	155
	의원	97	22	10	1	4	33	27	
2016. 6.	병원	38	4	10	2	1	12	9	84
	의원	46	9	2	16	-	1	18	
소계	병원	310	46	84	25	14	43	98	
	의원	728	142	221	17	23	88	237	
합계		1,038	226	368	42	37	172	411	

* 기타 : 저장 기준 미준수, 사고마약류 미보고

자료: 데일리메디, 2016, 9, 21. 재구성

5)마약류 범죄사범의 발생원인

가)일반적 마약류범죄 사범의 원인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에 밀 수입되고 있는 실정과 원인을 동원해서, 국내 마약류의 확산된 마약류는 년 1만 명을 추월하는 사범 약 10배에 달하는 인원을 사실상의 중독자로 추정하고 있는 가설이다. 이러한 추정방식으로 환산할 경우 국내 마약중독자 수는 약 1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2015년 전체검거인원 11,916명 중 재범인원 4,486명으로 재범률은 37.6%로 매년 높은 재범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마약류 사범은 밀수 혹은 판매에 관한 범죄 이외에 상당한 수는 투약사범으로 이들이 기본적으로 재투약으로 인하여 발생 원인에 기본적으로 확산 원인의 일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국제화시대 추세에 따라 활발한 국제 교류로 인하여 외국에서 개발된 다양한 신종 마약이 국내로 범람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마약류와 신종 마약류는 국내에서 사용 개통에 의하여 출소 후 (재범자),유혹, 호기심, 영리, 기분이 전환, 우연, 친구권유, 외국방문, 클럽, 외국인 가이드, 힘들어서, 성관계 시 등 여러 가지 문화적 환경에 의한 관계로 사용·투약자는 증가,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심리적으로 불쾌한 기분, 죄책감, 자기혐오 외로움, 거절당함, 참을성이 적고 충동적이고 낮은 자존감, 분노, 고통 등 심리적 방어기제를 갖고 있으며 성격장애로 내성의 부족, 걱정 등으로 사용하고,(마퇴본부,2015,P,19) < 표3-7 > 와 같이 2015년도 전체 마약류사범의 범죄인원별 점유율은 중독(19.8%), 유혹(16.9%), 호기심(13.7%), 영리(9.2%), 우연(3.4%) 순으로 그중 유혹과 호기심, 우연이 34.0%를 차지함에 따라 마약류 폐해에 대한 지속인 대국민의 홍보가 필요하다. 특히 영리의 목적으로 마약류범죄는 향정사범이 10.9%를 차지하여 다른 마약류사범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년대비 0.8%(전연도10%)증가하였다. 그리고 투약할 수 있는 장소가 용이하다고 생각된다. 사범들 주로 가정집, 노상, 숙박업소, 자동차에서 이루지고 있는 등 특별한 장소를 가지 않고 은밀한 곳이며 어느 곳에서나 다양한 방법으로 투약하고 있다. 특히 마약사범인 경우, 가정집, 농가. 축사가로

이는 농어촌, 도시지역 등의 소규모 양귀비 재배사범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향정사범들은 가정집, 노상, 숙박업소, 자동차, 휴게소, 공원 등 비교적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지고 있으며 거래장소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적발 시 도주하기 편리한 노상,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현금을 통해 공급 판매하고 있다.

대마초의 경우는 유흥업소, 숙박업소, 사무실, 가정집, 야산, 자동차, 등지에서 투약하고 있다.

〈표3-7〉 마약류사범 발생원인

(단위:%)

원 인 별 마 약 류	유혹	우연	강압	중독	호 기 심	영리	치료	기타	합계
마약	6.7	6.5	0.1	2.3	13.2	0.8	1.8	68.6	100
향정	17.7	3.1	0.0	22.3	12.4	10.9	1.1	2.5	100
대마	19.8	3.6	0.1	15.2	25.6	3.3	1.1	31.4	100
합계	16.9	3.4	0.1	19.8	13.7	9.2	1.2	35.8	100

자료: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16, p174. 재구성

나) 상습 사용 후 환각상태의 강력 범죄원인

우리나라는 투약하는 원인들은 여러 가지 원인 중, 정신질환자 강력범죄 실태를 보면 마약·알코올 남용과 현실에 불만으로 원인을 알 수 있지만, 발생 초기인 초·중고 학교생활부터 약물에 대한 교육 및 관련 기관들의 관심도 부족으로 청소년들의 심화과정에서 대마초, 성인 마약류에 접근하면서, 전과자 양성, 재범자 양상 등으로 환각 범죄사범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을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실태를 보면 우선적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철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최근 발생실태를 살펴보면 정신분열증(조현병) 복용하고 있는 자로, “사회생활에서 여성에게 무시당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말하며(서울경제, 2016.11.18.), 환시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조롱하는 것으로 생각해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이용 살인미수사례, 또한 우울증, 분노·충동조절장애, 불안장애 정서적 빈곤, 순간의 충동과 분노, 자존감훼손과 인간관계 집단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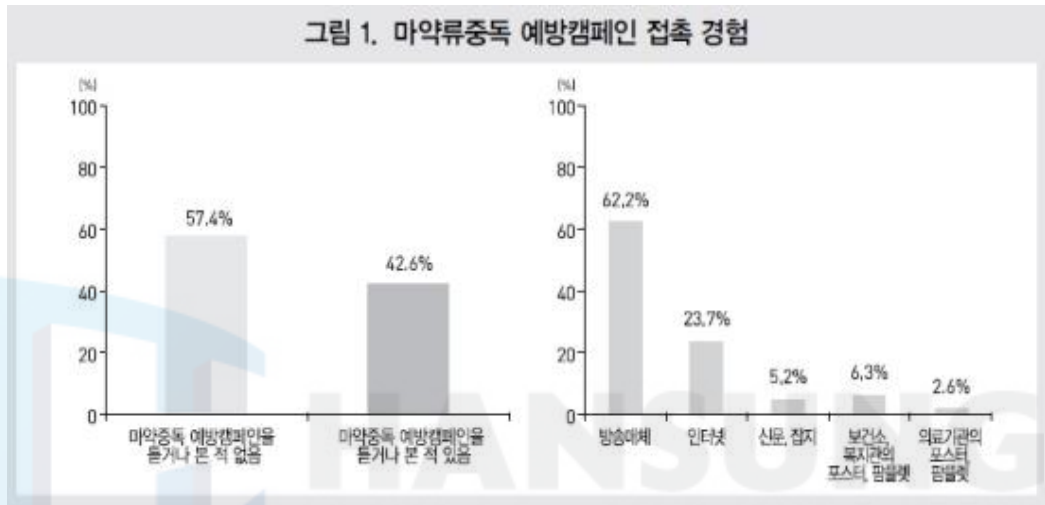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해 마약류를 통해 만족감을 찾으려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현실의 세계의 긴장과 불안, 고통과 괴로움을 해소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마약류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 외 피로와 스트레스 회복하기 위해, 절도 강도, 살인, 방화하게위해, 환락추구와 현실도피 마약류 사용, 중독증상으로 환시, 환청, 환후, 등으로 범행을 자행하고 있는 원인으로 알 수 있으며, 사회적환경적, 경제적 빈곤, 중독자의 사회적인 불안, 자신의 자아를 표현할 만한 것이 없고,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 방법을 모르며 살고 있는 현실, 자신의 고립, 단정되는 네트워크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되고 있다. 그리고 정신환각사범들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마약이 사용이 나쁘지 않다. 투약으로 이득, 주변 사람들이 마약을 사용하고 있고, 대중매체 속 인물의 호감, 기분전환, 등 로 마약류 상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원인이다.(한국마약퇴치본부,2014.P.20).

다) 마약류 중독의 유해성 대한 홍보 결여

마약류범죄 사전 차단정책으로는 위해성 언론 등 홍보과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홍보 사항을 보면 마약류관련 세계와 국내 동향에 대하여 유일한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외 경찰청 검거와 관세청 인천공항 밀수동향, 국가정보원의 국제범죄 등에서는 검거 동향 중심으로 홍보 사례와 학문적 실태에 대하여 관련기관 등에 배부하는 실태이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국민들에게 홍보와 치료 정책을 국가차원에서 관심도가 많은 국가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 경우 담배와 알코올에 비하면 마약류에 대한 홍보는 검거방법 등 외는 유해성, 중독에 의한 범죄 발생과 예방에 대한 홍보가 많지 않다. <표3-8>에 의하면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약물중독예방사업 설문조사 결과 캠페인을 방송매체(TV·라디오), 언론매체, 현수막 등 홍보물에서 듣거나 본 비율은 42.6%였으며, 57.4%에 예방캠페인을 접한 적이 없다는 통계를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민간단체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지부, 서울 신문사 주관 걷기대회 이외는 찾아 볼 수 없는 실태이다. 앞에서 말하듯이 예방캠페인을 접한 사람 중 62.2%는 방송매체(TV·라디오), 23.7%는 인터넷, 5.2%는

신문·잡지 등 문자매체, 6.3%는 보건 복지 관련(보건소, 복지관 등)의 포스터, 팜플렛, 2.6%는 의료기관의 포스터. 팜플렛을 통해 듣거나 본적이 있다고 대답하였다.(데일리팜,2015,11.12) 이렇게 부족한 광고의 실태원인은 마약류정신 범죄사범 발생에 원인에서 중독에 의한 정신사범은 지속적으로 확산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표3-8 〉 마약류 중독 예방 캠페인 접촉 경험



자료: 데일리팜, 2015.11.12. 재구성

제4절 중독자 정신범죄 사범의 유형별 사례와 분석

1).마약류 투약 후 환각에 의한 강력범죄 행위

마약류 투약사용 등으로 환각의 정신상태에서 문지마 살인, 폭력, 성폭력 강간, 교통사고, 방화 절도, 인질극·난동, 마약수사관 상해 등 2차 강력범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습적 또는 정신적 원인에 의하여 의존과 내성에 심리적 충격으로 뇌의 도파민 파괴에 의한 증상으로 인하여 특별한 동기나 이유 없이 환각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거나 마약구입자금 마련을 위하여 강도 등 행위를 일삼고, 심지어는 검거하려는 마약수사관을 위해를 가하는 등 마약류 사범의

환각상태의 범행이 흉포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범들은 2015년 한해 마약류범죄사범 12,000명의 사범 중에 중독에 의한 마약류 사범들이 환각의 강력 범죄로 도출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환각에 의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환시, 환청, 환후, 환촉, 환미 의 발현현상으로, 환청에 의한 자기 성기를 절단하는 현상과, 환후의 상태로 과도한 4시간 동안 성행위, 환촉에 의한 자기 자신의 신체의 손상 등이 최후에는 강력 범죄사범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주요사례는 2001년 서울 중구 식품점에서 러미나 감기약 중독 증세로 러미나 판매상을 매매문제로 시비 칼로 살해 사건 같은 해 서산시 부석면 약산에서 3명의 대마 흡연자가 대마 흡연사실을 신고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를 곡괭이로 살인 및 사체를 유기한 흉악한 사실이 발생되었다. 2004년 11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호텔에서 필로폰 가격문제로 다투던 중 소지한 책나이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배, 가슴 등을 수 회 찔러 살해하였다. 2005년 6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피의자 주거지에서 사람들이 마치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따라오는 듯 한 환각 공포감에 사로잡혀 살해에 마음먹고 식칼 1자루와 과도 1자루 손에 들고 엘리베이터에 탑승, 피해자 2명을 수회 찔러서나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중계동 아파트에 주차한 차량절도하고, 이를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식칼을 휘두르고 벽돌을 던져 경찰관을 상해를 가하였다. 2012년 인천에서 피해자가 몰래 넣은 음료수를 주었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를 식칼로 살해한 사례, 2013년 서울 송파구에서 형이 필로폰 중독으로 자살사건에 대해 판매한 피해자를 앙심을 품고 과도로 복부 등을 찔러 살해한 사례, 2015년 2월 경, 천안 두정동에서 노래방 업주가 필로폰 환각상태에서 여 종업원 2명에 대해 동성애로 트집 잡아 화를내며 덤벨, 금속봉 등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1명이 사망한 사례이다. 과다사용으로 자해 및 사망사례로 2013년 필로폰을 절취, 사용 혐의로 부산구치소에서 약 3개월간 복역 중 출소한 나성의 자살과, 2013년 4월경 부천시 원미구 의원에서 근무하던 여성 간호조모사가 프로포폴을 과다투약 후 사망, 안산에서도 성형외과 의사가 프로포폴 과다투약으로 사망, 2015년 8월경 서대문구 남성 사업가가 마약류 과다사용 후 사망하였고, 남성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야바, 엑스터시, 대마 등이 발견되었다. 인질극·난동사건 사례로 2013년

9월 광주광역시에서 검찰에 출두한 피의자는 주차장 세워진 트럭 안에서 오른손에 식칼을 들고 동거녀의 목을 겨누어 협박하는 등 난동을 벌인 사례. 2015년 12월경 인천 남동구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신경안정제를 달라고 하여 줄 수 없다고 하자 간호사를 인질로 사과를 요구한 인질 사례 등 외 여러 가지 환각의 상태에서 정신범죄를 범하고 있는 현실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수사기관 모든 국민들까지 마약류 범죄확산에 대처하여야 한다.(대검. 마약류범죄백서, 2016년, P, 201-206)

2). 심리적·호기심의 원인에 의한 범죄행위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호기심 성인이 되어도 호기심으로 인한 모험(adventure)을 평소 한번쯤은 해보고 싶어 하는 현상이다. 현실에서 하지 못하는 경험을 대신 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대상으로서 영화를 들 수 있는데, 영화가 아닌 마약을 이용한 환각세계 속에서 자신이 꿈꿔왔던 모험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례는 청소년, 성인들의 조사에서도 잘 나타는 현상으로, 과잉 보호적인 환경에서 자라나면서 정상적인 모험을 경험하지 못한 청소년은 약물을 통해 모험을 경험하고자 한다. 또한 현실과 비현실에 대한 구분이 청소년기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한번 마약을 통한 모험을 하고자 한다. 모험에는 그만큼 위험이 뒤따른다. 사전에 해서는 안 될 일이나 또는 가급적 일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행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연 평균 중독자 마약류 사용 원인을 분석해 보면 호기심이 두 번째의 원인으로 도출 되었다. 그리고 예를 들면 2011년 초에 경기도 안산시의 한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가 마약류 사범으로 적발되어 처벌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검찰청에 검거된 28세의 간호사인 윤 모씨는 안산시 고잔동에 위치한 한도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녀는 평상시 마약을 투여하게 되면 어떠한 식으로 심리적, 심리적, 정신적 작용이 변화하는지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병원에 보관하던 의료용 마약 프로포폴을 절취하여 이를 본인에게 투여하게 되었고, 환각상태의 유혹에 점차적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나중에 중독 상태가 심화되면서 의

사의 마약처방전을 위조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으며, 2011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약 100여 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약인 프로포폴을 빼내어 본인에게 투여하였다. 이러한 경우는 호기심으로 인해 마약을 시작하여 나중에 일이 크게 번진 경우라 할 수 있다. 법률적으로 마약류를 다루는 취급자의 경우에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대상물이 어떠한 약리적 효과를 발휘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마약류를 본인에게 직접 투여해보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호기심이 마약의 심각한 중독증세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야기한다.

이 사건의 여자 간호사도 자신이 취급하는 마약류에 중독되어 호기심이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 경우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남용하기 위해 나중에 의사의 처방전까지 위조하는 심각한 범죄성을 드러낸다. 마약을 처음부터 좋아하거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대신에 호기심적인 차원에서 심리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마약중독으로 진행되는 경우이다.

그리고 호기심에 의한 무면허 택시 탈취 범죄 행위 1999년 3월 5일 오전 8시 20분경에 당구장을 경영하던 김정국(38세)투약자는 환각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는 원래 건실한 가장으로서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던 중 당구장에 출입하는 한 친한 손님으로부터 마약을 권유받게 되었고, 처음에는 이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다가 호기심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게 되었다. 결국 호기심을 시작한 마약은 환각의 늪으로 빠지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그는 범행시각에 환각상태에서 피해자인 박 모씨가 운전하던 택시를 강탈하였다. 그리고 이 택시를 무면허로 운전하면서 분당-수서 간 고속도로를 160킬로의 속도로 달리는 살인적인 도주를 감행하였다. 결국 차량을 타고 도주하던 중 정차구간을 만나게 되면서 총 18대의 정지차량을 들이받고 멈춰서 경찰에 검거되고 말았다. 당시 범인인 한 씨는 자신의 행동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알지 못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고는 본인이 애초에 해서는 안 되는 마약에 손을 댔으므로 인해 발생한 일이었다.(지영완,2004,P,62)

3). 심리적 의존에 의한 범죄행위

가) 연예인들의 마약류 의존 사례

연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연예인들은 고정된 직장에 수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며 그들의 인기에 따라 달라진다. 잘 나가는 연예인들은 많은 방송사에서 서로 출현을 시키려고 하고 잡지사의 인터뷰나 각종 행사에 불려 다니기 바쁘다. 어쩌다가 스케줄을 핑크라도 내게 되면 다음부터는 그 방송사에 출현을 하고 싶어도 불려주지 않고 아울러 건방지면 다음부터는 그 방송사에 출현을 하고 싶어도 불려주지 않고 아울러 건방지다거나 거만하다는 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그래서 그들은 몸이 불편하거나 피곤해도 무리해서 출연하며 그러다가 실신해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고 재충전을 할 시간도 없이 바쁘게 뛰고 있다. 그러다 보니 쉽게 식상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인기가 시들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멀어지게 된다. 인기가 있을 때 잘 관리하고 무리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처리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인기가 없어지면 그들을 불려주는 곳도 없고 갈 곳도 마땅치가 않다. 그러다 보면 쉽게 접하게 되는 것이 마약이고 한 번 손을 댄 마약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게 된다.

연예인들이 잘 나갈 때 성원을 보내고 열광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은 어렵다.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고 책망하기에 앞서 그들을 인간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격려를 보낸다면 그들도 쉽게 마약을 끊고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다.

연예인들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인식도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모든 청소년의 우상이 되고 있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든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 되며 대중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며,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때로는 그들의 잘못된 행동까지도 청소년들이 합리화시키고 모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골프 황제인 잭 니콜라우스는 원래 담배를 피웠지만 많은 청소년들

이 그가 플레이하는 도중에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고 배울까봐 담배를 끊었다고 한다.

약물을 남용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 호기심으로,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 자신의 위치를 한번 평가해 보고 싶어서, 약물의 세계가 어떤가를 경험해 보기 위해서, 주변압력이나 개인적인 문제로, 자아나 가치 판단력이 결핍되어, 주변상황(전통, 가치문화, 권위 등)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허무와 권태로부터 향락을 추구하고자 약물을 남용한다. 일반적으로 약물남용을 설명하는 데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의 원인을 조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원인들은 서로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학문적인 약물남용의 이론에 관한 설명보다도 연예인들(특히 가수들)이 마약을 하는 실질적인 원인들을 중심으로 언급해 보고자 한다.

다른 직업에 비해 연예인에서 마약사용이 많은 이유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가요 관계자들은 밤무대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그들의 생활이 불규칙하며 때로는 밤낮이 뒤바뀐 생활을 한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면서 찾아오는 긴장감과 피로감을 잊기 위해 마약을 상습적으로 복용한다. 그런데 마약의 사용으로 그들의 피로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단지 마약의 마취 효과로 인해 그들의 피로감을 망각하게 해주는 것인데도 일단 한번 마약에 손을 대면 그것이 해로운 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마약을 사용하게 된다.

대마초에 작용 중에는 기분 및 감각수행의 변화, 도취감, 운동성의 활발 및 환희, 계속되는 정신적 혼란, 공간과 시간에 대한 왜곡 등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기 힘든 경우에 불안을 덜어주고 무대공포증을 극복하게 해주며 감각의 왜곡으로 인해 자신이 노래를 대단히 잘 한다는 착각을 하게 해준다. 밤무대에서 노래를 하다가 대마초 사범을 구속되었던 어느 가수에게 들었는데 그는 대마초를 피운 상태에서 그리고 대마초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래를 불러 녹음하여 나중에 들어보니까 노래를 할 당시에는 대마초를 한 상태에서 노래를 하였을 때 기분도 좋고 노래를 잘 불렀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실제로는 별로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사회가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모든 것이 분업화되고 전문화되어 가지

만 가수들은 노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한다. 배우들도 연기만 잘해서는 안되고 개그맨도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들은 매너도 세련되어야 하고 말도 잘 해야 하며 적당한 유머감각도 있어야 한다. 가수라도 연기력도 있어야 하며 매니저나 프로듀서들과 술도 자주 먹으면서 평소에 끈끈한 인간관계를 맺어놓아야 한다. 어찌다가 여자와 어울리게 되면 있지도 않은 일로 스캔들에 휘말리게 되어 곤혹을 치르기도 한다. 그야말로 모든 면에 완벽함을 강요받게 된다. 우리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기보다 그저 무대에서나 방송에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고 박수를 보내고 즐거워하면 된다. 많은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혹은 연예전문지들과 방송에서조차도 연예인들의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스캔들에 관심을 갖고 이들의 비밀을 몰래 파헤치고 이로 인해 심각한 문제를 낳기도 한다. 연예인들도 자신들만의 문제가 있고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문제가 생겨도 오히려 감싸주고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연예인들도 마약이 위험성이나 해악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막연하게 알고 있는데 마약문제가 막상 자신의 마약을 할 경우에는 자기 문제를 부인하고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음주운전에는 가혹한 비판을 하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막상 내가 음주운전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럴듯한 이유를 대서 합리화 시킨 후 슬며시 차를 몰고 간다. 그러면서 점차 음주운전이 습관화되기 시작한다. 연예인들도 마약류 엑스터시를 사용하면서 그럴듯한 이유를 대고 점차 마약에 의존하게 되면서 신체적, 정신적인변화가 오는데 이를 잘 느끼지 못한다. 이런 마약의 폐해는 서서히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자칫 간과하기 쉬우며 나중에 문제가 생겼다고 느낄 때면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많다.

연예인들 사이에 퍼져있는 마약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마약사용을 부추기는 것 같다. 주위의 친구나 동료들이 마약을 할 경우 그를 설득하거나 치료에 개입을 시켜서 마약을 끊도록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쉬쉬하고 덮어주는 것이 문제이다. 미국에서는 가수들 뿐 아니라 패션모델에서는 마약

중독자가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그들은 마약중독자처럼 보이는 모델을 원하고 있으며 뺨뺨 마르고 얼굴이 초췌할수록 더 멋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미국의 인기 그룹들도 노래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메시지를 품고 다닌다. 그룹 멤버들의 마약복용이나 체포, 복용사실 시인 등의 일이 있을 때 청소년들은 이들을 흉내 내거나 마약복용까지 따라 하기 쉽다. 미국에서 발표된 새 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12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에서 1992년 이후 최근까지 마약 복용량이 80%나 증가하였다.

나). 최근 주요 마약류 범죄사례

1)2015년 주요 마약류 압수실적은 총82.5키로그램으로 전년도 72.6 키로그램 보다 증가하였다. 특히 국내 주종 마약류인 필로폰 (메트암페타민)의 경우 56,6 키로그램을 압수하여 전년대비 18.7%(전년도 47.7키로그램)증가하였으며, 대마초는 24.0키로그램으로 전년대비3.0%(전년도23.3키로그램) 증가하였다.

2)인터넷 등을 통한 마약류 제조기술 습득, 소규모 마약류 제조사건으로 2010년 화학박사가 신공법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제조한 사례가 있으며, 2011년 주한미국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인 일명‘스파이크’를 제조한 사례가 있어 검거되었다.

3)2012년 일반인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 제조 방법을 습득, 감기약 등으로 필로폰 ,GHB 등을 제조 하였으며 2013년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한 일반인과 호주국적의 제조기술자가 필론을 각 제조하였다.

4)2015년 일반인이 감기약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필로폰을 제조한 사례 및 조직폭력배 출신마약사범이 6회에 걸쳐 필로폰 제조하다가 적발되었다.

4). 금단과 의존에 의한 정신적 범죄행위

국내 마약류는 중독성 약물의 사용은 한 번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일정한 과정을 통해 점차적으로 의존, 내성으로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정도와 수위가 강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청소년들의 약물남

용은 성인들의 약물남용과정과는 정도나 내용 면에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초기단계에 즐기는 약물은 니코틴으로 불리는 담배(tobacco)이다. 담배는 성인남성의 절반 이상이 애용하는 일종의 기호품으로써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까지 인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기에 가장 흔하게 남용되는 비행수단으로서 담배를 많이 들고 있는데, 그만큼 청소년들의 담배남용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남성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여성 청소년들까지도 쉽게 담배를 남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남용의 수준은 점차적으로 그 연령대를 낮추는 결과를 불러오고 있는 실정이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담배의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자판기 등에서 쉽게 담배를 구할 수 있고, 청소년들의 신체조건이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성숙해져 있기 때문에 성인으로 속이고 쉽게 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 더욱이 군에서 담배를 일종의 필수보급품으로 지정하여 군인들에게 지중의 1/10 밖에 되지 않는 가격으로 담배를 지급함으로써 군이 흡연자들의 확산에 큰 기여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초래되었다. 마약의 시발점에 담배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만큼 약물에 대한 의존성과 중독성의 시작점에 담배가 있다는 것은 중요한 조건이 된다. 다음 단계로 술(alcohol)을 들 수 있다. 술은 담배를 시작한 청소년들이 대체적으로 다음 단계의 약물로 진행되는 필수코스이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의 서구 선진국들은 술의 판매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아주 엄격함을 보이고 있다. 포도주나 맥주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가볍게 마시는 소프트 알코올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지만, 소위 독주로 통하는 양주류나 기타 코냑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유통조사를 진행 중이다. 우리는 이와 상황이 전혀 달라서 구멍 가게로 불리는 소매점에서부터 대형 할인매장, 백화점 등에서 아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 주류의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저렴한 국가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남용이나 중독 등에 대해서도 별다른 법적, 제도적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술은 담배와는 다르게 상시 복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담배에 비해 청소년들의 음주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과 냉대적 시각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 장소에서나 스스럼없이 술을 마시기는 어렵다. 술을 남용하는 청소년들은 주로 화장이나 성인으로 오해

할 수 있을 정도의 치장을 하고 있으며,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술을 쉽게 파는 업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이러한 장소에 모여 술을 마신다. 청소년기에는 심리적으로 성인과는 달리 자신에 대한 통제력이 약함으로 인해 쉽게 취하거나 만취상태에서 실수를 저지르기가 쉽다. 또한 정상적인 상황에서 하기 어려운 폭력적인 행동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주변사람이나 친구들에게 해버림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법적인 처벌까지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단계로 접어들면 본드나 부탄가스를 흡입한다. 이 역시도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나 의사, 행동보다는 주변의 권유나 칭찬, 또는 유혹을 통해 시작이 된다. 본드나 부탄가스는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과 동일한 환각효과를 부여하면서 가격은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소년, 갱집단, 폭주족 등을 중심으로 널리 확산되어 있는 환각수단이다. 본드나 부탄가스는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다. 술을 사는 것보다도 오히려 본드나 부탄가스를 구입하는 것이 쉬울 정도로 주변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며, 가격이 아주 싸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청소년들이 쉽게 빠질 수 있다. 부탄가스나 본드를 흡입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다. 어지러움이나 구토가 바로 그것인데, 호흡기로 흡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부작용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이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청소년들은 더 나은 수단을 찾게 된다. 결국 거담제나 이뇨제와 같이 약용으로 만들어진 약품을 구입하여 마약의 대용물로 사용하는 단계로 접어든다. 일단 한번 마약류 대용 약품에 손을 대게 되면 전문적인 마약중독자가 되어 버렸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자기 스스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를 실행에 옮기는 일은 불가능하다. 특히 주변의 방해와 설득, 협박에 대해서 고통을 호소하거나 또는 이에 대해 공격적인 역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살인이나 강도, 폭행 등의 폭력범죄 발생가능성이 높다. (경찰청 범죄백서.2014)

마약류 대용 약품을 남용하던 청소년들은 이를 벗어나서 본격적인 마약의 세계에 빠져들고자 하는데 대표적으로 대마초를 선택한다. 마리화나로 불리는 대마초는 대마의 잎을 담배와 같이 말아 피우는 방식으로, 인체의 흡수된다. 대마초는 마약류의 전형에 포함될 정도로 강력한 환각효과를 보이며, 중독성

또한 강하다. 대마초에 중독된 청소년은 절대로 마약으로부터 손을 끊지 못한다. 또한 대마초와 같이 전문적인 마약은 구매를 위한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구입자금을 얻기 위해서 유흥업소 등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금품갈취 등을 통해 돈을 얻는 방법을 강구해야만 한다. 마약에 중독된 청소년들 가운데 강도나 절도, 폭행, 금품갈취 혐의로 처벌되는 경우가 유달리 많은 것도 구입자금 마련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최후까지 금단과 의존 중독에 진행된 청소년은 필로폰 등의 전문적인 마약을 남용하는 단계에 이른다. 청소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더 이상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며 몸이 원하는 바대로 움직이는 일종의 동물적 반응을 보인다. 전문적인 마약류 중독상태에 이르면 이성을 바탕으로 둔 사고를 전혀 하지 못한다. 더욱이 주변에 대해 공포감을 느끼거나 막연한 불안감 등에 휩싸여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을 죽이거나 큰 부상을 입히는 일을 저지르게 된다. 각 단계에서는 청소년은 약물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흔히 담배와 술은 함께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담배라는 약물과 술이라는 약물을 동시에 남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모든 약물은 하나만 이용하기가 어렵다. 특히 담배와 같이 어떠한 행동에도 같이 진행될 수 있는 물질들의 경우에는 복합적인 남용양상을 보인다.

가) 로라제팜 투약강도 사건 사례

최근 들어 상습 의존 상태에서, 로라제팜을 사용한 사기도박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실태로, 과거 향정(아티반) 마약류로 강력한 수면, 진정, 기억상실의 상태를 이용한 사례를 보면: 2010. 3. 26. 18:00경 (가명일시)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거주 피해자 박갑동(가명) 당62세는 평소 친구이며 목상동업자인 이명구(가명) 62세와 청양읍 버스종합터미널 2층에 있는 사랑방 다방에서 만나 그 다방 박마담과 같이 잡담을 하고 있는데 이들 두 사람의 왼손에는 똑같은 영의 5돈짜리 황금반지가 유별나게 크게 보였고 때마침 오징어를 먹고 싶다고 아양을 떠는 바람에 박갑동 노인이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1장을

건네주면서 마치 돈 자랑이라도 하는 것처럼 10,000원 권 지폐가 40여 매나 들어있는 지갑을 한참 동안이나 손에 들고 있다가 잠바 앞주머니에 넣었는데 이때 다방 구속에 앉아 있던 30대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노인들의 동정을 살피면서 밖으로 나가 아래층 입구에서 기다리다가 19:30경 피해노인 2명이 집에 가려고 밖으로 나오자 자연스럽게 접근하여 “저는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의 운동권인데 영감님들께 약주 한잔 대접하고 싶다”고 말을 걸면서 바로 옆에 있는 상점에서 인삼 넥타 2개를 구입하여 하나씩 권한바 피해노인들이 이를 받아 마시자 그 청년은 “야당에서는 대통령 직선제를 주장하지만 우리나라는 내각책임제가 더 좋다”는 등 정치성 언동을 하면서 그곳으로부터 약 300m 떨어진 청양읍 읍성리 대포집으로 데려가 같은 대포집 여주인 김순희(가명) 당 68세에게 “손님들을 안방으로 모시고 소주 2병과 안주 한 접시를 달라”고 주문한 후 자기만 주점 밖으로 나와 바로 옆에 있는 상점에서 인삼넥타 2개, 오렌지쥬스 4개, 솔담배 2갑 등을 구입하여 그 중 인삼넥타 2개에다 미리 준비 소지했던 “아티반” 10정씩을 혼입한 후 대포집으로 가지고 들어가 피해자 2명과 같은 대포집 남자주인 한홍교(가명) 당 70세 등 3명과 같이 앉아 진로소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 2명에게는 인삼넥타 1개씩을 권하고 대포집 남자 주인에게는 오렌지쥬스를 주면서 음료수를 섞여 마셔야 술이 금방 깬다고 말하여 4명이 각각 음료수를 마신바 약 5분쯤 후인 0:00경 박갑동 노인이 어지럽다고 하면서 방바닥에 쓰러지려 하자 범인은 급히 그를 부축하면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밖으로 끌고 나와 약 30m 가량 끌고 가다가 그의 좌측 손가락에 끼었던 금반지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잠바 속주머니에 들어있던 돈지갑을 꺼내는 것을 뒤쫓아간 대포집 주인 한홍교가 소리 내는 바람에 지갑을 땅에 떨어뜨리고 어두운 골목길로 도주하였다.

나) 혀 잘린 채 도망간 강간범 사례

의존에 의한 자신감의 현상으로, 2010. 4. 7. 오전 11:2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성동경찰서 뒷면 150m 떨어진 주택가 김영선(가명, 32세 여) 집에서 일체불상의 20대 청년 4명이 과도를 각자 소지하고 열려진 대문으로 침입하여

집을 보고 있던 피해자 김영선 여인을 합동으로 위협하고 전화선을 끊고 3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다음 4명이 순번을 정하여 윤간한 사건으로 옆집 아주머니가 피의자들이 도주하는 것을 이상히 여겨 성동경찰서 형사과에 신고한 것이다.

당시 성동경찰서 관내는 주택가 침입 강·절도가 상행하고 있어 강력반에서는 범죄 다발지로 지정하여 잠복근무를 주야로 실시하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범죄 발생 시 주민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전화 다이얼 부분에 형사과 강력팀 전화번호가 새겨진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반상회를 통하여 집집마다 배부했던 것이 그 효력을 본 것이다.

피해자 집 방문을 여는 순간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현장은 피해자 집 안방으로 9자 정도의 비교적 큰 방이었고 윗목에 대형 옷장이 놓여 있고 TV 등이 그대로 있으며 방 한가운데는 어린이용 담요가 깔려져 있고 방바닥은 온통 피로 물들어 있고 아직 피가 응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범행시간은 얼마 경과되지 않은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현장 촬영하던 H형사가 피와 함께 뒤범벅된 어떤 물체를 보고 강력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물체를 확인한바 분명 그것을 손가락 두 개 겹친 만큼 크기의 고기 덩어리였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그것은 범인 중의 한사람의 혀를 피해자가 물어뜯어 1/3쯤 잘린 것을 알았다.

피해자를 수색하라는 지시에 의거 K형사가 농문을 여는 순간 피해자가 뒤로 양손이 묶이고 입에 스카프 자갈을 문 채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K형사 앞으로 고꾸라지듯 쓰러지는 것을 보고 그를 양손으로 받으면서 큰 비명을 지른 것이다. 피해자가 실신한 상태이므로 경찰서 정문 앞에 있는 영동병원으로 후송 조치하였다.

그러니까 범인 4명이 침입 집을 보던 피해자를 과도로 위협하고 항거 불능케 한 다음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스카프와 넥타이로 묶은 다음 베개를 비스듬히 걸쳐 앉게 한 다음 차례로 강간하다가 실신 직전에 있던 피해자의 본능적인 반항으로 맨 마지막 강간하던 자가 자신의 혀를 피해자 입속으로 강제로 넣었을 때 이를 놓치지 않고 깨물어 피의자의 혀가 1/3쯤 잘린 후 피해자를 장롱 속에 가두어 놓고 도주한 것이다.

다) 의존상습투약자의 고백 사례

이정구(46)세는 오랫동안 마약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그런 그가 올 가을 결혼할 예정이다. 결혼을 결심했을 정도로 그의 몸과 마음 상태는 크게 좋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마약의 유혹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말한다. “히로뽕을 끊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이씨는 몇 번이나 마약을 끊으려다 실패했다. 지난 1년 동안 그는 마약관련기관에서 자원봉사로 상담도 하고 초등학교를 상대로 마약 강연도 했다. 또 올해 들어선 전문적인 마약상담사의 길을 걷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해 만학의 불꽃을 태우고 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그의 연락처를 알아낸 것을 6월 8일 오후였다. 그날 밤 그는 한 호텔 커피숍에서 가까운 친구들에게 아내 될 사람을 소개했다. 그 자리가 길어지는 바람에 인터뷰 약속은 다음날로 미뤄졌다. 그 자리에는 그의 결혼 상대자와 더불어 그녀의 남동생, 그의 여동생 등이 함께 있었다. 인사를 나누고 나서 조금 떨어진 테이블로 옮겨 앉았다. 인터뷰에 응하기 전 그는 “흥미 위주로 다루지 말 것”을 간절히 부탁했다.

그가 처음 마약을 접한 것은 1974년 대입 재수생 시절이었다. 당시 서울의 젊은이들 사이에선 히피문화가 유행이었다. 젊은이들이 많이 몰리는 명동과 신촌 일대에는 대마초가 흔했다. 주한미군을 통해 환각제인 LSD도 돌아다녔다. 명동의 한 음악 감상실에 자주 들락거리던 그는 음악 하는 친구들의 권유로 “별 생각 없이” 대마초를 피웠다. 그때만 해도 자신이 중독자가 되리라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또 실제로 그렇게 자주 하지도 않았다. 마약보다는 오히려 알코올에 더 심취했다. 그가 마약에 깊이 빠져든 계기는 사업실패에 따른 고통이었다. 실의에 빠져 지내던 그는 1999년 어느 날 길거리에서 우연히 재수 시절 알고 지내던 친구를 만났다. 이씨가 “너무 괴롭다”고 하자 그 친구에게 히로뽕을 권했다. 당시 그는 이미 알코올 중독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술과 히로뽕은 상승작용을 일으켰다. 이후 그는, 그의 표현대로라면 “몸이 완전히 망가질 정도로” 히로뽕에 빠져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삼이 파멸로 치닫는 것을 깨닫고 알코올 중독자 모임을 찾아갔다. 그 모임을 이끄는 성당 신부는 그에게 충북 음성에 있는

‘꽃동네’로 가 봉사활동을 하도록 권했다. “사회의 온갖 유혹에서 멀어져야겠다 싶어 ‘꽃동네’를 찾아갔다. 그렇지만 자원봉사를 하면서도 마약을 끊지는 못했다. 휴가 삼아 사회에 나올 때마다 다시 히로뽕을 투약한 것이다. ‘꽃동네’에 머무르는 10년 동안 그런 일이 대여섯 차례 되풀이 됐다.”

그가 꽃동네를 나오게 된 동기는 ‘분노’였다. 1998년 그의 아버지가 사망했다. 그런데 ‘꽃동네’ 측은 그가 충격을 받을까 염려해 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사회에 나왔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그는 ‘꽃동네’ 측의 처사에 몹시 분개했다. 또 다시 몸이 망가질 정도로 히로뽕을 투약했다.

약 기운에서 깨어난 후 그는 ‘꽃동네’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어느 날 외박을 나왔다가 우연히 동창생인 의사 친구의 연락처를 알게 됐다. 침례교회에 다니는 그 동창생은 그에게 신앙을 권했다. 그는 그 친구의 권유를 받아들여 서울 목동에 있는 한 침례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교회는 그에게 “몸과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을 줬다. 어느정도 안정을 회복한 그는 1999년 이화여대 평생교육원의 “약물 상담사”과정에 등록했다. 1년 과정이었는데 6개월 만에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마약에 손을 댄 것이다.

“주변 친구들과 나 자신을 자꾸 비교하면서 자괴감에 빠졌다. 그러다 우연히 예전에 약을 했던 친구를 만났다. 다시 약을 하면 큰일난다고 생각했지만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 며칠 뒤 약에서 깨어나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기자가 ‘우연히’라는 표현에 의문을 나타내자 “술에 취해 나도 모르게 약을 거래하는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발길을 옮긴 것 같다” 고쳐 말했다. 히로뽕의 ‘마력’에 대해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다. 이 세계에서는 ‘생각이 꽃힌다’는 표현을 쓴다.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 사람은 재벌이 돼 수천 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환상을 보게된다.

상상이 현실로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황홀한 기분에 젖어 있다 깨어나면 이번엔 반대로 견딜 수 없을 만큼 비참해진다. 그 비참한 느낌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 다시 약을 찾게 되는 것이다. 투약자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것인데, 어느 순간 기가 막힌 느낌이 찾아온다. 그것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약을 끊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망상이다. 그런 느낌은 결코 다시 오지 않는

다. 중독될수록 약효는 더 빨리 떨어지고 몸과 마음, 나아가 영혼까지 망가진다.

라). 투약자의 정신적, 심리적 환각에 증상

(1) 필로폰을 투약할 때 (가성숙 가명, 24세)

첫 번째, 혈관을 따라 흐르는 액체의 강렬함이 가슴팍에 와 닿으면서 약 30초간 정신까지 몽롱해짐을 감지한다. 냉녹차, 주스를 다량으로 마시게 되며 무엇인가 골똘하게 생각하게 하고 글로 표현하고픈 욕망을 억제하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투약 후 집으로 와 많은 습작을 남겼다.

두 번째, 전에 느껴보았던 것과 달리 아무런 느낌없이 일상생활을 즐겼다. 변화가 있었다면 전화를 해서 동생들에게 목었던 꾸지람을 넉넉히 표현한 것 같다. 노상에서 몰래 맞는 뽕이라 그런지 불안 초조했고, 다니고 싶은 욕구와 걷고 싶은 욕망에서 양평에서 팔당까지 걸었다.(새벽 01:00시 출발, 25km)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나의 인생에 대하여, 앞으로 진로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세 번째, 역시 노상에서 남 몰래 투약을 해서 그런지 주위가 산만했고 내 모양적인 모습이 불쌍타 여겨져 실컷 울었다. 방을 얻어 샤워 후 또 실컷 울었다. 내 자신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만감이 교차되면서 딸아이들 생각에 더 울었다.

다섯 번째, 체중감량과 더불어 식욕이 없어 잠을 자지 못한다. 혈관을 따라 흐르는 뽕의 실체는 무엇인지?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 철뚝아래 논뚝방에서 홀로 맞는 주사기를 보며 초라해져 버린 또 하나의 나를 발견했다. 이젠 그만 먹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에 솔직히 고백했다(전화상으로) “원이 마약 먹어. 지금, 이젠 먹지 말아야지요. 미안해요 노력할게요.” 아무런 대꾸가 없어 눈물을 흘릴 것 같은 남편의 영상이 떠올랐다. 울면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는 생각했다. 노력하겠노라고...

여섯 번째, 남은 양의 마지막 분이다. 이걸 버릴까, 먹을까, 많은 망설임 속

에 먹기로 했다. 혈관을 따라 흐르는 액체의 출발점이 혈관을 커다란 관으로 연결시켜 골인지점에 와닿은 듯한 그 느낌이 뇌리 속을 흔든다. 한참이나 아찔함을 느끼고는 또 걷기 시작했다. 이번엔 새벽 01:00경 양평에서 용문까지 (13km) 걷고 또 걸으면서 내 자신을 구하고 싶다는 솟구치는 욕망이 생겨났고 난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유치장에서, 쟁피살스럽고... 우수짙 스러워진 나의 이면이 표출되었다 생각하니 저절로 고개를 떨군다. 호기심과 살빠기에 목표를 두었던 내 자신이 바보스럽다. 난 이것이 위법인줄도 알면서 투약을 했다. 법적 제재가 없었다면 더 투약을 했을까? 내 스스로가 의구심이 생긴다. 많은 생각과 반성의 시간을 부른다. 날 망가뜨릴 순 없다. 이젠 본래의 내 모습을 찾아 살아가고 싶고 마약퇴치에 앞장서려나.

(2) 마약류 5회 투약 사용 후 심리적 사례 (윤종숙 가명, 23세)

첫 번째 투약 때, 처음엔 가슴이 두근두근 심장이 요통을 친다(보았을 때) 끈으로 팔을 감고 주사기가 혈관을 뚫고 들어오니깐 아프다는 느낌밖엔 없었다. 마약이 내 혈관을 통해서 온몸에 전해질 때 무언가 설명하기 곤란한 기분이 맴돌았다. 마음이 편해지고 몸이 나른해 지는게 너무 묘했다.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두 번째 투약 때, 처음과 같은 기분에 온 방안을 둘러 보았다. 왜 이다지도 방안이 지저분하게 느껴질까? 내 눈에 온통 먼지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때부터 청소를 시작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동안 청소를 했는지 모르겠다. 한 두시간이 흘렀나 아니다. 5~6시간은 청소한 것 같다. 몸이 나른하고 아프다는 것이 느껴진다.

세 번째 투약 때, 처음 같은 느낌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여전히 이리저리 왔다갔다 청소를 하고 있는 나를 거울로 통해 보게 된다. 이곳저곳에 있는 옷들도 꺼내서 빨래도 한다. 그러다가 잠시 담배를 한 개 핀다. 어느덧 3~4시간이 흘렀다. 몸이 나른다하는 것이 느껴진다.

네 번째 투약 때, 마약을 주사기에 넣어서 희석한 다음 내 혈관에 투약해 준

다. 그리고 여전히 담배를 한 개 피었다. 이젠 다른 것을 해보고 싶었다. 평소에 하던 십자수가 눈에 띈다. 십자수가 왜 이리 집중이 잘 되는지 너무 잘 된다. 십자수의 구멍구멍이 이다지도 크게 보일까! 내가 하는 십자수가 너무 예쁘게 보인다.

다섯 번째 투약 때, 투약하고 십자수를 손에 들었다. 십자수를 하다가 문득 화장품 가방에 있던 수첩생각이 나서 수첩을 꺼냈다. 수첩을 둘러보고 정리를 시작해서 정리가 끝났을 때 걸린 시간은 무려 4시간이나 걸렸다. 나는 별 힘이 들지 않았는데 옆에 있던 언니가 “너 미쳤니” 지금 수첩 가지고 4시간을 어떻게 정리를 하니 하고 핀잔을 주었다. 헌데 그렇게 말한 언니는 PC방에서 하루 종일 살았다.(서울청마수대,2009,4.2)

5). 중독의 무절제성 범죄행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적 감각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느끼기 위해 가끔 약물을 사용하게 되며, 긍정적 결과를 얻게 되면 약물에 지속적으로 의지하게 된다. 연예인이나 유명 예술인들 가운데 창조적인 작품 활동을 위해서 마약을 남용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들은 자신의 예술적 작품 활동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마약을 남용하게 되었다는 논리를 펼친다. 과거 마약에 대한 법률적 규제가 지금과 같이 심하지 않았을 당시만 해도 예술가들 사이에서는 마약이 일종의 창조활동 보조제로 여겨지기까지 했다. 18,19세기 중국에서는 예술작품의 작품성을 높이기 위해 양귀비나 대마초를 남용하는 예술가들이 많았다. 또한 근대 유럽에서도 예술성의 극대화 내지는 자신의 소진된 예술적 상상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마약을 남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였다.

가)엑스타시 과다 투약 후 사망사례

필로폰, 엑스타시의 마약류는 화학물질인 에페드린 원료물질로 제조하기 때문에, 과다 투약 및 콘돔에 넣어 위장에 은닉 밀반입 하다가 위에서 분산 한 후

사망사례 있으며, 2007년10월 강남구 대치동 거주 대학생 (30세) 마약전과 2범으로, 자기의 주거지에서 음주 후 신종마약류인 엑스타시 4정을 경구를 통해 투약 후 사망 하였다. 사망하기 전 필로폰 등 음주하면서 투약한 사례가 있으며, 사망 전 배회하던 신촌 지역에서 신종마약류 엑스타시 구입 소지하다가 투약한 것이다.

나) 대마초 중독에 의한 살인 사례

2013년 7월 5일 오전 5시 10분경에 충청남도 보령시에 있는 동부아파트 건설현장에 방한 23세의 A(23세)는 피해자와 대마초를 같이 흡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서로 사소한 내용에 대해서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말다툼이 순식간에 격렬한 몸싸움으로까지 연결되는 문제가 일어났다. 당시 몸에 칼을 소지하고 있던 범인 A는 바로 칼을 빼들어 같이 대마초를 흡입하던 자를 찔렀고, 피해자인 최씨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다. 같은 날 오전 7시경에 역시 같은 보령시에 위치한 신라장 여관으로 도피하였으나 이 여관의 주인이었던 홍모씨가 A를 보고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질렀으며, 이에 격분한 A는 또 다시 칼로 여관 주인을 살해하고 말았다. 홍성지검에서 수사하였던 이 사건은 마약의 무절제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된다. 마약을 남용함으로써 인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한계를 분명하게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2시간 안에 2명의 사람을 살해할 정도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확실한 선을 긋지 못하였다. 특히 사소한 말다툼으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는 정상인에게서는 나타나기 어려운 형태로서 마약류의 영향으로 인한 감정과 행동의 무절제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된다.

다) 필로폰 과다 투약과 자살 사례

2001년 3월 31일 오후 8시경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위치한 한 자택에서 이집의 주인인 51세 이모씨가 마약류 과다투여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

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지가 뒤틀린 이씨의 시신을 발견하였으며, 처음에는 간질이나 기타 쇼크나 발작에 의한 사망으로 생각하였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과 부검결과 마약과다 복용으로 인한 쇼크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건의 사망자인 이모씨는 무직으로서 평상시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사람이었다. 마약에 한번 손을 댄 이후로 좀처럼 마약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시간이 갈수록 마약의 투여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가족도 그의 히로뽕 투여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이를 막기는 쉽지 않았다. 결국 마약의 무절제한 투약으로 인해 신장과 간의 기능이 파괴되었고,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하는 식습관으로 인해 몸에 상당한 이상이 올 수밖에 없었다. 제대로 된 식사량의 확보와 운동을 통해 체력관리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에 심취하고 무절제한 히로뽕 투약으로 인해 결국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불행한 사건이었다.

라) 콘도에서 살인 범죄 사례

1998년 10월 21일 오전 11시경에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에 위치한 글로리 콘도에서 한 남성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사망자는 함모씨로서 36세의 무직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그의 시신을 부검하여 나온 결과는 히로뽕 과다투여로 인한 쇼크사였다. 평상시 함씨는 히로뽕을 반복적으로 투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 정도가 아주 심각한 수준이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한 것이 점차적으로 현실에 대한 도피처와 성적인 흥분을 느끼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변질되기 시작하였으며, 나중에 가서는 하루에 수차례씩 반복적으로 히로뽕을 체내에 투여하는 상황으로까지 발전하고 말았다. 결국 그는 자신의 마약에 대한 반복적인 욕구를 이기지 못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시체로 발견되는 불행을 겪고 말았다. 마약류에 대한 중독의 욕구는 그 누구도 벗어나기가 어렵다. 아무리 많은 시간동안 자신과의 싸움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고도의 자제력이 존재하지 않는 한에는 절대로 마약을 반복적으로 남용하는 일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드물다. 이 사례에서 발견된 중요한 점은 반복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남용

하려 한다는 사실이다.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부터가 아닌 육체적 또는 뇌에 의한 본능적 자극을 통해서 욕구에 대한 충족의지의 일환으로 마약을 남용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지영환,2004,p,82)

마) 논현동 주택 방화 후 자살 사례

중독에 의한 정신범죄의 사례, 1997년 1월 7일 오후 5시경에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에서 40대의 남성이 흉기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자살자는 44세의 이모씨로서 무직이었는데 뚜렷한 자살의 동기가 없는 상태에서 집에 불을 지르고 칼로 자해를 해 사망에 이르렀다. 이를 조사한 경찰과 검찰은 이씨가 자살할 당시에 평상시 자꾸 남용하던 히로뽕에 심각하게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부검결과 확인하였다. 그는 부유한 경제적 환경에서 편안한 삶을 누렸는데 별다르게 어려움이 없이 남으로부터 부러움을 살 만한 경제적 여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여력과 시간적인 여유는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시발점이 되고 말았다. 이씨의 히로뽕 투약상황은 아주 심각한 수준이었다. 하루에 수차례에 걸쳐서 히로뽕을 투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마약에 심각하게 중독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한 일종의 후유증으로서 우울증까지 앓고 있었다. 결국 자신의 신세와 상황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이 본인의 정신세계를 지배한 결과 칼로 목숨을 끊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지영환,2004,p,83)

6). 환각에 의한 정신범죄행위 (환청, 환후 환시, 환미, 환촉)

정신분열이나 정신이상을 마약과 연관시킨다면 원인과 결과의 측면에서 결과론적인 면이 강할 수밖에 없다. 마약을 장기간 남용할 경우 정신이상이라는 부작용과 결과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신이상의 원인으로서는 마약남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프로이드가 주장한 여러 이론들을 도입하여 내용적으로 앞과 뒤의 선행관계를 연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프로이드(Freud)가 자신의 연구를 진행에 나가면서 직접적으로 마약문제나 범죄와 심리학 이론을 연관 지은 것은

거의 없다. 더욱이 범죄와의 관련성을 연구하기 위해 보냈던 시간은 극히 적었다. 그는 잠재적인 범죄성이 본인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마음의 내면에서 나타나게 되며, 특히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엘렉트라 콤플렉스에 의해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이 전부 사라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범죄는 정신질환에 의한 환각, 환청, 환시라는 엄청난 정신 범죄적 특성을 불러온다. 특히 정신분열병 환자에게서는 환청이 70% 정도로 가장 흔하며, 그 다음으로는 20%가 정도의 환시가 흔하다.(김이영,2013,p.299)

마약을 남용하거나 또는 제조, 판매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사회적 열등감이나 부정적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사회와의 갈등적 관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약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여성의 경우 남성중심의 사회 질서로 인해 자신의 뜻과 이상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이에 대한 부정적 반응의 결과로서 마약에 빠지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되고 있다.

가) 환청에 의한 살인 사례

2014년 1월 5일 오전 1시 30분경에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투숙 중이었던 윤모씨는 히로뽕을 혼자 투여하였다. 평상시 히로뽕을 자주 사용하였던 윤모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36세의 남자였다.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감이나 가정에서 가장으로서의 역할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주변으로부터도 별다르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사건 당시 정씨는 히로뽕에 중독된 상태로서 심각한 환각상태로 인해 일상적인 활동까지 제약을 받는 상황이었다. 특히 환청과 주변에서 자신을 공격하고자 한다는 식의 일종의 피해망상 증상이 심각함으로 인해 자주 문제를 일으키곤 하였다. 모텔에 투숙하여 주사기로 히로뽕을 투여한 정씨는 점차 심한 발작과 함께 오한을 경험하였으며, 자신을 누군가가 죽이려 한다는 심각한 피해 망상적 환각에 빠지고 말았다. 결국 난동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를 하던 끝에 지나가던 행인을 살해하고 자신도 승강기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는 자해를 벌이다가 과다출혈로 인해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 당시 정씨는 목격자들을 상대로 하여 심각한 환각적 행동을 보여주었으며, 경찰 역시로 이러한

내용들이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판단하였다.

마약류 중독자 가운데 상당수는 마약을 남용한 상태에서 경험하게는 환각적인 증상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주변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또는 자신을 대상으로 하여 자해 등의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 마련이다. 마약의 남용이 점차적으로 강화되면서 환각적인 증상도 더 강해지게 되는데, 특히 피해망상 내지는 타인이 자신을 이유 없이 공격할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하면서 불특정 대상으로 상대로 공격을 하거나 또는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마약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환각에 의한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부분이다. 이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신의 목숨을 빼앗을 정도로 강력한 자해 내지는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의 양상을 보여주게 되며, 주변에서 제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 생명과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나) 환청에 의한 성기 절단 사례

인천광역시 산곡동 거주하는 37세의 김 성 중, 향정전과 등 7범, 마약류관리에 관한 위반죄 지명수배자로 2013년 3월16일경, 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0그램을 200만원에 구입소지 하고 있다가 인천 부평구 산곡동 소재 천마산 약수터 부근 산중턱에서 0.05그램 가량을 1회 주사기로 2회 걸쳐 투약하고“너의 성기를 잘라라” 라는 애인의 환청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자기의 성기를 절단하여 한남동 소재 병원에 치료 중 상습투약자의 사례의 실태이다.

다) 환후에 의한 장시간 성행위 사례

피의자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약 1년간 국제 결혼한 (45세남자, 34세여자) 부부지간으로 2005년4월 경 금천구 시흥동 사거리 부근 엘지주유소 앞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0그램을 1백만 원 구입 소지하고 있다가, 주거지 인천광역시 서구 집에서 각각 물에 0.03그램을 정맥주사 투약 후 약 4시간동안 성행 후, 다시 남편이 계속적으로 성행위를 요구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한 사례로 남서의 경우 마약류 전과 25범으로 과다 필로폰 투약 후 환후의

현상으로 계속적 성행위를 요구한 것이다.

라) 환각에 의한 절도 사례

환각에 의한 범죄는 자해나 자살 또는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사례도 있지만 일반적인 범죄유형의 하나인 절도사건에도 많이 대입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사건으로서 다음의 사건을 예로 들어보고자 한다. 1997년 7월부터 1998년 9월까지 경기도 양평과 강원도 횡성, 경상북도 경주시 등의 유명 관광지에 위치한 모텔만을 대상으로 절도사건이 빈발하였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31세의 이모씨와 37세의 서모씨는 환각상태에서 모텔대상 절도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두 공범은 히로뽕을 투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환각상태에서 마치 술에 취한 것과 같이 더 이상의 공포심과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범죄를 저지러 수 있다는 점을 선호하였다. 원래는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행동의 제약과 쉽게 피로감이 온다는 점이 맘에 안 들어 마약으로 범행수단을 변경하였다. 이 둘은 히로뽕을 암시장에서 몰래 구매한 뒤 바로 투약에 들어갔으며, 환각에 취한 상태에서 사전에 범행대상으로 물색한 모텔을 털었다. 이들이 1년여의 범행기간동안 절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약속어음 11장을 포함한 수천만 원의 현금을 절취하였으며, 신용카드 31장, 그리고 고가의 카메라와 귀금속 등을 훔쳐 유흥비로 전부 탕진하였다. 둘 다 내성적이고 겁이 많은 성격이었기 때문에 히로뽕의 투여는 범행을 저지러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범행이 들켜거나 발각되었을 경우에 이에 대한 즉각적인 폭력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히로뽕의 사용은 너무나 좋은 행위였을 것이다.

7). 마약중독 ‘성’ 충동질환에 의한 행위

자신이 사귀고 싶은 대상에게 용기를 내어 다가갈 수 없다고 느낄 때, 이를 현실이 아닌 약물 세계에서나마 대리모 만족을 추구한다. 생물학적으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접근 욕구는 어쩔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아무리 자

기 스스로 억제를 하고자 해도 남성이 여성에게 다가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막을 수 없다. 만약 이러한 충동적 행위가 완전히 차단되거나 억제된다면 우리 사회의 후세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정지되는 엄청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억압된 성적욕구뿐 아니라 공격적, 자기충동적, 성취적 욕구의 좌절 등이 있을 때 유사한 행동을 취할 수 있으며, 여성을 취하지 못함을 보상받기 위한 보상적 심리에서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도 많다.

가) 성 충동성 살인 행위 사례

2013년 7월 24일 오전 4시 15분경에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라데팡스 모텔에서 당시 27세였던 명모씨가 섹스 파트너였던 피해자 오모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명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오모양과 애인관계로 진전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섹스파트너로 깊은 관계를 맺었다. 마약중독증상을 보이던 명씨는 자신의 성적 쾌락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파트너인 오모양에게 같이 마약을 사용할 것을 원하였으며, 상대방인 오모양 역시 이를 부정하지 않고 같이 남용하게 되었다. 사건 당일 날 명씨와 오모양은 히로뽕을 다량을 투여하고 환각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장시간 하였다. 이 때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성행위를 하였으며, 양쪽 모두의 극도의 흥분상태를 보였다. 음란성으로 인한 흥분상태를 견디지 못한 명씨는 상대방인 오모양의 목을 갑자기 조르기 시작하였으며, 목이 졸려 숨을 쉬지 못한 오모양은 쇼크로 사망하고 말았다. 자신의 공격으로 인해 상대방인 오모양이 사망에 이르렀음을 마약에서 깬 뒤에야 알게 되었고, 자신의 범행을 크게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마약을 남용하는 중독자들 가운데에는 성행위시 성적 흥분이나 오르가즘을 증대하기 위해 마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초기에는 이러한 남용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이지만 나중에 중독적인 상황으로까지 진행되면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기 쉽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마약중독상태에서 일어나는 쾌락살인이 심각한 사회적, 범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도 역시 이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이 고스란히 존재한다.

나) 유흥업소 여종업원 살인 사례

평소 감기약 러미라정(감기약)을 다량으로 복용하여 중독 상태에 놓였던 40세의 김모씨는 속칭 미아리 업소 텍사스에서 윤락녀로 일하고 있던 김씨를 사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환각상태에서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윤락녀인 김씨를 부르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를 사랑하는 감정이 싹트고 말았다. 이후로 환각상태에서 김씨는 지속적으로 윤락녀 김씨를 부르게 되었고 나중에는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과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는 관계로 진행되었다. 윤락녀 김씨는 러미라 중독자인 김씨를 단순히 편한 고객 정도로만 생각하였고 별다른 애정의 감정을 가지지는 못하였다. 사건이 발생한 2012년 1월 16일 오전 5시 30분경에 미아리 텍사스골목에 위치한 미도파 여관 00호실에서 러미라정 중독자인 김씨는 윤락녀 김씨를 상대로 동거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윤락녀 김씨는 단순히 고객일 뿐 사랑하는 감정이 전혀 없음을 밝혔고 동거 요구에 대해서도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이에 격분한 김씨는 상대방인 윤락녀 김씨를 목졸라 살해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당시 범인 김씨는 러미라정(감기약)의 약 효과를 보고 있었다. 따라서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했으며, 감정적인 격함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는 피해자인 김씨와 격렬한 성관계를 맺은 뒤에도 김씨를 바로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평상시 범인인 김씨는 온순한 성격이었으며, 주변사람들로부터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그는 동거를 거부한 피해자 김씨를 상대로 환각상태에서 격렬한 성관계를 맺었으며, 이 과정의 일환으로 그녀를 살해하는 일을 저질렀다. 성적인 쾌락이 인간의 극단적인 양상과 서로 맞물릴 경우에 아주 심각한 범죄적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사례가 대표적인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해자인 김씨는 사람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환각적 쾌락을 느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모든 동물에게는 생명을 죽이고자 하는 충족적 본능이 존재한다. 인간도 이러한 동물로서의 성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대신에 사회적 규범과 법률이

이러한 극단적인 본능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마약은 환각상태에서 법률과 규범, 도덕을 충분히 위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부 범죄학자들은 유도한다는 표현까지도 사용하고 있다. 마약의 환각상태는 동물적인 본능, 주로 파괴적인 본능과 살인을 위한 본능을 자극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이러한 본능을 통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마약남용을 통해 확실하게 전개된다. (대검마약류범죄백서,2016.P,206)

8). 불안과 사회 환경에 의한 범죄행위

가정적 원인과 사회 환경적 원인으로 청소년들은 평소 마음이 항상 불안, 갈등 속에 머물러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에 대한 열망이 대단하다. 성인이 되기 이전까지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홀로 조용히 자신의 원하는 세상 속에 남아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이 목표한 바를 현실적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좌절감, 공포) 그 대신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자 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평화는 마음의 평화일 뿐이다. 설령 그러한 평화를 통해서 일순간 안식을 얻는다 하더라도 마약을 통해 얻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과 고통뿐이다. 매춘을 하는 여성들 가운데 마약에 심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일순간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도피처이나 위안처로 본드, 부탄가스, 마약을 선택한다.

마약을 남용하는 개인 가운데에 다른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다. 교우관계를 중시하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싫거나 또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를 위해 그냥 따라간다는 점이다. 교우관계 추구형 인간은 집단 내의 동지에 감정을 증가시키고 서로의 좋은 느낌에 대한 갈망이나 욕구 등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약물을 사용한다. 즉, 약물남용은 집단구성원 간에 훨씬 더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개방된 분위기를 창조하도록 돕는다. 미국에서 대학이나 특정 서클에서 모임이 있을 때 마약을 집단적으로 남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

시도 마약을 통한 대인관계 확대의 용이성을 위한 약물이라고 생각한다.

가) 살인 및 사체 유기 사례

마리화나의 사례로 대 다수 대마흡연자들은 다른 마약류, 담배보다 유해성이 없다고 잘못된 인식이 있다. 특히 외국에서 유학한 학생들은 더욱더 유해성의 문제로 거론하고 비 합법화 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심리적인 불안감은 약물로 남용하도록 유도하거나 또는 마약남용이나 중독의 단속과 적발, 처벌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범죄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작용을 한다. 대부분의 경우 마약중독은 심리적인 불안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2년 7월 19일 새벽 4시경에 공범인 이모씨(30세)와 박모씨(28세), 그리고 노모씨(28세)는 자신들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은연중에 공개할 것을 밝힌 피해자 최모씨를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소재 야산으로 끌고 갔다. 이곳에서 이들은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극도의 불안감을 보인 나머지 곡괭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말았다.

피해자인 최모씨를 살해한 3명의 공범은 사체를 유기할 것을 공모하고 해당 야산의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이 피해자의 시체를 파묻었다. 하지만 경찰이 실종된 최모씨에 대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절친하게 지내던 것이 발각되어 바로 검거되고 말았다. 대마 등과 같은 마약류의 남용은 현실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많이 초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는 마약남용 내지는 중독과 관련된 불안감이 증폭될 경우에는 주변사람들을 이 사례와 같이 살해하거나 또는 심각한 수준으로 다치게 하는 경우까지 일어날 수 있다. 마약 남용은 심리적인 불안을 바로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여러 사람이 같이 마약을 남용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세어나가게 하는 그룹의 일원을 쉽게 살해하는 잔혹성을 보여준다.

나) 가족 인질 난동 사례

2010년 4월 5일 오전 9시 30분경,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34세의 노동이 직업인 김모씨가 히로뽕에 취한 상태에서 부인과 딸을 식칼로 위협하면서 경찰관과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는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하였는데 사건이 일어날 때에도 히로뽕에 심각하게 취해 있는 상태였다. 그는 부인과 딸의 옷을 벗기고 몸에 칼을 대면서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다는 식으로 강력한 위협을 가하였다. 경찰이 출동하면서 가족에 대한 위협의 수위는 더욱 높아졌는데 결국 1시간 뒤 경찰이 강제력으로 진압을 시도함으로써 사건이 마감될 수 있었다. 진압 당시에 범인은 부인과 딸에게 칼을 휘둘러 충상을 입혔다. 하지만 다행히 가족들의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

이 사건에서 나온 바와 같이 자신의 자고에 대해서도 일단 불안감을 느끼면 그에 따라서 심한 자기방어적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도를 지나칠 경우에는 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공격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사건은 마약류 중독자들에게서 심심치 않게 발견되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마약류 남용 및 중독사범을 신속히 적발하거나 이들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을 경우에 많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나) 농아자의 오토바이 날치기 사례

피의자 홍만수(가명)가 이보국(가명) 각 무직자인 농아자로 2003. 9. 8. 22:00경 서울·남대문 주변에 있는 서울 휴게실에서 만나 피의자 홍만수의 제의로 부산에 가서 날치기를 한탕 하자고 공모하고 동 이보국이 범행에 사용할 오토바이를 준비한 수 부산으로 내려와서 합동하여, 2003. 9. 10. 12:35경 부산시 북구 주례동 834번지 소재 삼원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김순이(가명, 만21세)가 부산은행 사상지점에서 회사 돈을 인출하여 노란봉투에 넣어두고 회사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동 홍만수가 피해자 김순이 노란봉투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10만원과 부산은행 예금통장 1매 등을 날치기하는 방법으로 합동 절취하고, 피의자 등은 2003. 9. 10 14:20경 부산시 동래구 사직1동 소재 포미세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김영수(가명, 만38세)가 부

산은행 사직동 지점에서 돈을 인출하여 핸드백에 넣어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을, 피의자 등이 동 은행 앞에서 망을 보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의자 이보국이 서울 성북 다 6392호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동 홍만수는 뒤에 승차하여 피해자 뒤를 따라 가다가 동 홍만수가 접근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는 동 소유인의 핸드백 1개 씯가 7만원 상당과 중간가방 1개 씯가 4만원 상당 패스포드 1개 씯가 15,000원 상당과 그 속에 들어있는 현금 1,971,000원을 날치기하는 수법으로 합동 절취한 것이다.(지영환,2003,P,93)

경찰은 직원 1명을 대동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로 추적 중 동래구 온천 3동 기남로타리 방면에서 북구 만덕 제2 터널 쪽으로 도주하는 피의자 2명이 서울 성북 다 6392호 대림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정차명령을 하였으나 계속 도주하다가 되돌아 동래경찰서 온천 3파출소 방면으로 도주하는 것을 계속 추적하면서 무전으로 온천 3파출소 및 동래경찰서 상황실에 전파하자 온천 3파출소 직원 1명이 동래경찰서 상황실로부터 무전지령을 받고 파출소 앞에서 목을 차단하고 있던 경찰이 동 파출소 뒤 50여m 지점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내려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차 명령을 하였으나 전속력으로 다가오는 것이 정차하지 않을 것 같아 경찰은 접근한 오토바이 뒷바퀴를 발로 차고 경찰은 순간적으로 가스총을 발사하자 피의자는 오토바이의 중심을 잃고 온천 3파출소 앞 노상에 넘어지는 것을 검거코자 하였으니 피의자 1명은 온천 3동 소재 자비사 건물쪽으로 도주하여 당시 지령 받고 추적중이던 11호와 합세하여 검거하고 1명은 경찰이 약 200m 상거한 간은동 부산백화점 1층 로비까지 추적 검거한바 서울에서 원정을 온 농아자 범죄로 동일 12:35 북구에서 발생한 동일범으로 판명되었다. 청소년 들은 폭력에 의한 약물의(마약, 유해화학물질, 치료약) 남용약물(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 진해, 진통, 진사, 수면유도, 환각 2000년1월12일 제정, 마약류라고 한다)은 습관성(habituatation)과 중독성(addiction)이 있으며 금단증상(abstinence syndrome)이 있다. 습관성은 정신적 갈망 즉 정신적 의존(psychological dependence)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내 정신이 그 약물에 의존되어 있다는 것이다. 중독성은 육체적 갈망 즉 육체적 의존(physical dependence)을 말한다. 그럼으로 인체에는 의존과 내성으로 내포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마약류

투약자는 대 다수가 의존에 의한 정신적 질환을 갖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일반적으로 폭력성으로 표출 되어 정신적 범행을 자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약물이 신체에 잠복하여 흥분제나, 환각제인 PCP, 필로폰, 코카인, 암페타민, 대마초 등 사용으로 대인관계 갈등, 안절부절못하는 태도, 사회적 편집증을 유발하여 폭력행동을 할 수 있다.(박소현,2008.P54) 그리고 경제적 상황에 기인하는 폭력으로 마약류를 지속 사용하기 위해, 돈 마련하기 위해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더나가 마약세계에 접근하기 위해 조직적 폭력배 전환 불법마약류 판매 등 조직관리를 위해 폭력에 개입 할 수 가 있다.(지영환.2004,p96)

다) 10대들의 우발적 범행 사례

불법약물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10대들은 그 이전에 다른 범죄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 체포된 적이 있든 상관없이 범행을 자행 한다. 그 예로, 2002. 6. 4. 23:00경 대구시 서구 내당1동 소재 충선여행 레스토랑에서 10대 남자 9명이 들어와 맥주 한 상자를 시켜먹고 그중 두 명은 먼저 가고 나머지 7명은 술이 취하지 않는다고 양주 4병을 추가로 시켜먹은 뒤 술값이 없자 이의 지불을 면탈할 목적으로 동 레스토랑 주인에게 술집 주인이 형편없다는 등의 말로 시비를 걸어 룸 안으로 끌어들여 무릎으로 걷어차니 이를 본 옆 좌석 손님 3명이 만류하자 이들 7명은 동 레스토랑 안에 설치된 장식용 쇠파이프를 빼어들고 맥주병을 깨어 집단으로 시설을 마구 파손하고 레스토랑 주인과 만류하는 손님 3명에게 옷을 벗게 하여 꿇어 앉힌 후 집단 구타하여 각 2주의 상해를 입히고 현금 1000만원을 강취하고 그중 한명은 동 레스토랑 여종업원 한명을 강제로 룸 안으로 끌어들여 목을 조르는 등 반항을 못하도록 한 후 옷을 벗겨 희롱을 하고 강간을 시도하다가 도주한 사건이다.

신고를 접한 당서 형사팀은 형사전원을 비상소집하여 이들의 인상착오 등을 알아내고 도주로를 중심으로 숙박업소 및 포장마차 노래방 등에 출입여주를 알아내기 위해 형사를 배치하고, 대구시내 윤락여성 집단 수요지인 자갈마당, 대구역 앞 일대에 집중 수사를 전개하였으나 용의자를 발견치 못하였으며, 피해자인 레스토랑 주인을 상대로 수사한바 일행 9명중 맥주만을 먹고 먼저 나

간 두 명 가운데 한 명의 이름이 길동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에 의거 당
서관내 20개동사무소에 형사 20개조를 배치하여 20세 전후의 길동이라는 이
름을 가진 자를 수사한바 21명의 길동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에 대한 주민등
록표 원부를 입수하여 원부상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니 동 업소에서 술
을 먹고 먼저 나간 길동(20세)을 찾아내는데 성공하였다.

사건현장인 레스토랑에서 술을 먹고 나간 길동은 대구시 서구 평리 4동에
거주하며, 형사대가 새벽에 위 주소지를 답사하여 태연히 잠을 자고 있던 것
을 임의 동행하여 추궁한바 공범 7명의 인적사항을 진술하였다. 수사진은 공
범들이 길동 집으로 전화가 오도록 공작해 놓고 잠복하고 있으니 사건발생
이튿날 낮 12시경 7명중 대구시 만촌동에 사는 창덕(17세)으로부터 ‘옷을 갈
아입고 서울로 피신하겠다.’는 전화가 걸려와 형사진을 동대구역, 대구역, 고
속버스터미널 등에 배치하고, 또한 일부러 피의자등의 주거지 주변에 매복근
무 배치를 하였던 바 동일 12:00경 위 창덕 등 일단 4명이 창덕이 집 앞 노
상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질수하는 것을 약 1km 추격하여 사건발생 14시간
만에 격투 끝에 검거하고 나머지 3명은 배회 처에서 각각 검거하였다.(지영
환,2002,p97)

라) 경찰서 침입 난동 사례

2011년 1월 2일 오후 7시경에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투여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아오던 29세의 피의자 김모씨는 여동생과 함께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자수를 하였다. 당시 동생의 설득이 주효하여 자수를 결심하
게 되었으며 순순히 자수에 응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말았다. 투약경위 들을 조사받고 동생과 면담을 하던 도중
에 갑자기 마약의 영향이 그대로 발동하여 폭력사건 증거물로 놓여 있던 부
엿칼로 자신의 기도 부위를 찔러 자해를 하고 형사과 사무실에서 약 10여 분
간 심각한 난동을 부려 경찰관들에 의해 강제적으로 제압을 당하였다. 자수를
하기 이전에는 정상적인 상황이었지만 마약의 장기간에 걸친 상습적 복용으
로 인해 결국 경찰서에서 조사과정에서 본인의 목을 칼로 찌르는 끔찍한 자

해사건을 일으키게 되었다. 마약의 장기간 복용은 아주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자칫 잘못된 경우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극단적인 폭력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으로서 아주 안전하고 착한 사람도 마약에 장기간 노출이 되면 언제들이 이러한 식으로 범죄나 난동 또는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당시 경찰서에서도 자수까지 한 사람이 설마 난동을 부리겠느냐고 생각을 했으나 피의자가 마약중독자라는 사실을 전혀 고려치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였다.

마) 대구검찰청 침입 난동 사례

2013년 3월 29일에는 전혀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유형의 인질난동사건이 대구에서 발생하였다. 당시 29세의 운전기사가 직업이었던 김모씨는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하였다. 그 결과로 심각한 환각과 환청, 그리고 피해망상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식칼을 소지한 채 이 사건의 피해자인 박모씨(51세)의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에 칼을 들이댄 후 대구 시내 일대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경험하여 검찰청으로 차를 들일 것을 지시하였고 대구지방 검찰청에 그대로 난입하여 마약전담검사와 면담을 시켜줄 것을 요구하였다. 난동도중 경찰과 검찰수사관들이 달려들어 범인을 제압, 검거할 수 있었다. 이 사건도 기존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폭력행사는 일반적인 범죄에서는 거의 보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는 폭력성이 마약의 장기간에 걸친 복용과 남용으로 인해 서서히 싹을 틔운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약을 장기간에 걸쳐 남용하게 될 경우에는 본인도 모르게 극도의 정신분열과 함께 폭력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제4장 마약류 중독정신범죄 사범의 문제점과 대책

제1절 중독정신범죄사범 발생의 문제

1).확산에 따른 밀반입, 정부와 단속관련기관

우리나라 마약류 확산실태는 분석한 경우처럼 2006년 8천명에서 2009년 1만2천명으로 확산 되었다가, 년 평균수준 9천명 선으로 유지하다가 급속도로 1만 명을 추월하는 실태를 볼 수 있다. 우선 공급자가 다양화 현상으로 전환 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특히 과거에는 중국, 미국 등에서 대다수 마약류가 공급되었으나, 최근에는 중국, 홍콩, 캄보디아, 대만, 태국 등 동남아와 미국 등으로 경로와 품목, 경향 등이 다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국내에 반입한 마약류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현상은 위해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국제화 개방으로 외국인, 국내유학생, 청소년 10대(2015,128명)~ 20대(1,305명) 대학생, 외국의 근로자, 투약전과자의 재범자. 공급과 매매 등 다변화, 북한이탈자 등이 중독되거나 호기심, 우연이, 친구권유, 피곤해서, 섹스하기 위해서 등의, 이유로 사용자 증가 하였고 , 공급 및 밀반입 과정에서 과거에는 인편을 이용 소지. 버스화물, 기차화물, 배달방법으로 유통하였으나 최근의 밀반입, 공급, 판매과정은 인터넷. SNS와 메신저, 블로그,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이나 위챗, 통화분석 못하도록 텔레그램 사용이 증가하는 등 애플리케이션 , 변종 신종마약류 등을 공급자와 사용자에게 쉽게 연락 통해 과거와 다른 방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 현금거래, 대포통장 사용하다가 최근에는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 으로 거래하고 있으며, 밀반입에서도 국제우편, 특송화물, 외에 수립화물, 선원 등 위장인편 등으로 지속적으로 공항과 항만을 통해 밀반입되고 있다. 외국인 학원강사, 근로자 등이 국내활동으로 자국의 마약류를 밀반입하여 판매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2011년부터2015년까지 외국인사범이 295명이 2015년도에는 640명으로 증가되는 실태로 그 에 따른 중독정신범죄 사범은1만 명의비례에 의하여1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보건복지포럼,2013,P,37)

2). 투약자, 기생지역 및 관련 단체

마약류 투약자의 내적의 접근에는 투약자 자신에 대한 문제와 갈등에 대하여 사회적, 개인적. 집단에서 문제에 직면하면 직접 스스로 해결 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 정서적인 긴장, 불안, 우울, 권태, 외로움, 등의 상황에서 회피하려 할 때 마약류가 하나의 좋은 도피수단이 된다. 이를 도피하기 위해서 지속적, 반복적, 상승적으로 사용 할 경우 목적은 실현되지 않고 중독자로 전환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아기능의 취약성으로 어린 시절의 빈곤, 낮은 사회계층, 우범지역의 생활 등을 노출과 이탈을 위하여 마약류에 접근하고 이들은 심리치료, 음악치료, 스포츠를 통해 치유 하여야 한다. 그 이에도 생물학적인 치료와 유전적 치료의 문제점도 도출되었다. 그리고 외적인 마약류 범죄 접근으로는 지역별로 사범 검거사례를 보면, 2015년 한해 서울지역에서 2,556명, 경기의 중심부 수원지역에서 3,353명, 인천지역에서 1,379명, 부산지역에서 1,071명, 대구지역에서 947명, 경기북부지역 의정부에서 705명, 창원지역에서 703명과 신흥지역으로는 대전, 광주, 청주 지역으로 볼 수 있으며, (대검마약류백서, 2016, P, 89) 이러한 모든 지역에서 총 11,916명의 한해 검거인원으로 이러한 검거지역에는 인구의 집중과 외국인 거주, 기업, 유흥가, 클럽, 지하경제와 시장경제가 활성화 지역, 소비와 낭비 과대하게 지출지역으로 추정 할 수 있으며, 그런 장소의 지역에서 마약류 사범의 증가 실태를 보면 마약류에 접근하기 용이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서울지역에서는 강북지역의 마포, 서대구청 관할로 신촌에 대학가, 유흥업소, 클럽, 노래방, 식당가, 숙박업소, 극장, 오락실 등에서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 등이 주로 야간에 활동은 지역과, 용산구 관할지역으로 이태원 미군, 외국인 밀집지역, 강남, 서초구 관할지역에는 청소년, 직장인 등 활동 하고 있는 한국의 초생달 지역에, 대상업소 관련자의 실질적인 국가차원에서 마약류 사범 예방차원으로 교육, 홍보, 관리관독 등이 전무하고, 지역단체 도, 시, 군구 관심도 부족,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및 지방지부) 보건소, NGO 단체 등이 미비한 차원에서 예방활동으로 확산되는 마약류사범 예방 차단에 현실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마약류 중독정신사범은 지속적으로 증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유흥업소, 음식점 등에는 정기적인 위생교육과 자생 단체 등은 활동 및 관할 군. 구청과의 협력체제가

이루고 있는데 마약류 관계만은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3). 투약자(정신환각사범), 의료기관(취급자), 관리자(보관) 및 법 관련

국내 마약류의 사범의 유형을 보면 투약자가(향정) 60%이상 나타나고 있으나 투약자에 대한 사전적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언론 등에서 예방차원의 정책은 미비하며, 형식적 단편 적으로 대처에 문제점이 있으며, 특히 단순 투약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제도 또한 미비하고, 치료기관 정부 지원 부족으로, 현실적 치료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마약류범죄의 전과자, 재범자에 대한 정부차원에서 재활과 치료 또한 심각하게 부족 실태이며, 마약류 중독자의 환청, 환후, 환시, 환촉, 환미 등이 발생으로 인하 묻지마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정부와 수사기관에서는 효율적인 수사 인원 부족으로 대처가 미비하고, 교육기관에서 형식적으로 비 전문가 활용 형식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외국의 사례 보면 유치원부터 성인까지 지속적인 전문가를 통해 예방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국내에 마약류 중독정신사범은 년 검거인원 12,000명 기준으로, 37~40%의 재범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교도소, 구치소에서 전문가가 없는 공무원의 형식적 교육으로만 치료, 예방 차원의 성과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으로 마약류 범죄 투약자 사범에 대한 사전적 예방차단의 정책은 현실적 심각한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료기관, 개인의료기관(병원, 의원)에서 의약품 관리가 부실하여 마약류 사범으로 전달될 수 있는 위험이 도출되고 있다. 실태에서 보듯이 지난 5년 동안 병원의 마약류 의약품 도난 109건, 분실이 34건 총 143건에 넘게 발생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의원, 병원에서 취급기준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을 병원. 의원도 지난 1000여 곳에 달한다. 병의원 종사자의 경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마약류를 손에 쥌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례를 보면 지난 6월 의료용 마약을 훔쳐 소지하다가 적발된 한 성형외과 종사는 2개월 후인 8월 두 차례 연속 의료용 마약을 훔쳐 투약하다, 동료의 신고로 적발된 사례가 있으며, 심지어 이 종사자는 마약류를 훔치기 위해 병원에 위장취업까지 한 사례도 있다. 또한 병원의 의료용 마약류관리 부실해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병원, 의원은 모두 958개소 적발된 건은 모두 1,038건으로 나타나 마약류 관리와 유통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데일리메디, 2016, 9, 21) 그리고 마약류 관련 법률에 대한 문제점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43조1항2항은 예방보다는 처벌목적으로, 정신보건법 시설에 대하여 장애인들의 시설의 설립, 임의조항 형식에 불가하고,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정신적 장애에 정신분열증인 물질적 장애가 없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위반자처벌만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 치료 규정이 없으며 약물남용의 청소년의 치료, 재활을 위한 대책이 미약하다. 국민건강증진법, 포괄적인 목적과 약물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고, 광고 금지에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에 필수적으로 단속시 검사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여 사전예방이 시행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적 문제의 환각정신 범죄 사범들이 각종 범죄에 부추기는 뇌관 되기도 하면서 분노의 범죄를 만들고 있다.

4). 중독범죄사범 예방 홍보 부족

우리나라는 앞에서 원인을 보듯이 마약류 범죄사범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적극적인 홍보 실태를 보았다. 범죄예방에 역 효과 현상도 있지만, 홍보에 의한 마약류 범죄 차단을 어느 정도 효율성 있다고 보면서, 우리나라는 마약류관련 세계와 국내 동향에 대하여 유일한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외 경찰청백서 검거와 관세청 인천공항 밀수동향, 국가정보원의 국제범죄 등에서는 검거 동향 중심으로 홍보사례와 학문적, 실태에 대하여 관련기관 등에 배부하는 실태이다. 그 이외는 예방 광고 보고 듣고는 56% 정도의 미비 실태이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홍보와 치료 정책을 국가차원에서 관심도 많으나 우리나라 경우 담배와 알코올에 비하면 마약류에 대한 홍보는 검거, 방법 등 외는 유해성에 대하여 홍보가 많지 않다. 마약류 범죄 발생 원인에 대해 분석한 사례를 보면,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약물중독예방사업 설문조사 결과 캠페인을 방송매체(TV·라디오), 언론매체, 현수막 등 홍보물에서 듣거나 본 비율은 42.6%였으며, 57.4%에 예방캠페인을 접한적이 없다는 통계를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민간단체인 한국마약퇴치운동 본부·지부, 서울 신문사 주관 걷기대회 이외는 찾아 볼 수 없는 실태이다. 앞에서 말하듯이 예방캠페인을 접한 사람 중 62.2%는 방송매체(TV·라디오), 23.7%는 인터넷, 5.2%는 신문·잡지 등 문자매체, 6.3%는 본건 복지 관련(보건소, 복지관 등)의 포스터, 팸플렛, 2.6%는 의료기관의 포스터. 팸플렛을 통해 듣거나 본적이 있다고 대답하였다.(데일리팜, 2015, 11.12) 이 듯 국가와 자치단체에는 마약류 중독자 및 유해성에 대하여 홍보부제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예방차원에서의 한부분의 문제점으로 제시한다.

5). 교육기관 및 중독자 재활·상담치료기관

국내 약물(마약류)관련 유치원, 초·중고와 대학 등에서는 학교 교육과 관련 교육기관의 교육시책은 어느 나라보다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형식적인 교육과 교육기관, 학교 등에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대 다수 학교와 교육기관이다. 봉사활동으로 예방교육을 제공하려고 해도 시간이 없다는 등 불편함을 자행하고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도가 부족한 실태이다. 또한 법규정에서도 처벌규정만 있으며, 교육, 재활, 상담 관련 법 규정은 미미하고 처벌이 경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형태가 국내 신종마약류 확산과 중독정신범죄사범확산이 예상되는 현상이다. 일부 중·고 등 학교에서는 비전문가 활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문성 결여로,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그리고 치료에 대한문제점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재범에 대한 치료제도가 예산부족 등으로 미미하게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2005.식약처, p.133) 우선적으로 중독정신사범으로 진행되는 재범자 발생을 보면, 2013년 3,869명, 2014년 3,816명, 2015년, 4,486명으로 전체 40%에 달하고 있다.(메디파나, 2016, 10, 12) 이러한 발생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사업을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치료보호시설로 지정된 전국 21개 의료기관 가운데 5개 국립 의료기관의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국립의료기관 중 국립정신건강센터(서울),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리나주병원, 등 4개 기관은 지난해 치료 실적이 전무했으며, 그나마 실

적이 있는 국립부곡병원도 200개 지정병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치료실적이 78명에 그쳤다. 강남을지병원은 민간병원으로 2개 지정병상 밖에 없음에도 83명을 치료하는 것과는 대비되는 수치이다.

제2절 중독정신범죄사범 개선과 예방대책

1). 국내 마약류 밀반입 및 마약류 관련법 개선

마약류 밀반입에 대하여 최근의 동향을 분석에 따르며 인터넷·SNS·특송화물과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의 접근에 일반인들이 용이한 점을 이용, 유통되고 있는 실태에 관련, 유통 단계에서부터 관세청, 인천공항, 항만 단속기관의 마약류 유입 및 불법거래차단에 대하여 특송화물, 휴대품 등에 대하여 통관검사를 강화 하여야 하며, 인천 공항에서는 7월부터 특송물류센터를 신설로 전체 특송화물에 대해 체계적인 검사가 이루어 져야하며, 그리고 국제우편·휴대물품에 대한 검사 강화를 위해 국제선이 취항하는 공항·항만 등에 배치한 ‘마약탐지조’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고, 마약탐지기와 탐지견, 장비확충 밀수 경로별 조사체계를 개선하여야 하고, 마약류 관련 정보(우범자, 적발사례, 마약범죄동향)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마약정보포털 시스템을 구축해 현장 마약수사관과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사범단속의 효과성을 높여나갈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수사기법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해외 직구로 만입되는 마약류를 집중단속하고 통제배달 등 특수수사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검거 엄중 처벌해야 하며,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 집중단속 등을 위해 전국 14개 지역에 경찰, 검찰 마약수사 합동단속반을 최초로 편성해 인터넷·SNS이용 마약류 판매사범, 청년 등에 대한 마약류 공급사범, 외국인 마약류유통단속과 클럽, 유흥가, 외국인 기생지역 등 집단사용 가능성이 있는 장소 기획수사 등 강력한 수사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마약류 불법거래를 24시간 감시하는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을 구축해 2016년 하반기 마약 판매광고 등 큰 빠짐없이 모니터링 하며, 불법 사이트가 발견되면 이를 즉각 차단, 폐쇄 조치하는 등 인터넷.

SNS를 이용한 마약류 범죄사범에 대해 철저히 단속을 실시한다. 그리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 광고행위나 제조방법을 공유·제공행위 등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마약류 유사한 효과를 지닌 신종마약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신종마약류 물질의 분석·평과방법을 개선하여 임시마약류를 지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을 하여야 한다. 사용단계에서는 신종마약류와 의료용 마약류 적극적으로 감독 관리하여야 하고, 사후관리 관계에서 중독자 년 평균 38% 발생되는 재범자 최소화 정책과 재판, 재활 치료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마약류관련법규정에 대하여 현 실행과 적용할 수 있는 개정, 제정 하여 중독자 정신장애자에 대한 법적 혜택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예방대책

국가기관에서 국무총리산하에 중독정신범죄 예방정책과를 개설하여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신범죄사범에 대하여 총괄 지휘, 사전차단, 예방 재활 상담 치료 등을 통해 감독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처에 실질적인 통괄이 필요하다. 관련 부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NGO단체, 학술단체 등 적극적인 지원과 예방에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실행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기생지역 현장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일부 구청에서는 상인들의 소득에 관심으로 외부, 노상 등에서 음주, 음악 등 소란 행위를 자행하도록 지원사례도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생각도 없이 선거의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을 자행하고 있다. 실적인 중독정신범죄사범 발생에 대해 현장 중심이 중요하다, 관할 군. 구청에서 업소 상대로 정기적인 교육과 종업원 상대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NGO 약물, 퇴치, 예방 등 민간단체에서는 마약류 접근 대상자 상대로 보건건강과 마약류 사용에 따른 위해성에 대하여 교육과 상담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상대로 예산을 청구 할 수 있는 현실 요구되어야 한다, 또한 단속관련 기관에서도 대국 홍보를 강화하여 마약류 범죄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경찰, 검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안전처, 국가

정보원 및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정보센터 와 공조를 강화해 글로벌 3.0 협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정기적 (분기별) 기생지역에 대하여 철저한 순찰과 암행단속 등으로 활동하며, 풍속담당 지원상대 대상 업소, 종사자 관련자를 사전 소집하여 교육, 공급, 판매, 투약자에 대하여 신고체제를 갖추고 있다면 기초단계서 예방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정부는 우선적으로 예산확대 지급과 자치단체, NGO 등이 적극적인 공조체제로 활동 한다면, 절대적인 1만 명이상의 마약류 확산과 정신범죄사범에 대하여 예방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통계 및 사용자의 심리, 수사기관의 공조, 관련자료 통해 알 수 있다.

3). 의료기관 및 취급자 개선과 대책

국내에서 제조한 필로폰, 마약, 대마 등은 역사적으로 해방 후 국내에서 사용하였으나 2000년부터 외국산 마약류, 신종 마약 등으로 확산되면서, 의료용 수면제인 프로포폴 부친지역에서 사용사례가 시작되면서 2011년부터 병원·의원 의료업자, 종사자들이 마약류에 접근하면서 2016년 7월까지 매년 평균 25명 이상 의료용 마약류가 도난과 분실 발생되고 있는 사실을 분석을 통해 보았다. 현행법상 의료용으로 처방하는 마약성 진통제나 마취제는 이중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 금고에 보관하고 재고량과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병원·의원 의료용 마약류 취급기준 위반사례도 심각정도로 지속적 증가추세이다. 내용으로 보면 관리대장 미작성, 재고량 불일치, 저장시설 점검부 부실, 허가변경사항 미신고 등으로 얼마든지 마약류가 유출, 허위기재 등으로 사용하는데 용이 함으로, 병원·의원 최고 책임자는 법 규정에 의하여 취급관리관독 하고, 또한 취급자도 병원에서는 약사자격증 소지가, 의원에서는 의사가 관리하게 되었는데 형식에 의하지 말고, 이를 철저히 관리관독을 위해 책임 있는 관리자 선정, 지정하여 매주 사용자 등을 확인, 최고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일일 사용사항에 대해 당직최고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에서는 일회성 교육정책을 시행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상, 원료물질 취급자를 분기별로 소집 철저한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하고, 지방식품의약품

안청 소속 중앙수사단에서는 취급자에 대해 분기별 지역별로 지정, 철저한 사용자 확인과 의료보험공단과 공조 마약류 사용 환자에 대한 인적사항 파악 확인 불사용에 대하여 확인 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건. 수사관련 기관에서는 지속적인 합동 정밀감시와 의료용 마약류의 제조와 수출입 유통, 보관, 투약, 폐기, 등 취급 전과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체계를 강화하며, 불법유통 및 과다처방을 방지하고 제약사, 병원, 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 전체 대상으로 취급내역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관리체계를 강하며, 또한 의료용 도난과 분실에 대하여 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하여야 미래의 강력한 마약류 정신 사범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다.

4). 투약자(정신환각사범) 및 기생지역의 개선 방안

가)마약류 상습 투약자는 모델링과 현실의 도피를 위한 방법으로 가족과 친구, 교도소 동료, 사회인 유명한 인사 등 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대상자들과 대화를 통해 투약한 동기와 원인 등을 상담을 통해 치유 할 수 있는 방향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특히 재범들 경우 교도소 내에서 철저한 교육학습과 석방 후 재활기관 등을 스스로, 가족과 친한 교우, 여인. 지인들과의 상담을 통해 치유 목적으로 접근 시도하여야 한다. 또한 투약자 자신과 가족 등과의 등산, 스포츠, 여행, 신앙, 문화생활, 취업 등으로 자신에 대한 중독의 심리를 이탈하도록 노력에 우선적이다. 그리고 가족 친지, 친구들이 건전한 생활과 대우 해주며 성격을 치료하고 교육과, 사회생활을 지원 할 수 있어야 한다. 복지차원에서 단순 투약자는 생물학적 원인을 도피하기 위하여 중독복지원 설립 허가하여 재범과 상습투약에 접근을 방지하여야 하며, 유전적 원인을 도피책으로 단주, 단약모임, 중독자의 치료세미나 등 에 접근도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인 투약자 개인에 대한 보안과 사회적응 능력을 키워 주는 역할을 중독자 학습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등을 통해 마약류에 접근을 방지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전 국민들은 마약류 중독자들에 대한 이해와 사회 속에서 같이 영위 할 수 있도록 긍정적 대처가 필요하다. 그리고 투약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투약 할 수 있는 지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방

정책과 학습장 관련단체에서는 사전적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마약류 투약자 지역 순으로는 서울, 수원, 인천, 부산, 대구 등의 투약자 기생지역(유홍가, 청소년 밀집 클럽, 대상 업소, 외국인 집단지역, 대학가 대중음시점, 노래방 등) 유흥업주, 대학가 주변 업주, 외국인 집단지역 자치단체, 종사자, 풍속관련 단속기관 등에서 정기적, 분기별 소집 마약류의 확산과 유해성, 경제발전 저해, 환각정신 강력범죄의 발생, 대한 전문가를 통해 집중적으로 강제적 교육 실시가 필요하다. 또한 업소 등 자치 단체에서는 자율적으로 마약류 확산과 유행성에 대하여 종업원 상대로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 할 경우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마약류 정신사범은 증가 할 수 없다.

나) 환각 정신질환 사범에 대하여 범죄 위험군으로 정부에서는 국민 정신 건강차원에서 전문병원 확충과 동네 내과나 가정의학과에서 마약류 환각정신사범에 대한 1차 진단과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며, 또 정신과외래 진료시 환자 본인 부담률을 현재 30~60에서 20%로 낮추고 청소년, 상습투약자, 재범자 등 사용자 위험군 상대로 심리상담과 종합검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에 따라 다시금 마약류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립병원, 동네내과 와과 과정학과 등에서 실질적인 상담과 진료를 하여야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지원 하여야 하고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 단체에는 가족처럼 포용하고 내면을 단련시키는 밑거름을 제공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하며, 직업교육과 약물치료교육, 생활태도 개선 프로그램 등이 수행하고 정신사범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지속적 관리하는 의료관찰관제를 시행하면서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보건기관의 공조체제유지 적극적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독자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 등 '원인맞춤형 예방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3절 마약류범죄 홍보 및 교육·재활·치료개선 대책

1) 홍보와 효율적인 교육

흡연에 관련 국가정책에서는 어느 정도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되나 심각한 마약류 오남용 상승 정신중독자 사범에 대하여 언론 등 홍보가 부족하다. 언론의 홍보는 검거에 따른 범행 기법만 사실 홍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호기심에 의한 마약류범죄 사범에 대한 국내의 흐름의 현상이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범죄 근절을 위해 UN이 '세계마약퇴치의 날'로 정한 6.26일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교육, 홍보사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홍보 예방 캠페인 정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실시하여야 하며, 민간단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약사회, 사회복지단체, 의사협회) 적극적 홍보와 예방캠페인, 봉사활동을 실시해야 하여야 하고, 교육기관에서 실효성인 있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생, 부모 등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정기적인 학술세미나를 통해 마약류 유해성에 대하여 알리고, 청소년, 대학가 주변 업소소유자들은 단체를 형성하여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마약류 접근에 방지와 투약자 발견시 신고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언론사, 인터넷 지상 방송사 등은 식생활에 광고(마약 김밥, 라면 등) 이에 유사한 상업 방송을 중지하고 국민의 예방관련 언론보도가 마약류정신사범 예방 대책성에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국가와 자치단체에는 예산확보 지원하고, 마약류 예방, 재활, 치료 상담소를 대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국가차원에서 자격시험 거쳐 전문가를 양성 배치하여 한다. 또한 홍보 강화를 통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관 활성화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 및 언론사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연계한 적극적인 홍보 활공과 방송, 신문, 홈페이지, 블로그, 전광판 시정소식지, 반상회, 간행물 등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하고, 중독자와 회복자 부모단체 상대로 치료센터와 병원, 동네의원, 가정학과 등을 통해 알선과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 종교단체 성직자와도 상호체제유지 예방 및 치유 캠페인을 펼쳐야 한다.

2) 중독자 치료보호 및 교도소 치료, 교육 강화 개선대책

그리고 재활기관과 교도소, 병원 등 활성화 정책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국내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하는 제도로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제도가 있다. 이는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규정에 근거한 제도이다. 치료보호제도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도 중에서 다이버전 프로그램으로, 1976년 마약법 제50조와 1979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1조에서 중독자의 강제수용과 치료를 규정하면서 처음 도입되었다. 내용으로 보면 마약류 중독자를 환자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의존성 극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적 수단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종류는 첫째 기소유예제도 와 검찰의뢰 치료 보호, 둘째 중독자의 입원 치료보호가 있으며, 21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시설 지정(5개 국립 의료기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태이다. 5개의 국립 의료기관 중 국립정신건강센터(서울), 구립춘천병원, 구립공주병원, 국립나주병원 등 4개 기관은 지난해 치료 실적이 전무했으며, 그나마 실적이 있는 부곡국립병원도 200개 지정병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치료실적이 78명에 그쳤다. 민간병원인 강남을지병원은 2개 지정병상 밖에 없음에도 83명을 치료하는 것을 비교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와 자치단체의 무관심, 중독자가 찾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정책, 그리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검찰의뢰 및 자의입원 신청에 따른 절차에 어려움 등 홍보부재를 간소화, 활성화 하며 경찰과 검찰, 보건기관의 공조체제 확립 효율적으로 중독자 치료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독재활센터 및 상담을 한국마약퇴치 운동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정부의 예산 부족과 전문가 부족으로 큰 기대 효과는 없으나. 유일한 국가지원 민간단체로, 홍보, 예방, 중독자 무료 또는 일정금액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 운영 실태를 보면, 12명의 내외를 20명으로 확대하고, 12개월 입소기간을 의사 및 상담을 통해 연장과, 단축 자유 치료가 필요하며, 단계별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중독재활센터 확장과 시설 등 예산확대 지급이 적극적 필요한 상태이다. 이를 정부에서는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단속기관의 최고기관인 대검찰청에서는 지속적인 치료·재활 정책 추진 및 내실화를 통해 마약류 투약자는 특정상 범법자이면서도 약물중독환자라는 양

면성이 있어 형사처벌 외에 교육 또는 치료보호 병행하여 실시하고 전국 검찰청에 단순투약자, 청소년 마약사범에 대하여 치료보호 조건부 기소유예 및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적극 활용토록 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마약류중독자를 중래범죄자로 인식하여 격리위주의 형사 처벌정책에서 치료해야 할 중독 환자로 인식 전환하여 치료·재활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사업을 왜래 치료까지 확대 실시 시행하여야 하고, 마약류 투약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치료·재활정책을 추진을 통해 재범률 감소 노력하고 단순투약자의 경우 재범방지를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서 마약류 폐해 및 재범방비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하며, 마약류중독자(정신병환자)를 집중 관리할 수 있는 국립부곡병원 등 치료보호기관을 관할 검찰청과 연계하여 활용 대처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도소 교정시설 안에서 재소자들은 수감기간동안 제한된 사회적 역할을 가지게 된다. 수감되기 이전에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직장의 직원으로 지역사회 시민으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오랜 시간 사회와 격리되면서 재소자 역할만을 담당할 때가 많다. 이러한 환경에서 출소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봉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출소자의 숙식해결, 취업, 경제적 자립부족, 등 원활하게 사회 적응을 해나가지 못하고 다시금 마약에 접근한다. 이러한 재소자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대 실시, 현 54직종의 기술 분야를 확대(기능사, 산업기사, 기사,)하고 전문분야(사회복지사, 경비지도사, 각종 기능별 상담사)에서도 상대성이 있는 재소자 상대로 교육 실시 자격증 취득하도록 교도소 프로그램을 개선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료자와 출소자를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해야 하며, 재활재활프로그램은 관계중심적, 동기강화적 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참여자의 동기를 극대화 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효과적 재범을 막을 수 있다. 법적 강제치료의 효과성과 중독자 자발적 치료의 활성화 하여야 한다.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면서 법무부, 검찰청 주관되어서 비밀보장 하는 가운데, 전문가를 통해 교육 시키고, 단기치료프로그램과 장기프로그램의 연구가 필요하며, 중간처우시설의 확충하고 이에 정부에서는 예산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교도소내의 치료재활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운영하여 여야 하고, 교정처우 시설의 소규모화와(50명내)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재활에 성공한

마약류 수용자의 적극적 활용해라'는 , 현 치료·재활 상대로 성공한 수용자를 통해, 공감대 형성을 유지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통해 재범의 예방 대책을 실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우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예산지원 극대화과 보안직원과 처우직원의 원활한 업무협조 체제 유지하고 구치소의 교정처우 활성화로 구치소의 교육기능강화 또 장기적으로 수용자의 사회복귀와 수용관리에 큰 도움을 주어 교정기관의 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다.



제 5 장 결 론 및 제언

본 논문에서는 국내마약류 밀수와 투약자 확산에 따른, 정신범죄사범이 날로 증가하면서 사회적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그에 따라 최근 국내 2년 동안 국내밀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면서 2015년 한해 동안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인 필로폰 중심으로 확산의 일로가 진행하고 있다. 특히 그에 편승, 아편, 대마초, 신종마약류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10년 동안 마약류사범의 변화를 분석해 본바 8천명의 마약사범이, 지속적으로 1만 명의 이하로 지속하다가 2014년부터 급속도로 범죄사범이 증가하는 것을 통계를 통해 알 수 있어 그에 따라 마약류정신사범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증가원인은 글로벌 시대에 외국인 영어강사, 외국인 산업체 근로자, 국내유학생, 불법체류자, 외국인 군인 및 가족, 탈북자들까지 마약류 밀수에 가담하여 국내에는 청정국가의 상실과 동시에 마약류 소비국가로 전환되었다. 국내에서 마약류 사용자는 약 10만에서 100만 명으로 추산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중독자도 1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밀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인터넷, 국제우편, 특송화물, 공항.항만 등 지능적인 밀수를 통해 전국의 광역도시 사용자상대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정신사범이 발생되어 묻지마 살인, 강간, 방화, 절도, 강도, 교통사고, 등 제2의 범죄가 발생되고 있으며, 국내 내부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 관리자가 소홀히 하여 도난과 분실, 허위기재 사용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밀수실태와 국내확산 원인 및 사용자의 정신범죄사범 발생에 대하여 연구를 하면서, 이해를 돕고자 국내의 마약류에 대한 이해와 특징을 알아보면서 중독정신범죄의 종류와 특성 및 원인을 연구와 우선적으로 국내마약류 밀수실태와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이에 대응 방안으로는 정부와 수사 관련기관은 철저한 통제정책을 실현하여 밀수를 통제와 국내사용자에 대한 차단 정책을 도출하였다. 우선 수요 감축을 위해 사용자의 사용원인을 분석하고, 중독자 검거사례 중심으로 정신범죄가 되기까지 심리학적, 사회 환경적, 생물심리학의 원인과 사용하게 된

동기, 재범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는 정신병원과 국립 중독자 치료병원, 동네의원, 과점학과, 보건소 등에서 1차적 검진과 치료의 연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마약류 확산에 따라 검찰, 경찰, 관세청, 국가정보원, 식약처 등과 협조체제 구축하여 밀수와 사용자 확대에 대해, 과학 장비와 전문수사와 확보 및 시설확충과 예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활성화 예산지원, 인원증원을 지원 공조체제 유지하면서, 상호 보안구축 등 적극적으로 대처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내 병원. 의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가 도난과 분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관리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분기별 점검과 취급자 교육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하며 위반자에 대한 강한 처벌을 병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투약사용자 교육으로 초 중 고 대학 까지 교육 관련기관, 보건소, 전문가를 통해 분기3회 이상 약물예방과 유해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용자 자생지역으로 수원, 부산, 대구, 인천, 외국인 밀집지역, 외국 군대 주둔지역 상대로 관리관청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 상대로 분기별 마약류 범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내 신종마약류 지역인 서울 3개소(신촌, 이태원, 강남) 대하여 관할 구청, 경찰서 합동단속과 유흥업소 사업자 및 종사자 상대로 관할 구청으로 소집 마약류 확산과 유해성, 경제발전의 저해와 환각범죄 실태에 대하여 강도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 할 때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 하기위하 법 적용 실시하고, 입법부에서는 청소년보호법, 국민건강증진법, 정신보건법, 장애인복지법, 도로교통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형식과 처벌 법률 보다는 실질적인 예방 치료·재활 상담관련 법률로 개정 시행하여야 한다. 이러기 위한 마약류범죄의 홍보 결여에 대하여 방송사, 신문, 기관지, 영화, 인터넷, 대중매체, 기업, 관공서, 각종 예방세미나 및 캠페인을 통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업소, 수사기관 공동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매년 6월26일 UN세계마약퇴치운동의 날 정한 날에 국가 행사로 전화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중독자(환각 정신사범) 대한 적극적인 보호환경의 근거마련을 위한 중독관리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몇 가지 법에서 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료의 내용을 다루고는 있으나, 중독의 예방치료를 미션과 목적으로 한 법은 아직까지 없다. 또 근거 기

반 중독성 질환의 예방 및 선별, 치료, 재활 지침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며, 생애주기별 및 성별에 맞는 중독문제 예방 콘텐츠 개발과 확산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보건소의료서비스의 엄격한 질적 관리 기준에 부합하도록, 중독성질환의 예방, 선별, 치료 재활 지침을 개발하고 관련 공공, 민간서비스기관에서 이를 준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치료, 연구 인프라 구축하여야 하며 중독성질환의 치료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치료재활체계를, 수감자, 재범자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협조체제로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중독문제를 다양한 수준의 기관에서 개입할 수 있도록, 질적으로 표준화되고 관리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정책 수립과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연구과제를 개발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 단기, 중장기로 나누어 중독관련 연구수행을 지원하여 한다. 또한 마약류중독 정신사범에 대한 관리를 위 범부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 하며 국무총리산하에 실효성 있는 중독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중독문제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중독물질 및 도박중독, 인터넷중독 관련법, 국가정책 및 중독관련 국가, 민간단체 인력에 대하여 통합·조정하는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교도소와 민간단체 및 검찰에서 중독자와 재범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에 있어서, 마약류 사용자가 30만에서는 100만 명까지 추정되고 있으나 치료나 재활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에 대한 수감자에 대한 교도소, 구치소에서는 단 범죄수감자와 불리 수감하고, 교육 또한 작은 공간에서 50명 이하 단위로 전문가를 통해 개선된 프로그램으로 진행 하여야 하며, 약물 중독 회복자를 우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시설과 장비, 인원. 예산에 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교정시설(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또는 소년원을 포함) 장은 중독자들을 석방 할 때에는 그 중독자들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연락하고 치료감호출소자를 정신보건센터에 등록하여 입원 및 외래치료, 중독자재활센터와 연계된 사회복귀 지원을 받도록 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외래치료 도입을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 불응자에 대한 형벌을 적용하여야 하고 중독재활센터와 연계를 강화하여 잔여 형기를 집행하지 않고, 가석방 후 대체주의 치료를 보호관찰과 치료보호시설 및 중독재활시설과의 치료

재활연계를 갖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중독자 사후 관리와 교도소내의 다양한 치료재활교육제도를 개선 운영되어야, 마약류 중독자 확산을 예방 차단 할 수 있으며, 이 모든 정책과 개선책에 대하여 적극적 시행을 통해 국내마약류 확산 차단과 중독자에 의한 환각범죄 사전 예방에 대처하여 “마약 없는 밝은 사회 구현과” 청정국가로 거듭나는 나라로 대처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장은영.외1명.(2015). 『약물사용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형사정책연구원.
_____.(2012). 『마약류사범 재활센터 치료·재활교육 프로그램개발연구』 .
1-2권 형사정책연구원.
_____. 외1명, (2006). 『마약류감시원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 형사정
책연구원.
_____.(2004). 『약물남용 예방교육의 실태와 효율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_____. 외1명. (2004).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경찰대학. (2004). 『경찰수사론』 .
경찰청. (2014). 『경찰통계연보』 .
_____. (2015). 『경찰청범죄백서』 .
_____. (2007). 『마약류범죄 동향』 .
_____. (2006). 『마약류범죄수사사례』 .
_____. (2005). 『국제마약수사 세미나 자료집』 .
_____. (2004). 『수사기법론』 .
_____. (2003a). 『1일마약수사학교』 .
_____. (2003b). 『마약류범죄수사실무』 .
_____.(2001). 『마약류범죄수사』 .
경찰종합학교. (2004). 『수사경찰(간부후보생)』 .
경찰중앙학교. (2004). 『수사·형사(신임순경)』 .
경찰수사연수원. (2006). 『마약류수사전문화 과정』 .
고진영. (1994). 정보의 개념과 사범정보의 수집방법 및 기술. 대검찰청.
『1994년 검찰 제4집』 .
공창희. (1984). 각성제사범에 대한 수사실무상의 문제점 및 수사기술. 『검찰
1984』 (통권89호).
권수진외1명(2015). 『정신보건법정 및 사범병동에 관한 연구』 . 형사정책연구

원.

- 관세청. (2010). 『마약류 밀수동향』 .
- _____.(2006). 『마약류 밀수동향』 .
- _____.(2005). 『밀수·부정무역 사례집』 .
- 국정원. (2006). 『해외국제 범죄 동향』 .
- _____. (2005a). 『해외국제 범죄 동향』 .
- _____. (2005b). 『마약류용어 해설』 .
- 김대근. 외3명. (2004). 『마약과 약물』 .서울: 북스힐.
- 김문수. 외3명. (2006). 『생물심리학』 .서울: 센게이지러닝코리아.
- 김병남. (1989). 『마약류사범 단속법규에 대한 입법적 고찰』 . 법무연수원.
- 김제일 .외1명.(2007) 『신관형법』 .서울: 사법연구원
- 김성이. (2005). 『약물중독론』 .서울: 양서원.
- 김이영. 외5명.(2013). 『정신건강론』 .서울: 양서원
- 김익수. (2004). 마약류남용의 실태분석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대검찰청.(2016). 『마약류범죄백서』 .
- _____.(2015). 『마약류범죄백서』 .
- _____. (1997). 조직범죄·마약범죄. 『강력검사연구논문집』 .
- _____. (1992). 현장수사·조직폭력수사. 『강력검사연구논문집』 .
- 마약퇴치운동본부.(2015). 『마약류중독자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
- 민병현. (1989). 『마약류사범의 실태와 대책』 . 법무연수원.
- 박옥부. (2002). 마약의존자의 마약에 관한 접근 및 의존과정에 관한 연구. 성
균관대학교. 석사논문.
- 박수현. 외1명(2008).약물, 행동, 그리고 현대사회. 서울: 시그마프레스.
- 복지포럼.(2013). 『4대 중독 원인 및 중독 예방 정책』 .
- 김태희.(2011).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마음의 병 23가지』 서울: 한예원.
- 배성태.(2005). 국제마약류 확산에 따른 21세기 한국마약류정책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형구. (2007). 『형사송소송법』 .서울: 박영사.

- 법무연수원.(2015). 『범죄백서』 .
- _____. (2005). 『마약수사능력 개발반』 .
- _____.(2015). 『범죄백서』
- 법무부. (1997a). 『중국 형사법』 .
- _____. (1997b). 『미국의 검찰제도』 .
- _____. (1994b). 『일본의 검찰제도』 .
- _____. (1990). 『사법경찰제도』 (법무자료 제139집).
- _____. (1988). 『각국의 사법경찰제도』 (법무자료 제98집).
- _____. (1986). 『각국 법무부의 조직과 기능(미국, 프랑스, 중국)』 .
- 서울지방경찰청. (2004). 『국제공조수사 매뉴얼』 .
- _____. (2003). 『선진마약수사기술 사례집』 .
- 송봉선. (2005). 『범죄수사론』 . 서울: 대왕사.
- 송충근. (2004). 향정신성의약품의 범죄 실태분석.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 『마약류과학정보연구회 워크숍』 .
- _____. (2014). 『마약류과학정보연구회워크숍』 .
- _____. (2007). 『마약류 예방사업 및 마약류 중독과 사회복지활성화』
- _____. (2006a). 『마약류 과학정보연구회 세미나』 .
- _____. (2006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해설서』 .
- _____. (2005).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활성화 방안연구』.
- 신상훈. (2003). 마약류범죄수사관련 정보 공유실태.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수사연구. (2007a). 『수사연구』 . 2007-2호. 서울: 수사연구사.
- _____. (2007b). 『수사연구』 . 2007-9호. 서울: 수사연구사.
- 신의기. (2004). 『마약류규제를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_____. (2003). 마약류 지정기준에 관한 연구. 형사전략연구원. 『연구보고서』 . 2003-23.
- _____. (1993). 국제법상 마약류 규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태용. (2005). 『약물오남용』.서울: 신일상사.
- 오희섭. (2004). 『아편』.서울: 수막사.
- 원사덕. (2004). 『약물과보건』.서울: 계축문화사.
- 원사덕. (2004). 『약물남용 예방론』.서울: 계축문화사.
- 유우석. (1997). 약물범죄에 관한 고찰.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정규. (2004). 마약류남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흥희. (2004). 청소년 약물남용 원인실태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07). 『태국실무연수자료집』 (보고서
- _____. (2008). 마약류범죄 수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5). 『마약류사건들의 이야기』.서울: 한국마약중독복지협회자료.
- _____. (2016). 『약물중독재활상담최고위과정』.고려대 평생교육원. 강의서
- 이상동.외1명(2010). 『법정신분석학입문』.서울: 법문사
- 이정균. (1994). 『정신의학』.서울: 일조각
- 이창기. (2004). 『마약이야기』.서울: 서울대출판부.
- 이철희. (2012). 『한국의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정책』.부산: 레드업.
- 신동운. (2008). 『신형사소송법』.서울: 법문사.
- 손매남. (2016). 『당 생물학적 뇌 치유상담』.서울: 한국상담개발원 출판부.
- _____. (2015). 『뇌 충동조절관련장애 치유상담』.서울: 한국상담개발원.
- _____. (2014). 『뇌 중독치유상담학』.서울: 한국상담개발원 출판부.
- 이해주.외2명. 『청소년문제론』.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임대환. (2002). 『국제마약범죄연구』.서울: 서울협동문고.
- _____. (1999). 마약밀수단속의 효율화방안.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상열. (2004). 히로뽕 역사와 범죄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 전경수. (2003). 마약류투약범죄에 대한 대체의료교정 정책연구. 광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2a). 『마약류범죄학 1』 .서울: 삼진프린트.
- _____. (2002b). 『마약류범죄학 2』 .서울: 삼진프린트.
- _____. (2002c). 『마약류범죄학 3』 .서울: 삼진프린트.
- _____. (2002d). 『마약류범죄학 4』 .서울: 삼진프린트.
- _____. (1998). 『마약범죄수사론』 .서울: 수사연구사.
- _____. (1992). 『수사실무』 .서울: 수사연구사.
- 전대양. (2003). 신종마약류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형사정책연구』 . 제14권 제1호
- 전영화. (1998). 마약류범죄의 실태분석과 규제정책에 관한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성권.외5명.(2007). 『마약의 이해』 .서울: 한성대학교 출판부.
- 주왕기. (1997). 『환각제 이야기』 . 서울: 신일상사.
- _____. (1996). 『필로폰이야기』 .강원: 강원대학교 출판부.
- _____. (1988a). 『마리화나 이야기』 . 서울: 신일상사.
- _____. (1988b). 『헤로인 이야기』 . 서울: 신일상사.
- 주왕기 외1명. (2003). 『약물과 사회 그리고 인간 행동』 .서울: 라이프사이언스.
- 주일란. (2003). 남성 히로뽕사용자의 과대성향과 그 인식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지영환. (2004).마약류 중독에 의한 정신범죄 연구. 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인영외1명(2005). 『범죄생물이론과 범죄심리학이론』 .서울: 백산출판사.
- 한국학교폭력상담협회.(2015). 『세미나』 .자료집.
- 한국국제마약학회. (2004). 『마약연구』 .서울: 한성대학교 출판부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2016.) 『마약퇴치연구소 심포지엄』 자료집.
- _____.(2015). 『마약류중독자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
- _____. (2014). 『마약류정책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 한동선. (2004). 마약류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a). 『마약류감시원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
- _____. (2006b). 『마약류원료물질 관리실태와 효율적인 관리방안』 .
- _____. (2006c). 『의료용 마약류관리 법제도 개선방안』 .
- _____. (2006d). 『마약및조직범죄의형사정책적현안과종합적대응방안』 .
- _____. (2006e). 『마약류 감시원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
- _____. (2005a). 『마약범죄 통제를 위한 예산정책연구』 .
- _____. (2005b). 『마약류 수유억제 및 마약류사범 처우합리화』 .
- _____. (2004). 『동북아시아 마약문제의 실태와 해결방안』 .
- _____. (2003a). 『마약중독자의 치료재활 효율화방안연구』 .
- _____. (2003b). 『주요국의 마약류통제체제에 대한연구』 .
- 황만성외1명(2005). 『마약류사범치료 재활을 위한 형사사법체계와 보건
보건의료체계의 협력 활성화방안』 .형사정책연구원.
- 『국민일보』 .(2014).문지마범죄, 대부분빈곤층·정신질환자소행.7.16
- 『쿠키뉴스』 .(2016).국내마약사범1만 명 넘어.4.27
- 『조선닷컴』 .(2016).감기약으로 마약 만든 30세 신용불량자.11.25.
- 『부산일보』 .(2016)한-중-캄보디아‘ 마약삼각루트’ 첫 적발.10.13.
- 『조세금융신문』 .필로폰, 대마 등 마약류 밀반입경로 수입화물
선원으로 다변화.2.18.
- 『뉴스1』 .(2016).강남 문지마 살인사건,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과 대책
5.20
- 『데일리팜』 .(2015). 약물중독 ,향정, 대마, 마약 순 지원 홍보강화.11.12.
- 『마약류종합정보홈페이지』 (2007). 급증하는 마약사범....공허한대책마련.6.16
- 『메니파나』 .(2016).국가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 필요.10.12.
- 『일요신문』 .(2016a).폭력·마약도박 등 외국인 범죄 다양화.10.27.
- _____. (2016b). 교묘해지는 마약범죄‘핵심통로’된SNS.11.11.
- 『연합뉴스』 .(2016a).마약 공급선 차단‘안전지대는 아니다’.9.18.
- _____.(2016b).세계 최대 마약생산국‘아프간’올해 아편 생산43%증가. 10.24.
- _____. (2016c).마약 투약한 뒤 행인 금품 빼앗으려 한 50대 구속.11.14.
- _____. (2015).폭력. 살인범죄발생 최다 원인은 우발적 동기.10.21.

_____. (2016).마약거래에SNS·비토코인 동원...여고생까지 투약.3.18
『이데일리』.(2016). 흔들리는 ‘마약청정국’6개월간4480명 검거.11.17.
『서울경제』.(2016). 당신의 정신건강, 괜찮나요. 4.1,
_____. (2016a).선진국정신질환범죄관리 집행유예조건부 약물복용·상담 치료
유도.8.29.
『서울신문』. (2016a). 마약에 취한 대한민국.8.23.
『한국경제』.(2016).텔레그램 통해 손쉽게 거래....“올해 마약사범 사상 최
대”.11.26
『헤럴드경제』(2016).묻지마 범죄. 1년에 50건 발생. 약물중독 정신질환 주원
인.523
『koreatimes. com』. (2016).부모 먼저 마리화나 대처 교육 받으세요.1.25.
『MBN』.(2016).마약 투약 후 길거리서 흥기 휘두른 50대‘징역’9.3.
『Yakup.com』. (2016).마약환각상태 강력범죄 작년보다 4배 증가.10.12
『dongA.com』.(2016).대한민국 마약 수사의 현실.10.13.

2. 국외문헌

< 일 본 >

畝本直美. (2001). 麻薬特例法違反事件の捜査について. 『警察學論集』 第53
卷 第5號 立花書房.
山田好孝. (2001). 薬物濫用防止対策の. 『警察學論集』 第53卷 第5號. 立花
書房.
小河原 一浩. (2001). 最近の 薬物情勢と対策. 『警察學論集』 第54卷 第5號.
立花書房.

< 中 國 >

- 顧慰萍. 劉志民. (1997). 毒品預防與管制. 北京: 經濟科學出版社.
- 國家禁毒委員會辦公室. (1997). 禁毒法規和公約. 北京: 經濟科學出版社.
- 馬模貞. 錢白強. (1997). 中國百年禁毒歷程. 北京: 經濟科學出版社.
- 趙秉志. (1997). 現代世界毒品犯罪及基惩治. 北京: 中國人民公安大學出版社.

< 英 . 美 >

- Ball, J. C. & Lau, M. P. (1996). The Chinese Narcotic Addict in the United States. *Social Forces*. 45.
- BJS. (2003). *Federal Sentences in State Courts, 2000* NCJ.
- _____. (2002). *Federal Law Enforcement Officers*, NCJ, August 2003.
- _____. (2001). *Federal Criminal Case Processing*, NCJ, January 2003,
- _____. (1998a). *Drug Use, Testing and Treatment in Jails*. NCJ 2003(series).
- _____. (1998b). *Federal Criminal Case Processing*. NCJ, April .
- BKA. (2002). *Rauschgiftjahresbericht 2001*. Bundesrepublik Deutschland.
- Coles, R. et al., (1970). *Drugs and Youth: Medical, Legal, and Psychiatric* New York: Liveright.
- Mixner, G. L. et al. (1970). 『Patterns of drug use among college student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 Nightingale, S. L.. (1977). 『Treatment for Drug Abusers in the United States』. *Addictive Diseases*.
- NJc, (2003). *2000 Annual Report on Drug Use Among Adult and Juvenile Arrestees*. Drug Abuse Monitoring Program(ADAM), April 2003.
- UNDCP, *Annual Reports Questionnaire Data*. Various Government Reports of Regional Bodies, UN.DCP estimates.

3. 인터넷 자료 홈페이지

대검찰청(<http://www.sppo.go.kr>)

마리화나 약물정보(<http://www.calyx.com/~olsen>)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http://www.drugfree.org.kr>)

식품의약품안전청(<http://kfda.go.kr>)

약물정책연구센터(<http://www.rand.org/centers>)

UN 마약통제계획(UNDCP:<http://undcp.org>)

美 국가마약정책실(OCDCP:<http://projectknow.com>)

美 마약단속청(DEA:<http://usdog.gov.dea>)

美 마약남용방지협회(NIDA:<http://nida.ni.gov>)

유럽 마약중독감시센터(<http://www.emcdda.org>)

국제마약단속전략보고서(<http://www.state.gov>)



ABSTRACT

A Study on Actual condition and Countermeasures of
mental crime committed by drug abusers.

kim, Nan-J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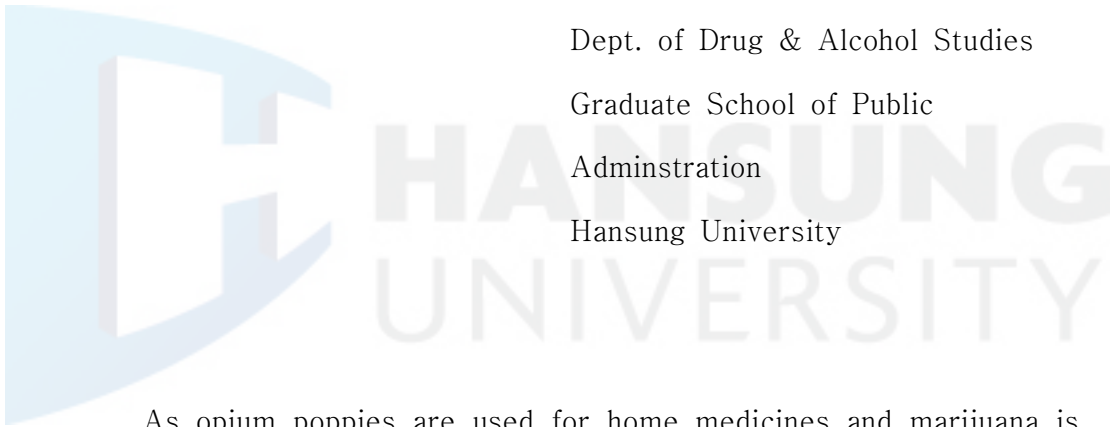
Major in Counseling for Addiction

Dept. of Drug & Alcohol Studie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As opium poppies are used for home medicines and marijuana is used for celebrities and decadent bars, the crimes of mentally addicts have been increased in the Korean society due to the diffusion of marijuana. It is an obvious phenomenon as the effect of globalization and of the policy of trade liberalization. For the past decade, illegal drugs have been smuggled into Korea and injected amongst addicts underground, so about nine thousands drug offenders have been arrested. Once Korea was considered as one of clean countries from drugs, but now it has become one of emerging markets of drugs. The main reason for the increase of drug abuse in Korea is the domestic drug dealing by many foreigners including international students, foreign blue workers,

and soldiers. However, the domestic drug market have been more active due to the highly intellectual smuggling such as international shipping, import shipping, travelers, crewmen, and even dilution from various countries including China, Hong Kong, Thailand, Cambodia, America, and South East Asia. According to the changes of drug spread, the main consumers of drugs shifted from the middle class to the upper class people. The teenagers also inevitably vulnerable from drugs because smugglers bring them in the area of juvenile activity to avoid drug regulations. Places where most of drug dealing takes place are places with mass number of foreigners, so Korea degenerates into a country of illicit drugs trafficking. The Korea recently became a place where illegal manufacturers continuously cultivate smuggled weeds in their houses, and they produce 'Met amphetamines', extracting 'ephedrine' from bulk purchase of influenza medicines. On this situation, this thesis is intended to deal with both the actual condition of drugs and following reasons through the case study of narcotic crimes, and to suggest solutions to protect the proliferation of drugs in Korea.

The several factors that make criminals first get in touch with drugs are the second conviction, curiosity, peer suggestion, addiction. There are three features of mentality of drug addict. First, drug addicts tend to feel satisfaction after the injection of drugs and then ceaselessly want to take more drugs. Second, the effect of drug causes them to rationalize their behavior, and use violence forces because of an exaggerated reactions from their brains. In addition, they have difficulty in controlling their emotions, so that they experience uncontrollable depression, compulsion, and violence. However, the development of equipments and intellectual investigation of drug criminals makes investigators relatively easier to deal with drug offenders, so it does not lead to the further increase of narcotic crimes in Korea. Therefore, This thesis proposes following

research analysis.

1. The government should implement a policy to hinder the original source of smuggling; to analyze the various causes of drug addict; provide medical treatment, preventive education, and precautions; and reinforcement of specialized investigators.

2. It takes priority to enlarge the number of criminal experts and to support the narcotic crime investigations by developing the detective equipment.

3. The preventive advertisements and educations of drug shall be provided to to prevent the distribution of drug over the country. Both central local governments should work cooperatively with all the stakeholders in the society; including investigative agency, press, enterprise, and drug prevention centers in order to prepare a guaranteed system to educate a damage of drugs to the society.

Key Worlds: